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2014

CHI



주중한국대사관



한국환경공단

발간사



주중한국대사관 경제부와 한국환경공단 중국사무소에서는 재중 우리기업들의 중국 현지에서의 환경관리와 환경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시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환경법규와 관리표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현지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되는 것으로서 중국내 환경관리와 환경사고 대응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중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목차 [Contents]



제1부 기업의 환경관리	1
1. 기업의 환경관리 체계	2
2. 중국의 주요 환경법규 및 표준	13
제2부 환경오염 사고와 응급 대응	21
1. 환경오염 사고의 개요	22
2. 환경오염 사고의 관리 및 처리	25
3. 환경오염 사고 응급 대응	35
제3부 기업의 환경부문 증빙 및 기록 관리	47
1. 환경관리 증빙 기록과 준수사항	48
2. 환경관리 운영 증빙과 기록 표서식 예시	49
부 록	65
<부록 1> 환경보호법	
<부록 2> 물오염방지법	
<부록 3> 대기오염방지법	
<부록 4>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부록 5> 오수 종합배출 표준	
<부록 6> 대기 오염물질 종합배출 표준	
<부록 7> 폐기물 분야 주요 관리표준	
<부록 8> 공업부문 업체 소음배출 표준	
<부록 9> 국가 돌발 환경사고 응급대비 방안(요약본)	
<부록 10> 돌발 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환경보호부령 17호)	
참조 자료 현황	199

[제 1 부]

기업의 환경관리

1. 기업의 환경관리 체계

가. 기업 환경관리 개요

기업 환경관리는 2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관리주체로서의 기업이 기업내부 자체에 대한 관리, 즉 기업 내부 환경관리이다. 둘째, 기업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서 기타의 관리주체 즉, 정부 관련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이런 경우의 환경관리 또한 기업 외부 환경관리라 한다. 위 2개 방면의 내용은 서로 밀접한 내적관계가 있는바 기업 내부 환경관리가 일정한 요구에 도달했을 경우에 기업 외부 환경관리 요구에 부합되며, 외부 환경관리 요구를 명확히 해야만 기업 내부 환경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기업 환경관리의 핵심 내용은 바로 환경보호를 기업 경영관리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이다. 환경관리의 주체인 환경관리의 대상이든 막론하고 기업은 언제나 기업 활동 전반 과정 중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나. 기업 내부 환경관리

기업 내부 환경관리의 주요 내용은 기업 환경관리 체제 및 기업 내부 환경관리 규정제도 체계를 수립하고 제품의 원료, 제작, 포장, 운반, 소비 및 소비 후의 최종처리 등 전반 과정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1)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체계

기업 내부에 원활한 환경관리 체계를 수립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업의 환경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기업이 사회에 대한 환경적 약속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적 약속과 환경행위에 필요한 자원투자가 보장이 된다. 또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기업 환경관리의 끊임없는 향상을 유지한다.

전통적인 기업 내부 환경관리 체계(혹은 체제)란 기업 내부에서 임원, 직능부서로부터 말단부서에 이르기까지 수립한 오염예방 및 처리,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환경설계와 개량 및 정부 관련 법률법규 준수 등 방면의 완벽한 규정, 기준, 제도, 작업규칙, 감독검사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관리체계 하에서 기업은 자체수요에 근거하여 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한다.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들의 환경관리는 모두 이와 같은 상황이다.

199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14000시리즈 환경 관리체계 표준을 반포한 뒤로 ISO 14000시리즈 환경관리 표준은 이미 기업 환경관리 체계의 주요 표준과 지침이 되었다.

(2) 기업의 환경정책 제정

기업 환경정책이라 함은 기업이 자원이용, 생산기술, 폐기물 배출 등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반적인 지도방침과 기본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기업 환경방침, 환경전략, 환경이념, 환경목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이 환경관리 방면에 있어서 전체 이념과 견해이다.

기업 환경정책은 기업 환경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 발전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면적으로 기업 환경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환경관리의 근본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 내부 환경관리 규칙제도의 제정

기업이 온전한 환경관리 체제와 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또 본 기업의 환경관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환경보호의 법규를 기업이 환경보호를 함에 있어서의 구체적 요구로 실행하고 기업구성원의 행위규범과 준칙으로 삼아,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전체 직원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기업 환경목표가 실현되도록 보장한다.

○ 환경관리 규칙 제정시 고려사항

- 규칙의 내용은 국가 헌법 및 환경보호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 환경보호법 중 법률책임 추궁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아니 됨
- 문자는 정확, 엄밀, 간결, 분명해야 하고 통속적이고 기억하기 쉬워야 함
- 환경관리 규칙은 반드시 직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 전체 직원 혹은 직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와 현지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함. 이러한 규칙은 또한 환경보호부서가 기업 오염원에 대한 환경감찰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함

○ 기업 환경관리 규칙제도 유형

- 기업 환경보호 기획 및 계획: 기업 환경보호 계획은 기획목표에 근거하여 제정한 연도별 계획으로 해당 조치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시간계획임
- 기업 환경보호 목표책임제: 이는 오염물질 배출표준, 총량통제지표, 오염물질 저감지표, 배출허가증 지표 등을 포함함. 기업 내부에서는 각 항의 환경지표를 직급별로 분화하여 상응한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각 항 지표 책임의 구체적 주관단위와 주관자를 명확히 하여 지표가 현실화되도록 함.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는 목표화, 정량화, 제도화 관리를 실현해야 함
- 관련 전문 관리제도: 기업의 환경보호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기업은 반드시 자체의 생산 오염배출 특성에 근거하여 일련의 해당 제도를 제정해야 함. 흔히 보는 제도로는 환경모니터링제도, 오염방지시설 운영가동 규정 및 관리제도, 위험화학품 관리제도, 환경돌발사건 예방 및 보고제도, 오염원 기록 관리제도, 환경보호 인원의 직위 책임제도 등이 있음

(4) 청정생산 추진, 순환경제 발전

청정생산은 생산 전반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통제하는 일종의 종합적인 조치이다. 순환경제는 “감량화, 재사용, 재순환”의 3R원칙을 채택하고 자원이용효율 제고에 입각하여 생산과 재생산의 매 부분마다 “물질대사” 관계에 따라 생산과정과 산업사슬을 배치하고 “자원-제품-폐기물-재생자원”의 표현형식으로 된 순환방식을 형성한다. 기업을 놓고 말하면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함은 단지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와 청정생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물질, 특별히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업단지 혹은 구역차원에서 생태 산업사슬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자원이용 효율 향상을 극대화하며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배출저감 정책 요구에 부합된다.

(5) 배출오염 처리 및 관리

기업 환경보호는 예방을 주로, 예방과 퇴치의 결합, 종합적인 처리의 방침을 견지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소모를 줄이고 청정생산기술을 채택하며 자원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기술, 여건의 제약을 받아 기업 생산 중 일정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환경자정능력을 적정하게 이용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은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사업장 내 처리를 진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해당 배출기준 및 총량통제 요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환경관리 구체내용 중 하나이다.

○ 대기오염물질 방지 관리

불합리한 에너지구조는 대기 중에 먼지나 이산화황 오염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고 집중난방을 실시하며 무(无)오염 혹은 저오염의 신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연(석탄연기)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또한 노후한 연소방식과 설비 역시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적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기업은 기술개선과 설비갱신을 결합하여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연소설비를 개선하고 연기정화 효율을 향상시키면 근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계획 있게 오염이 심각한 노후보일러를 도태시키거나 개조, 갱신하고 효율이 높은 집진설비를 설치한다. 또 기업은 공법을 개선하고 청정원료 활용으로 탈황, 탈질 등 기체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 오수, 폐수 방지 관리

수질오염 처리란 각종 방법을 이용해 오수와 폐수 중 오염 물질을 분리, 회수하여 그로 하여금 무해물질로 전화되게 하여 폐수가 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폐수, 특별히 공업폐수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모든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폐수든지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한 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해야만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

폐수처리 방법은 그 작용에 따라 크게 물리방법, 화학방법, 물리화학방법, 생물화학방법 네 가지로

분류한다. 물리방법은 주로 물리적 작용을 이용하여 폐수 중 부유상태의 오염물질을 분리해 내되 처리과정 중 오염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방법은 침전, 부상분리, 여과, 원심, 증발, 결정 등이다. 화학방법은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오염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주로 응괴, 중화, 산화환원 등 방법이 있다. 물리화학방법은 물리화학 작용을 이용하여 폐수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막 분리법, 흡착법, 추출, 이온교환 등이 있다. 생활화학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 중 유기물을 분해하여 무기물로 전화시킴으로써 폐수정화 목적에 도달한다. 주로 활성오니법, 바이오 멤브레인, 안정조 및 토양처리시스템 등이 있다.

공업폐수 처리에 있어서 사업장 내 처리와 집중처리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일련의 특수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과 중금속은 반드시 사업장 내 처리를 위주로 하고 대부분의 분해가 쉬운 것과 집중처리가 쉬운 오염물질은 최대한 집중처리를 진행하여 규모효과 및 구역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기술 조건하에서 기업은 또 환경보호 및 수자원(水利) 등 관리부서의 승낙 및 배정을 받고 강, 하천, 해양의 자정능력과 물 환경 용량을 적정하게 이용하여 공업폐수를 관련 배출표준에 도달하도록 처리한 다음 배출한다.

○ 고체폐기물 이용, 처리 및 관리

기업은 공업 고체폐기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법과 상응한 기술공법을 취하여 최대한 폐기물 자원화 및 종합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종합이용, 유해한 것을 이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고체폐기물 처리에서의 최우선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술경제 조건하에서 폐기물의 종합이용은 일정한 제한성이 있으며 또 모든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거나 자원화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체폐기물 예방처리에 있어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결합시켜야 한다.

○ 소음오염 관리

소음오염은 일종의 물리오염이다. 현재 소음오염 통제는 오직 공정기술 조치로만 가능한 바, 음원 혹은 전파경로 통제 및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음원통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구조 개선이다, 부품 가공 정밀도와 조립질량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조작방법을 채택하는 등 음원 발생처에서 소음을 억제한다. 둘째는 소리의 흡수, 반사, 간섭 등 특징을 이용하고 흡음, 방음, 소음(消聲), 감진(減振) 등 기술을 채택하여 소음의 전파와 복사를 통제한다.

소리에너지는 전파거리 증가에 따라 쇠감되기 때문에 소음전파 경로를 통제하는 주요 조치로는: 음원과 민감 대상의 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음영향을 줄이는 것, 또 방음막이를 설치하거나 방음재료 및 방음구조를 이용하여 소음전파를 막는 것, 흡음재료와 흡음구조를 활용하여 소음에너지를 저감하는 것 등이다.

다. 기업 외부 환경관리

정부를 주체로 하여 기업에 대해 진행하는 환경관리라 함은 주로 정부의 환경보호부서가 국가 정책, 법규 및 표준을 근거로 행정, 법률, 경제, 기술, 교육 등 수단을 취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전반 과정 통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 외부 환경관리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 발전건설 과정의 환경관리, 다음은 제품 생산, 판매 과정의 환경관리, 세 번째는 기업 자체 환경관리 체계에 관한 것으로서 기타 환경행위의 관리이다.

(1) 기업 발전건설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기업은 반드시 그 발전건설 활동, 특별히 활동의 전반 과정에 대해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기업 발전건설 활동의 전반 과정은 크게 기획 및 사업승인, 설계, 시공, 검수 네 개 단계로 나눈다.

○ 기획 및 사업승인 단계의 환경관리

기업 발전건설의 기획 및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관리의 핵심임무는 기업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경보호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 건설프로젝트의 환경평가를 전개하여 건설프로젝트의 합리적인 구도를 타당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환경대책을 제정하며,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저감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

○ 설계단계의 환경관리

기업 건설프로젝트 생산 공법과 과정설계 단계에서의 환경관리 업무의 핵심은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목표와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구체적인 공사 조치와 시설로 전화시켜 환경보호시설의 설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건설프로젝트의 기본설계 시, 규정된 각항 환경보호요구, 목표, 표준을 각 부분 및 전문 설계에 관철시켜야 한다.

○ 시공단계의 환경관리

기업 건설프로젝트 시공단계의 환경관리 업무의 중점은 환경보호시설 시공을 검사하고 수행하는 것, 시공현장이 주위환경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환경보호 시설 검사 및 수행의 주요 내용〉

- 시공현장 상황에 근거하여 설계문서 중 환경보호시설의 설계 수행 상황을 재확인한다. 만약 환경보호시설 설계가 완벽하지 않거나 현장 실제상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설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 환경보호시설 시공진도를 검사한다. 건설업체는 진도집행 상황을 제때에 환경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환경보호시설 시공 질(質量)을 검사한다. 엄격히 설계요구 및 검수규범에 정한 질적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시설의 시공 질을 검사하고 질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은 즉시 재공사 하도록 해야 한다.

- 환경보호 설계의 변경을 타당하게 처리한다. 건설업체와 시공업체는 환경보호시설의 설계공법과 설비기술 표준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건설프로젝트 규모, 공법기술 혹은 공장부지 등의 설계가 비교적 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 보고서를 다시 수정하여 원 심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시공 중 시공현장 주위의 생태환경에 회복 불가 혹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파괴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 설계와 결합하여 시공현장을 배치하고 녹지, 복구공사 등을 동시 착공, 동시 완공 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유·토사에 의해 하도가 막히거나 토양유실, 토양염류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 준공된 후 시공업체는 건설과정 중에 파괴된 자연환경에 대해 책임지고 수정, 복원한다. 시공 중 분진, 소음, 진동 및 유독유해 기체가 발생하여 주위 주민생활구역에 오염과 피해를 조성할 수 있으니 시공업체는 효과적인 예방보호 조치를 취하여 시공현장이 주위 주민구역 환경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피하도록 한다.

○ 검수단계의 환경관리

기업 건설프로젝트 준공 검수단계의 환경관리 주요내용은 환경보호시설의 완성 상황을 검수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의 주체공사와 동시에 검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했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검수 및 합격을 받은 후에야 본 건설프로젝트는 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환경보호시설 검수의 주요근거는 승인을 받은 설계임무서, 기본설계 혹은 확대 기본설계, 시공도면, 설비기술설명 등 문서 및 검측기관에서 제출한 검측보고이다.

단일 공사를 검수할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환경관리의 주요내용은 승인을 받은 환경보호시설 리스트와 대조하여 환경보호시설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것, 환경보호시설의 시공 질을 검사하는 것, 제출한 검수문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전반 공사를 검수할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환경관리의 주요내용은 환경보호시설의 테스트와 심사하는 것, 각 단일 공사 혹은 작업실의 환경보호 검수보고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검수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은 검수에 참여한 부서가 구체적인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환경보호시설이 건설완료 되지 않았거나 요구 미도달인 경우 검수를 해주지 아니 한다. 환경보호시설에 일정한 문제점이 존재하나 환경에 대한 위험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 것은 생산투입 동의, 투자 준비, 기한 내 해결의 방식을 취하여 처리하고 잠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과제로서 처리의견 초안을 작성하여 상급 주관부서가 기타 관련 부서와 연합으로 심사하여 승인한 후 집행한다.

○ 폐쇄, 이전, 생산전환 단계에서의 환경관리

이 밖에, 기업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 폐쇄, 이전, 생산 전환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응한 환경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중심 도시지역의 기업이 폐쇄, 이전 후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거나, 또 생산 전환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이다.

(2) 기업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기업 생산 과정에 대한 환경 관리의 핵심은 기업의 각종 물질 자원 이용과 소모에 대한 관리이고, 생산 공법의 청정화 관리,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에 대한 환경관리이다.

○ 기업의 각종 물질자원 이용 및 소모에 대한 관리

기업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의 종류, 성질, 원천, 성분, 저장 및 사업장 내 운반, 소모량 등 요소를 검사한다. 원료원천 변경을 조사할 경우 성분의 변화, 특별한 경우에는 독성분 함량의 변화 상황도 존재한다. 원·부재료가 저장과정 중에 관리가 소홀하거나, 새거나, 유출되거나, 휘발되거나, 흩날리거나, 유실되어 오염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지 그 여부를 검사한다. 어떤 제품 혹은 중간제품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품목에 속하므로 그것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과정 중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유실과 유출을 방지했는지, 엄격한 등록 및 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물과 에너지 이용방식, 소모량 등을 검사해야 한다.

○ 생산 공법의 청정화에 대한 관리

〈청정생산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반드시 생산과 서비스 과정 중에 자원소모 및 폐기물 발생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근거하여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의 배출표준을 초과했거나 혹은 해당 지방 인민정부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지표를 초과한 기업은 반드시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독, 유해한 원료를 사용해 생산하거나 혹은 생산 중에 유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현지 현(縣)급 이상의 환경보호 등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공표하지 않거나 혹은 규정한 요구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있다.

정부 환경보호부서는 기업의 생산설비(오염이 발생하는 주요 생산설비의 유형, 규모, 생산 공법 및 기술라인 등 포함), 생산 공법유형과 기술라인의 우수성, 적응성을 검사하여 도태, 사용금지의 설비나 공법에 속하는지, 생산구도가 환경오염 혹은 오염사고를 일으키기 쉬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 폐기물 발생 및 배출에 대한 관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경영 단계에서는 기업 오염원과 오염물질 배출, 오염배출비용, 환경돌발사건 등에 대해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 환경보호부서가 오염원에 대한 감독관리는 국가 정책, 법규, 배출표준에 근거해 오염원을 감찰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기존의 오염원 감독관리는 주로 배출이 국가와 지방의 배출표준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기술개선 과정 중에 요구에 부합되는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제어하였다. 신설 프로젝트 오염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두 개 단계로 분류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건설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즉 건설프로젝트의 부지선정, 제품의 공법과정, 사용하는 원료 및 그 오염배출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오염예방 조치와 대책을 제기하고 또 전반 건설프로젝트 타당성연구의 한 개 구성부분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중에 제기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며 신설 프로젝트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광산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환경관리에 있어서 주요내용과 수단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개발 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잘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개발 후 피드백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 시 자연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고 자원개발의 외부적 경제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광산자원 개발이용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면 또 광산자원 개발이용의 매 단계에 대해 필요한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를 얻고 수시로 피드백을 하여 상응한 보완조치를 제정하도록 한다. 광산자원 개발 주관부서는 반드시 현지 환경관리기관과 함께 사고 응급대처팀을 설립하고 응급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응급처리설비를 준비함으로써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염정도와 오염범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고 공해사고의 발생을 피한다.

(3) 기타 환경행위의 관리

기업의 환경보호 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내용도 단순한 오염원 처리나 청정생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환경정보 공개, 기업 ISO14000 환경관리체계, 기업 환경효율, 기업 환경행위평가, 기업 환경책임, 기업 환경안전, 기업 순환경제, 기업 녹색마케팅 등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기업 환경 행위와 활동은 모두 정부 환경부서의 조정, 협조,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는 이미 현재 정부의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의 새로운 내용으로 되었다.

라. 기업 환경관리의 고과평가

(1) 기업 환경오염 종합고과지표

오염고과지표의 성질과 기능에 근거하여 고과지표를 환경요소를 반영하는 단일지표와 기업 환경 전반적 개요를 반영하는 종합성 지표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 성질, 내용, 작용에 따라 또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눈다.

○ 환경질량지표

환경질량지표는 오염물질 배출표준, 배출총량, 환경위생표준, 도시 대기 및 수역 환경용량, 공업 “3폐”(폐기, 폐수, 고체폐기물) 배출 및 소음 합격률, 단위제품 배출지표(만 위안 생산액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질량종합평가지표 및 각종 오염 양을 나타내는 표준과 지표 등을 포함한다.

○ 환경관리지표

환경관리지표에는 환경설비 가동률, 유지보수제도, 주요 오염물질의 처리율, “3가지 동시”(건설프로젝트 중 오염방지 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사용 해야 함)제도 집행율, 환경보호책임제도, 환경계획, 통계제도의 수립 등이 포함된다.

○ 환경경제지표

환경경제지표는 단위제품 용수량, 수원 순환이용률, “3폐”회수이용률, 자원종합이용률, 에너지 소모 기준량, 원재료 연소 소모율, 여열 이용률, 오염배출 수급상황, 오염벌금 상황, 환경보호 처리투자의 경제효율, 과거노동 실업률, 환경보호투자(공업생산총액, 인프라건설 총투자 혹은 기술갱신 개선투자 중 접하는 비율, 환경보호 과학연구교육 비용 중 접하는 비율 등)을 포함한다.

○ 환경건설지표

환경건설지표는 공장 녹지율(인구, 면적에 따라 계산), 공장 환경청결정도, 문명생산지표, 환경보호기구 자체건설(기술력 보유, 모니터링설비능력)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보다시피 기업 환경오염지표체계는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건의 가능여부에 따라 수요가 절박하고 또 관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체계 내용에 편입시킨다.

(2) 국가 친환경기업 창설

2003년 5월 23일 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가 친환경기업 창설활동을 진행함에 관한 통지>(환발[2003]92호)를 반포하였다. 통지는 전국적 범위에서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모든 공업 기업들 중에서 “국가 친환경기업” 창설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취지는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경제적 효율이 좋고 자원소모가 낮으며 환경오염이 적고 환경과 경제 “윈-윈”을 이루는 모범기업

건설을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공업 오염방지를 강화하여 선진화된 형태의 공업화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국가 친환경기업 창설 기본조건〉

○ 환경지표

- 기업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안정적이고 국가 혹은 지방의 배출표준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에 도달해야 한다.
- 기업의 단위제품 종합적 에너지 소모량이 국내 동업종 중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기업의 단위제품당 물 소모량이 국내 동업종 중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기업 단위 공업생산액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국내 동업종 중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기업 폐기물 종합이용률이 국내 동업종 중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기업이 완전한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관리지표

- 자발적으로 청정생산 실시, 선진적인 청정생산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 신설, 개조, 확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와 “3가지 동시”제도 집행율이 100%에 도달하고 환경부서의 검수에 합격통과 되어야 한다.
- 환경보호시설 안정 가동률이 95%이상 도달해야 한다.
- 공업 고체폐기물과 위험폐기물 안전 처리율이 모두 100% 도달해야 한다.
- 공장구역이 청결하고 아름다우며 녹지면적이 35%이상 도달해야 한다.
- 오염배출구가 규범화 정비요구에 부합되고 주요 오염배출구에는 규정대로 주요오염물질 온라인 모니터링장치 설치 및 정성적인 운영 확보해야 한다.
- 법에 따라 오염배출신고등록을 하고 오염배출허가증 취득해야 한다.
- 오염배출비용 납부
- 3년 내 중복되는 환경민원사건,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야 한다.
- 환경관리는 기업의 표준화 관리업무에 편입하여 온전한 환경관리기구와 제도가 있어야 하고, 기업 환경보호 기록문서가 완비되어야 하며, 각종 기본데이터자료가 구비되고, 기업이 정기적으로 자체모니터링 혹은 위탁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 기업 주위의 주민과 기업 내 직원이 기업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90%이상 도달해야 한다.
-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제품지표

- 제품 및 그 생산과정 중 국가 법률, 법규, 표준 중에 사용금지 된 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품 및 그 생산과정 중 중국이 체결한 국제공약 중 사용금지 된 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품 안전, 위생과 품질은 국가, 업종 혹은 기업의 관련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환경표지 인증범위 내에 있는 제품은 환경표지제품 인증표준 요구에 따라 고과 심사를 받고 이미 환경표지를 취득한 제품은 고과 심사를 받지 않는다.

2. 중국의 주요 환경법규 및 표준

가. 환경법규 발전 연혁

- 중국의 환경 행정은 1973년 8월에 개최된 [제1회 전국 환경 보호 회의]와 함께 헌법에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면서부터 시작됨. 동 헌법에 명시된 환경 관련 규정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중국 환경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음
- 중국 환경 정책은 상기 헌법에 기초하여 중앙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환경 관련 법률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환경 정책 판단의 중요한 선결 과제임
- 중국은 197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환경보호를 국가 기본법에 삽입함으로써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국책으로 삼는 동시에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를 환경보호와 환경법의 양대 영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중국 환경법체계의 기본 골격이 잡히고 주요 내용의 기반이 확립됨
- 1979년 9월,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試行)]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의 환경법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독립된 환경 법률이 성립됨. 그 후 20년을 지내면서 중국의 환경법은 초보단계를 넘어 [환경보호법] (1989년 및 2014년 4월 개정)을 기본적인 환경보호 법률체계로 정비, 오염방지분야에 5개의 독립 법률과, 자연자원보호 부문에 12개의 법률, 자연재해 방지와 감소 부문에 2개의 법률, 그리고 많은 기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 2014년 4월 2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4번 재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
 - 1989.12.26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25년 만에 처음 개정

※ 환경보호법 수정 경과

- 1차 심의: 2012년 8월,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28차 회의
- 2차 심의: 2013년 6월,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3차 회의
- 3차 심의: 2013년 10월 2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5차 회의
- 4차 심의: 2014년 4월 2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8차 회의

- ◇ 새 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 신설

- 그밖에 국무원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30여 개 환경보호의 전문 행정법규, 국가환경보호부(MEP) 및 기타 환경보호 관련기관이 제정한 70여건의 환경보호의 전문 행정규정, 그리고 지방에는 성(省)급 환경보호 지방법규와 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2008. 8.29 발표된 <중국순환경제촉진법>은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급격한 에너지 소비와 발생하는 각종 배출오염물 및 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순환이용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틀의 재정비와 조정을 실시
- 환경보호 법률·법규의 실시에 있어서 기술적인 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국적인 환경보호 기준을 제정 및 시행중

나. 환경보호 법률체계

(1) 헌법

- 헌법 중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국책으로 삼는 기본원칙이며, 국가 환경보호법의 입법근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9조: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자연자원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
 -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식수조립과 삼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격려한다.”

(2) 환경보호 기본법

-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은 중국환경보호에 관한 종합성 법규로서 주요내용은 국가의 환경정책, 환경보호방침, 기본원칙과 중요조치, 관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기타 환경보호 단행법규의 입법근거임
- 1979년 9월 1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試行)》이 통과되고,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이 통과되고 동시에 《환경보호법(試行)》은 폐지됨.
《환경보호법》은 최근 2014년 4월 21일 1989년 이후 25년 만에 개정되었음

(3) 환경보호 단행법률

- 이것은 특정의 보호대상을 규정함.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환경요소 혹은 환경사회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임. 그것은 헌법과 환경보호기본법의 구체화한 법률임
- 환경오염의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5개법
 - 〈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 〈中華人民共和國大氣污染防治法〉, 〈中華人民共和國固體廢棄物污染環境防治法〉, 〈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環境騒音污染防治法〉
-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7개법
 -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 〈中華人民共和國草原法〉, 〈中華人民共和國水法〉, 〈中華人民共和國鑛山資源法〉,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中華人民共和國野生動物法〉
- 기타 유관법률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
 - 〈文物保護法〉, 〈農業法〉
 - ※ 민법, 형법, 경제법, 행정법 등에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함
(예: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24조 "국가 환경보호를 위한 오염방지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응당 법에 의거 민사책임을 진다.")

(4) 환경보호 행정법규

-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공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유관 주관부문이 공포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을 말함
 - 〈中國人民解放軍環境保護條例〉, 〈鄉鎮·街道企業의 환경관리강화에 관한 국무원규정〉, 〈대외개방지구환경관리잠정규정〉, 〈중화인민공화국해양폐기물투기관리조례〉, 〈기술개조와 공업오염방지의 결합에 관한 몇 개 항의 국무원 규정〉, 〈수산자원번식보호조례〉 등

(5) 지방성 환경법규

- 각 省·自治區·直轄市 人民代表大會 혹은 그 常務委員會는 환경보호법규와 지방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하여 종합성 혹은 단행의 환경보호법규를 제정함
 - 예를 들면, 〈길림성 환경보호조례〉 〈내몽고자치구 초원관리법〉 등

(6) 환경보호기준

- 중국의 환경보호 기준은 환경질량(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 환경기초기준, 환경표본기준, 환경보호 방법기준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제정된 환경기준에는 〈環境空氣質量標準〉, 〈大氣污染物綜合排放標準〉, 〈地面水環境質量標準〉, 〈都市區域環境騒音基準〉 등이 있음

(7) 국제환경보호조약

- 국제 환경보호 조약은 2개 혹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환경보호 방면의 상호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의로서 공약과 협정을 포함함. 중국이 현재 가입하거나 참가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음
 - 〈생물다양성협약(生物多樣性公約)〉, 〈기후변화협약(氣候變化公約)〉, 〈해양법협약(海洋法公約)〉, 〈사막화방지협약(防治荒漠化公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保護臭-層維也納公約)〉, 〈국제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조약〉, 〈국제선박오염 방지협약〉, 〈폐기물투기 및 투기물질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조약〉, 〈자연유적과 인간유적보호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控制危險廢物越境轉移及其處置巴塞爾公約)〉 등

다. 중국의 환경기준(표준)

- 중국의 환경기준은 환경질기준, 오염물배출기준, 기초방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기준은 환경관리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그 제도근거가 환경보호법에 있는 것, 제정권이 국가 환경보호국과 지방정부에 있는 것 등 환경법 체계의 특수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환경기준은 인체건강의 보호, 생태계의 유지·촉진을 목표로 제정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치로서 통상 환경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일정 시간 내지 공간에서의 허용농도로 표시됨
 - 오염물 배출기준은 환경질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며 오염원 관리의 근거가 됨
- 환경보호법 제9조와 10조에는 환경질 기준과 오염물배출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정권은 국가환경보호국, 지방 차원의 제정권은 지방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의 질과 오염물의 배출에 대해서는 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 기초방법기준은 환경의 질 기준과 오염물 배출기준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용어, 부호, 표기방법, 표본의 채집분석 방법, 기준의 제정수속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정권은 국가에 있음. 따라서 환경의 질 기준과 오염물 배출기준과는 서로 같지 않으며, 기초방법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만이 존재함
 - 중국의 환경기준체계는 3종류(환경질 기준, 오염물배출기준, 기초방법기준)와 2계급(국가기준, 지방기준)의 구조를 갖고 있음
- 국가기준과 지방기준과의 관계는 지방은 국가질 기준이 없는 환경요소에 대해 지방질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배출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염물에 대해서 지방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가 있음
 - 오염물배출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이 있어도 그것보다 엄격한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가 있음. 따라서 동일한 환경요소에 2개의 환경질기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동일한 오염물에 2개의 배출기준이 존재할 수는 있음. 그 경우 국가기준이 아닌 지방기준이 적용된다(환경보호법 제9~10조)

(1) 국가 환경기준(표준)

- 중국환경보호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 부문은 국가 환경기준을 제정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환경기준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 환경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함
 - 국가 환경기준에는 대기환경기준과 수질환경기준이 있음

〈대기환경질량표준〉

대기오염방지법 제6조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환경기준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질환경질량표준〉

수질오염방지법 제6조는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국가 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수질환경기준 중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국가 오염물 배출기준(표준)

- 중국환경보호법 제10조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은 국가 환경기준과 국가경제 및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오염물 배출기준을 제정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의 오염물배출기준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 오염물배출기준 중 이미 제정된 항목에 대하여 국가 오염물배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지방 오염물 배출기준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함. 향후 지방 오염물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방 오염물 배출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 오염물 배출기준에는 수질오염물 배출기준과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이 있음

▶ 중국 환경보호표준 연혁 (국가환경보호부, 2008.3.10)

-1973.11.17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기본건설위원회, 위생부에서 (표준번호: GBJ4-73)을 반포하여 1974.1.1일부터 실시

* ‘환경보호법’이 1979년 반포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가 환경보호법규의 역할을 수행

-1974년 국무원 환경보호지도자 사무소 설립되어 일상 사업을 담당

-1982년 국무원에 도시와 농촌건설 환경보호부서를 설립(환경보호지도자팀 폐지)

-1984년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부’에서 ‘국가환경보호국’으로 개편되어 독립적인 정부기능부서로 기능 수행

-199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설립된 후 환경보호표준은 새로운 발전시기에 진입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등에서 환경보호표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중국 환경보호표준의 특징

-환경보호표준은 법에 따라 제정·실시하는 규범성 기술문건으로서,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는 다른 자체적인 특징과 규칙을 가짐

확정된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타 표준을 응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환경 품질표준과 오염물질 배출표준은 모니터링 기술규범과 모니터링 방법표준을 인용하고, 모니터링 방법표준은 표본추출과 샘플 제작표준을 인용해야 함. 모니터링 방법표준과 표준샘플 제정은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질 배출표준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제한치 수준 등에 근거함

-표준 제정은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발전 수준을 근거로 하며, 과학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종합 경제기술 타당성 등 요소에 의하여 확정

라. 분야별 환경법규 제개정 추진내용

(1) 환경 법률상 미흡한 새로운 분야의 법규

-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규: 순환경제촉진법 제정 및 발표(2008. 8.29 / 2009.1.1 시행)

[주요내용]: 6개의 기본관리제도 확정

- 본 법규에서는 향후 순환경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순환경제에 대한 기획제도 ▷ 자원낭비 및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 ▷ 순환경제 평가 및 고과제도 ▷ 생산자중심의 책임강화제도 ▷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감독관리제도 ▷ 경제적 장려제도 등 6개 기본관리 제도를 확정함
- 본 법규를 통해 중국 내 생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재처리 의무가 크게 강화됐으며 에너지효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 한편 에너지 절약, 재활용, 회수, 자원화 등에 대한 재정지원, 세수혜택, 금융지원 등 장려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짐

○ 생태보호분야 법률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 법규제정 : 자연보호구법, 생물안전법, 토양오염방지법, 유전자원보호법, 생태보호법 등
- 행정규범 : 서부개발생태보호감독조례, 농촌환경보호조례, 가축양식(축산)오염방지조례, 생물종자원보호조례, 생태기능보호구건설과 관리조례 등
- 부서규정 : 생태시범관리방법, 유기제품관리방법, 생태 기능구 분할관리방법, 국가급 자연보호국 감독점검방법, 환경보호용 미생물 환경안전관리방법, 유전자생물환경 안전관리방법 등

○ 핵안전분야의 법률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 핵 안전법, 민용(민간)핵설비안전감독관리조례, 방사성물질운송안전관리조례 등

○ 오염물질 통제 분야의 법률 공백을 보완하는 법규

- 유독유해화학물질통제법 등

○ 환경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규

- 환경오염손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평가법, 다변계(광역) 환경오염손해배상방법 등

○ 환경관리 제도를 완벽히 하고 집행행위를 규범화하는 법규

- 환경측정관리조례, 환경감찰업무조례, 환경행정위법행위행정처분방법 등

(2) 법률의 시행효율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 법률에서 입법권한을 명시한 분야

- 오염배출허가증관리조례, 수돗물수원지보호구 오염방지조례, 환경오염 기한 내 처리 관리조례, 위험폐기물 이용 경영허가증 관리규정 등

○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을 세부화

- 환경소음오염방지법에 규정한 벌칙의 구체적 벌칙과 범위를 확정하는 규정, 환경소음 오염방지 행정처벌방법 등

○ 상위법의 원칙적(선언적)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 고체폐기물오염 환경방지법에 따른 폐기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관련 규정, 특정제품 및 포장제품 회수이용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련 환경영향 사후평가제도 규정, 건설사업 환경영향 후속평가관리방법 등

○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시세칙 성격의 법규

- 자동차오염배출방지관리조례,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조례, 건축시공소음오염방지조례 등

(3) 환경관리 여건변화와 요구에 따른 법규 개정

-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등 법규 개정

(4)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규 제정

- 고체폐기물수입관리방법, 오존층소모물질관리조례, 외래침입종 환경안전관리방법,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획득 및 혜택공유관리조례, 위험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방법 등

(5) 환경보호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모델 법제화

- 대중이 환경보호관리에 참여하는 방법, 기업 환경 평가방법, 환경보호모범도시 심사방법, 기업 환경정보공시관리방법, 생태시범관리방법 등

(6) 지방정부 환경입법 지원

- 수질오염방지법(제59조)에 의한 개별기업 수질오염방지방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제49조)에 의한 농촌생활쓰레기관리방법 등

[제 2 부]

환경오염 사고와 대응

1. 환경오염 사고의 개요

가. 환경오염 사고의 개념 및 분류

환경사고라 함은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제, 사회활동과 행위 및 의외 요소의 영향 혹은 불가항적인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가 파괴되며, 인체건강이 위협을 받고, 사회경제와 국민재산이 손해를 입어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흔히 보는 환경사고는 주로 유독유해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토양유실, 붕괴, 복사 및 기타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영향 등이 있다.

○ 사고 대상에 따른 분류

환경오염사고는 물 오염사고, 대기 오염사고, 소음 및 진동 위험사고, 고체폐기물 오염사고, 유독화학물질 오염사고, 방사성 오염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사고 정도에 따른 분류

2006년 <국가 돌발 환경사건 응급대응 대비책>의 규정에 근거하면 돌발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 및 긴급정도에 따라 환경사고를 특별히 중대한(I 급), 중대한(II 급), 비교적 중대한(III 급), 일반적인(IV 급)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건(I 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a. 사망자가 30명 이상, 혹은 중독(중상)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 b. 환경사건으로 인해 급히 해산, 이주시키는 인원이 5만 명 이상, 혹은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c. 구역 생태기능이 심각하게 상실 혹은 멸종위기에 처한 물종 생존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 d.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지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 e.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인위적인 파괴활동, 혹은 1유형, 2유형 방사선원(放射源)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대규모의 심각한 복사오염후과를 초래한 경우
 - f.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요도시의 주요 수원지 취수가 중단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g. 위험 화학품(맹독품 포함) 생산 및 저장운반 중 누출로 인해 국민 생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오염사고

- **중대한 환경사건(Ⅱ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중대한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a.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이하, 혹은 중독(중상)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 b. 구역 생태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 혹은 멸종위기에 처한 물종 생존환경이 오염된 경우
 - c.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지 경제, 사회활동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대중이 이주한 경우
 - d. 1유형, 2유형 방사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 e.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요 하천, 호수, 저수지 및 연해 수역이 대면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혹은 현 급 이상의 도시수원지 취수가 중단되는 오염사건의 경우
- **비교적 중대한 환경사건(Ⅲ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비교적 중대한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a. 사망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 혹은 중독(중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 b.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지급(地級) 행정구역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현지 경제, 사회활동이 영향을 받는 경우
 - c. 3유형 방사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 **일반 환경사건(Ⅳ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일반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a. 사망자가 3명 이하인 경우
 - b.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지급(地級) 행정구역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일반적인 대중성 영향을 미친 경우
 - c. 4유형, 5유형 방사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이상의 등급분류 표준에 관련된 데이터 중 “이상”은 해당 숫치를 포함하고 “이하”는 해당 숫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환경 오염사고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사고 혹은 기타 돌발성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오염사고 유발 혹은 오염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반드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속히 오염위험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 및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事業單位)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고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법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2006년 전 환경보호총국에서 반포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돌발 환경사고정보 보고방법(시범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사고 혹은 기타 돌발 사건의 발생 및 환경이 심각한 오염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통보 및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중, 환경 긴급 상황이라 함은 환경 중 오염물질 의 확산, 희석, 분해, 정화에 불리한 기상 등 기타 자연현상이 나타나 그로 하여금 환경 중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취집 및 축적되고 흡입되어서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주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대형 오염과 공해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 환경 오염사고 보고의 기본규정

돌발 환경 사고의 보고는 초기보고, 후속보고와 처리결과보고의 3개 유형으로 나눈다.

- 초기보고는 사고 발견 후로부터 1시간 내에 보고,
- 후속보고는 관련 기본상황을 자세히 조사한 후 수시로 보고,
- 결과처리보고는 사고처리 완료 후 즉시 보고. 보고는 반드시 적절한 방식을 취하되 현지 대중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초기보고는 전화 혹은 직접 보고의 방식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사고의 유형, 발생시간, 장소, 오염원, 주요 오염물질, 인원피해 상황, 학살하고 별목한 국가 중점 보호대상의 야생 동식물 명칭 및 수량, 자연보호구의 피해면적 및 정도, 사고 잠재위험 정도, 전환방식 추세 등 초보적인 상황들이다.

후속보고는 네트워크 혹은 서면 보고의 방식이 있는데 초기보고를 기반으로 관련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사고발생의 원인, 과정, 진척된 상황 및 취할 응급조치 등 기본 상황들이다.

처리결과보고는 서면 보고의 방식을 취한다. 처리결과보고는 초기보고와 후속보고의 기초 상에 사고처리의 조치, 과정과 결과, 사고의 잠재적 혹은 간접적 위험, 사회적 영향, 처리 후의 잔존문제, 처리업무에 참여한 해당부서와 업무내용, 위험 및 손실과 관련된 증명서류 제출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 핵 및 복사사고의 보고는 핵안전 법규 보고제도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각 부서 간의 정보교환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기업 환경오염사고 보고의 내용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면 오염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의 1시간 내에 현지 환경보호부문에 사고발생 시간, 장소, 유형, 배출한 오염물질 수량, 경제적 손실 및 인원피해 등 상황에 대해 초기보고를 해야 한다.

사고 조사 후에는 반드시 사고발생의 원인, 과정, 위험, 취한 조치, 처리 및 잔존문제, 방비조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해야 하고 관련되는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또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신속히 오염영향 우려가 있는 기관·업체,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환경오염 사고의 관리 및 처리

가. 환경오염 사고의 조사처리

(1) 환경오염 사고의 조사처리 절차와 요구

기업은 사고 조사처리 단위를 설립하고 관련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처리의 효율성, 신속함, 환경위험 방지를 보장하도록 확보한다.

- 기업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보고를 받거나 혹은 현장조사 중에 환경오염 및 파괴성 사고의 발생을 발견했다면 등록을 하고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위험한 후과 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 사고조사팀이 사고현장에 투입된 후 즉시 사고발생 부문에 지시함과 동시에 협조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오염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환경모니터링기관에 요구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추적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 조사팀은 반드시 전반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시청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감사·실사 서면기록 등이 있다.
- 조사팀은 오염사고 발생 시간, 장소, 오염원 및 주요 오염물질, 경제적 손실액, 인원 피해상황 등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의 유형과 등급을 확인한다.

- 조사팀이 사고발생의 원인, 과정, 위험 및 취한 조치와 해당부문 책임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기업 주관부서에 조사보고를 제출하고 처리의견도 동시에 제출한다.
- 기업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오염사고 성질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면 즉시(1시간 내) 상급 주관기관 혹은 부서에 보고하고 또 현지 환경보호 부문과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현지 환경보호 부문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상급에 보고한다.
- 환경오염 사고의 보고는 초기보고, 후속보고와 처리결과보고로 나눈다.
- 기업이 환경오염 사고에 관해 기록하여 파일을 만들고 환경 통계방법에 편입한다.

(2) 환경사고의 관리 요구

기업 각 부서의 책임자는 반드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검사, 심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발견된 여러 가지 잠재적 오염사고 발생원에 대해서는 잠재적 환경사고 우려가 있는 업체에게 방비조치를 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방비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업 각 부서의 책임자는 환경오염사고 보고를 발견한 후 오염사고의 심각성을 기업 임원진과 관련부문에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해당인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환경주관 부서는 기타 관련부서와 인원을 조정하여 현지 환경보호기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처리 중 주의해야 할 점은:

- a. 우선 오염사고 근원과 영향 범위를 확정하고 즉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업체 혹은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보호 및(혹은) 해산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국민 생명재산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인다.
 - b. 방법을 강구하여 즉시 사고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정지시키고 오염범위를 통제 하고 감소시킨다.
 - c. 사고 발생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에 관련되는 상황을 기록하며 사고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샘플링 기록에 사인, 확인하도록 요구하여 사후처리에 편리하도록 한다.
- 기업 환경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환경오염사고의 상황, 위험 및 처리의견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결정한다.

- 기업은 환경오염 사고에 관해 신속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보고상황이 진실하지 않은 것, 혹은 정돈을 거쳐도 여전히 잠재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분쟁은 기업 책임자가 직능부서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협조 처리하며 조정이 아니 될 시, 쌍방 당사자에게 법률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행정소송안건은 법률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국가와 지방의 관련 환경 법률법규를 실천하고 기업 내부에서 환경사고처벌제도를 제정 및 실시하며 오염사고의 정도에 근거하여 상응한 책임자, 부문에 대해 처분, 처벌을 진행한다.
- 환경오염사고 처리 완료 후 기업은 처리상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며 1개 사건 1개 파일의 표준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기록하여 서류로 남긴다. 환경오염사고 처리 완료 후 기업은 오염사고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시한다.
- 사고 처리과정에서 상급 기관, 주관부서 및 현지 경찰, 안전생산감독관리기관이 각자의 직능대로 사고를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한다.

(3) 환경사고의 조사 및 원인분석

기업 관리에 있어서 절차를 세우고 어떻게 사고조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사고경과 서술

당사자 혹은 현장인원이 사고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환경사고의 주요 경과를 기록한다.

○ 사고조사

- a. 조사받는 사건의 유형
- b. 조사의 목적
- c. 사고 주요원인 확정
- d. 목격자 인터뷰 준비

○ 사고 원인분석

- a. 직접원인 분석: 현장의 사고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때 세부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고의 진실한 원인을 찾고 그 초점에 맞추어 정확하게 분석한다.
- b. 간접원인 분석: 평소 단 하나의 정보수집이라도 중요시해야 한다. 평소 소홀히 하는 몇 개 부문에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 활동상황, 인원상황, 환경조건 등 현상들이 있다.
- c. 연구업무 성질 및 활동 특징: 연구업무 성질이라 함은 한 단계씩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해당 업무를 완성해나가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때 부문에 대하여 분석 및 연구하여 활동과 관리부분에 대한 연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 d. 과거의 사고에 대한 연구: 사고를 분석하고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문제 즉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이다.
- f. 최적의 방안을 확정: 사고발생 후, 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각종 활동 특징을 연구하는데 주요 목적은 최적의 시정방안을 제정하여 이런 유사한 문제의 재차 발생을 피하려는데 있다.

(4) 환경사고의 시정 및 예방조치

일반적으로 환경사건, 사고 및 위험 현상이 나타난 후, 시정조치나 예방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야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지어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 또는 잠재적 원인을 제거한다.

시정과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은 하나의 지속적인 개선과정으로 기업이 처리 및 후속 사고처리 등 일련의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은 반드시 사고, 사건 발생 후 상세한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기업이 환경관리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관리 마인드를 구현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은 우선 활동, 제품과 서비스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사고 우려를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의 환경요소와 환경영향을 이해하고 환경사고와 사고우려를 피하거나 혹은 감소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파악하며 그 발생 후과와 기업의 관리능력을 파악하고 자체 처리능력과 필요한 보상능력을 명확히 하여야만 각종 실제상황과 경험에 근거하여 정확한 처리방안 및 조치를 확정지을 수 있다. 또한 실시과정 중 인원능력, 교육수요 및 자원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끊임없는 실천과 내부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사고처리와 분석방법을 완비해 나가고

사고우려를 피하거나 줄이는 신공법, 신기술을 채용하고 직원자질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의 환경위험을 줄이거나 혹은 그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방식(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환경사고 및 후속조치의 적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처리 후속조치의 실시상황을 검사하고 오염예방을 검사하며, 특별히 “예방을 위주로, 예방 및 처리를 결합”하는 원칙이 각항 조치 중에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되는 교육이나 홍보내용의 실천상황을 검사하고 각항 조치 중의 과학성, 적정성, 실용성과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고처리 및 적용한 각항의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오염예방의 작용을 하고 목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환경사고 응급관리

중소기업을 놓고 볼 때 종업원 능력 자질이 비교적 낮고, 환경보호의식이 차이가 있으며, 생산투입이 부족하며 기술관리가 뒤떨어지고 생산, 서비스 및 운반과정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사고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여 제때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주변 환경과 주민 안전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반드시 환경 응급관리를 중시하고 강화하여 응급대응절차 혹은 응급대비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환경 응급관리 개념 및 법률적 근거

○ 환경 응급관리 개념

환경 응급관리라 함은 환경돌발사건에 대한 응급관리로서 기업 생산경영 및 제품 서비스 중의 각종 환경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사망, 재산손실, 환경오염 등 각 유형의 돌발사건에 대한 예방, 처리, 회복 재건설 등 업무를 말하며 기업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 기업 응급관리 법률근거

기업의 사고 응급대처능력은 기업생산, 직원안전, 환경영향, 사회가 본 기업에 대한 태도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17조, 제33조, 제69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50조, 제51조, <소방법> 제16조 등은 본 기업의 생산사고 응급구조 대응책을 마련 및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경영업체 주요 책임자가 기업안전 업무에 대한 직책 중 하나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환경 응급대비책

2-1)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용 및 특징

○ 응급대비책의 기능

응급대비책은 돌발사건 예를 들면 자연재해, 특별히 중대한 사고, 환경공해 및 인위적인 파괴로 인한 응급관리, 지휘, 구조계획 등을 말한다. 이는 5개 중요한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완벽한 응급조직 관리지휘 시스템, 강력한 응급공정 구조보장 체계, 종합조정 및 대응의 상호지원 시스템, 충분한 재난대비의 보장공급 체계, 종합적인 구조응급시스템 등이다.

대비책 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 ① 응급능력 교육에 사용
- ② 응급훈련에 사용
- ③ 응급시설, 설비, 기재의 정기 검사, 정비, 보수, 갱신에 사용
- ④ 응급물자에 대한 정기 검사, 보완, 갱신에 사용

기업 생산경영임무의 변화, 인원 변동, 설비 갱신, 관리 조정에 따라 제때에 응급대비책을 수정해야 하고 응급대비책의 응용을 통해 응급문화를 보급시켜 의식, 지식, 능력, 물자준비 등 방면에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 응급대비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대비책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완비하고 발전하도록 한다.

○ 응급대비책의 작용

응급대비책 제정은 일부 법률법규의 요구, 예를 들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위험 화학품을 생산, 경영, 저장, 운반,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고응급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응급대비책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응급준비와 대응절차를 지원한다. ISO 14001:2004는 응급준비와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사용량이 크고 환경영향이 큰 위험화학품은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응함으로써 예방 혹은 수반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조직내부 응급관리를 강화한다. 긴급 상황과 사고의 발생은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바, 예를 들면 액화가스탱크 누출인데 국부 누출일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누출될 수도 있다. 긴급 상황과 사고 발생의 불확정성 때문에 환경영향 역시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응급대비책 수립과 실시를 통해 각종 긴급 상황과 사고 모의 훈련을 진행하여 실제로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영향을 저감

시킨다. 또한 응급훈련은 하나의 위험화학품을 관리하는 핵심 체제를 양성하고 조직의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응급대비책의 특징

- 응급준비와 대응 중에서의 기술조치 역할을 부각시킨다. 즉 의식적으로 기술방안을 응급관리 및 응급대비책에 융합시켜 응급관리로 하여금 일정한 기술적인 지지를 받아 환경위험 저감의 목표를 실현토록 한다.
- 2차 오염을 예방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다. 확정된 응급위험 범위와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오염예방에 부합되는 응급규칙을 제정한다. 예를 들면 응급시설설계, 도구 세팅 등 효과적인 응급구조 조치로 환경 2차 오염의 위험을 최대한 저감시킨다.
- 기업과 관계측이 응급관리 중에서의 교류와 협상 메커니즘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면 관계측의 환경요소 분별 및 관리계획 강화, 기업내부 각 부서 간의 교류 및 협조, 그리고 외부 지원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강화 등이다.

2-2) 환경 응급대비책과 환경관리체계 기타 요소와의 관계

○ 응급대비책과 중대한 환경요소의 관계

작성한 응급대비책은 반드시 중대한 환경요소와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만 응급대비책은 반드시 이러한 환경요소에 대한 통제가 실효적일 경우 나타나는 후과와 서로 적응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응급구조 과정 중에 새로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목표와 지표의 요구,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응급대비책과 목표, 지표의 관계

응급대비책과 목표, 지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반드시 목표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한다. 응급대비책을 실시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요소를 통제하고, 잠재적 사고의 발생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환경목표를 실현한다. 또한 응급대비책의 실시효과는 목표 수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응급대비책과 응급절차의 관계

응급대비책은 특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취하는 테스트에 대한 개괄적 서술이다. 응급절차와 대비책은 모두 응급대응 조치와 행동을 실시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면 응급대응대피, 응급조치 절차, 외부 응급대응기관과의 연락절차, 중요한 기록과 설비의 보호절차 등이 있다. 실천 중에서 응급절차와 응급대비책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3) 환경 응급대비책의 요구

○ 응급준비와 대응수요 분별

기업은 응급준비와 대응절차 혹은 응급대비책 수립 시, 우선 응급준비와 대응수요(응급대응 설비 수요 포함)를 분별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 환경요소 분별, 평가 및 오염통제의 결과
- 환경법규 및 기타 요구
- 기존 사고, 사건 및 긴급 상황의 경험
- 유사한 기업의 기존 사고, 사건 및 긴급 상황의 경험

이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 응급대응 지도팀 구성, 책임자 지정
- 환경응급대비책 제정
- 환경 응급대비책 실현을 위한 관련 보조절차 수립
- 충분한 양의 응급대응 설비 및 시설 제공
- 응급대비책 및 절차에 대한 평가
-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응급절차 및 대비책에 대해 테스트

○ 응급대비책 정보 수집

- 중요 환경요소 리스트. 중요 환경요소 리스트 중 각 위험물품에 관한 긴급 상황 및 통제 조치가 있다. 본 리스트를 참조하여 응급대비책을 하나씩 수립하며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MSDS). MSDS 중 위험화학품의 각종 긴급 상황 및 취할 조치에 대한 건의가 포함되어 있어 대비책 작성에 있어서 근거로 삼는다.
- 응급조치 상황. 목전의 응급대응 조치현황을 조직한다. 예를 들면 소화기 분포 및 사용 상황, 소화전의 분포 및 사용 상황, 소화용 모래의 비치 등이다.
- 긴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 장소 상황. 위험화학품을 저장, 운반, 사용하는 등 각 장소는 그 위치 및 주위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다를 수 있다. 응급대비책 작성 시 이러한 장소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응급대비책 작성 요구

-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파괴성 영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액화가스 폭발연소의 속도는 일반연소 속도의 1000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응급대응 인원은 그 책임을 철저히

- 이행해야 하는 바, 지휘팀의 책임 및 응급조치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구조기관과의 연락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소방서와의 연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등이다.
- 명확한 보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지휘팀 구성원의 통신방식은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어도 2가지 연락방식을 보유한다. 보고내용은 간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발생 시 화재 성질, 현황, 발생장소와 위치를 보고하고, 대외연락의 경우에는 상술한 내용을 보고한 외에도 사람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구조기관을 영접한다.
 - 2차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는 근절한다. 응급대비책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규정한 응급조치는 2차 오염을 유발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디젤유가 누출되어 물로 세척했을 경우 오일을 함유한 오수가 우수배관망에 유입하여 2차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다.
 - 모 업체의 위험화학품을 대상으로 한 응급대비책을 작성하거나 위험특징이 유사한 여러 개 위험화학품에 관한 응급대비책을 작성할 수 있다. 응급대비책은 단독으로 하나의 파일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절차문서나 혹은 작업지도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2-4) 환경 응급대비책의 내용

〈건설프로젝트 환경위험평가 기술규칙〉(HJ/T 169-2004)에 의하면, 오염사고 응급대비책의 기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응급대비책 기본내용]

순서	프로젝트	내용 및 요구
1	응급계획구역	위험목표: 장치구역, 저장구역, 환경보호목표
2	응급조직구조, 인원	공장, 지역 응급조직기관, 인원
3	대비책 분급 대응조건	대비책 레벨 규정 및 분급 대응절차
4	응급구조보장	응급시설, 설비 및 기자재 등
5	신고, 통신 연락방식	응급상태를 전제로 신고, 통신방식, 통보방식 및 교통보장, 관제 등 규정
6	응급환경모니터링, 응급조치, 구조 및 통제조치	전문그룹이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
7	응급검사, 보호조치, 누락제거 조치 및 기자재	사고현장, 인근구역, 방화통제구역, 오염통제와 제거 및 관련 설비
8	인원 긴급철거, 대피, 응급 조제량 통제, 철거 계획	사고현장, 공장인근, 사고 영향을 받은 구역 성원 및 주민의 독물 응급 조제량에 대한 규정, 철거계획 및 구급, 의료구급과 대중건강
9	사고응급구조 정지절차 및 회복조치	응급상태 중지절차 규정, 사고현장 사후처리 및 회복조치, 인근구역 사고 경계구역 해제 및 사후회복조치
10	응급대응 교육계획	응급대응계획 제정 후 평소에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11	군중교육 및 정보	공장인근 구역에 대한 주민 교육훈련 및 관련정보 발표

2-5) 환경 응급대비책 관리

○ 응급대비책 심사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 작성완료 후 생산, 기술, 품질, 안전 물자, 재무 등 부서의 종합평가를 거쳐 방안 중 연관되는 기술조치, 설비시설 및 자금수요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타당성 분석의견을 제기, 응급대비책 실행가능성을 보증하며 상급기관에서 심사해야 한다. 필요 시, 환경보호 인원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며 응급대비책 실시의 안전성을 보증한다. 응급대비책 심사완료 후 각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책임자의 사인 확인 후 실시한다.

○ 응급대비책 상세 내용의 인계

응급대비책 심사 후 각 해당부서는 매 항목의 업무를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업무 중 연관되는 중요환경요소의 응급통제조치, 실행 기본요구 및 발생 가능한 화재, 폭발, 화학품 누출, 설비 시운전 등 돌발 환경문제의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한 응급구조기능 및 응급시설설비의 배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인계함으로써 실무자가 환경 기본 응급요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긴급 상황 대응조치가 부당하여 환경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응급대비책 상세 내용의 인계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 확인해야 하고, 각 부서의 관리인원이 감독하여 실시한다.

○ 응급대비책 교육

환경 응급대응 교육 범위는 기업 각 해당부서의 모든 관련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즉 각 유형의 응급대응팀의 인원을 포함함과 동시에 긴급 상황 발생장소에서 일하는 잠재 인원도 포함해야 한다. 응급대응팀 인원에 대한 교육의 중점은 각기 다른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와 절차 및 각자 분담하는 업무내용이다. 교육내용은 주로 서로 다른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대비책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인원으로 하여금 응급대응의 직책분담, 응급구조절차, 응급대응 물자의 저장장소 및 취득방식, 인원대피 노선과 요구 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응급대응과정이 조화롭고 질서 정연하도록 하여 환경사고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응급대응교육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중교육, 전문교육, 직무에 따른 단독교육 그리고 홍보칼럼이나 벽보 등 광범위한 홍보교육 등이다. 각 부서는 자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응급대응교육은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나 또 현장 관련 교육, 직무 관련 활동, 안전내용 인계 및 훈련 등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교육방식 선택 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수준과 업무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일정한 방식을 취하여 교육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교육이 기대효과에 도달하도록 한다.

○ 응급대비책 훈련

기업은 대비책의 계획요구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여 응급대비책에 대한 평가 혹은 이미 규정된 응급대비책에 따라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 후 평가결과나 실제 대응효과를 근거로 응급준비의 충분성과 응급대응의 적시성, 정확성, 효과성에 대해 평가 심사한다.

그리하여 응급준비와 대응과정 중 존재하는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보완, 교육훈련 강화 등 조치를 취해 응급준비와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중요한 환경 민감구역, 중대한 오염원이 많을 시에는 평가 혹은 테스트 빈도를 증가하고, 평가 혹은 테스트 효과를 향상시켜 환경 돌발사고와 긴급 상황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저감해야 한다.

3. 환경오염 사고 응급 대응

가. 환경사고 응급 대응

응급대응은 환경 돌발사고 발생 시에, 기업 및 관련 책임자가 사전에 작성하고 훈련한 응급대비책에 따라 제때에 오염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로써 최대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1) 응급 대응의 시작

응급준비가 충분할 경우 모든 환경 돌발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하며, 대응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 오염사고 초급단계에서는 조치를 취해 위험을 제거하고 오염 확산을 통제한다.
- 오염사고 중급단계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회적 혹은 지역사회 지원을 요청하여 사태 확산을 방지한다. 큰 범위의 유독가스 누출 혹은 대면적 수역 등 상황에서는 즉시 현지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그의 응급조치 실시에 따라야 한다.
- 오염사고 후기에는 자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면, 모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인원피해가 없도록 한다. 만약 사람이 이미 질식, 중독 혹은 사망이 되었다면 구조대원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인원구급을 실시해야 한다.

(2) 응급 대응의 절차

- 응급대응절차 또는 응급대비책 및 오염사고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신속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출팀을 결성한다.
-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오염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영향을 줄인다.
- 관련 구조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구조과정 중 법규를 위반하는 지휘와 모험적인 작업은 엄금하여 구조 중의 사망, 손해와 재차 오염을 피한다.

응급대응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진행하는 응급구조 과정으로서 그 목적은 최대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오염과 영향을 방지하거나 또는 저감하려는데 있다.

응급대응의 속도, 절차와 구조방법의 적절성, 효과성은 응급대응의 결과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모 주택건설 프로젝트는 화재정보가 신속히 알려지지 않고, 부당하게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결국엔 참사를 빚어냈다. 또한 모 노상(路床) 공사선로 사고 구조 중, 구조 조치가 부당하여 비탈면 붕괴, 제방 훼손이 발생하여 더 큰 손실과 2차 오염을 유발하였다.

정확한 응급대응을 위해서는 당시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응급대응절차 또는 응급대비책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질서 있게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다양한 환경 잠재사고와 긴급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성 있게 응급대응절차 또는 응급대비책을 제정해야 한다.

응급대응절차 또는 응급대비책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응급구조 조치를 포함시켜 환경오염 돌발 상황 발생 시 제정한 조치대로 구조행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중대한 안전생산사고 발생의 경우, 업체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즉시 구출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시 : 액체염소 누출 응급대응 절차]

액체염소 누출 응급대응 절차

일련번호/수정 상태 : EMS2—2004—07/00

1 목적과 범위

본 절차를 작성한 목적은 액체염소 저장 및 운반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누출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출 양을 줄이고 누출된 액체염소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본 절차는 제3작업장 액체염소의 사용 작업단계에만 적용되는 응급준비와 대응이다.

2 직책과 권한

- 2.1 안전 환경보호 부서에서 액체염소 저장탱크와 배관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응급구조 시설과 안전보호 장치 준비(혹은 교체)를 책임지고 외부와의 연락 구조를 책임지며 본 회사직원과 주위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담당하고 응급대비책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를 책임진다.
- 2.2 제3작업장 현장 근무 직원은 내부연락을 담당하고 현장의 긴급 구조업무를 책임진다.
- 2.3 생산부서는 액체염소 운반설비의 일상 점검 수리, 긴급 구조설비의 정기 점검 수리 업무, 사고발생 후의 현장정리와 생산회복 업무를 책임진다.

3 예방요구

- 3.1 안전 환경보호부서는 관련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감독기관과 연락하여 액체염소 장치에 대해 검사함으로써 액체염소 장치가 완벽하도록 보장한다.
- 3.2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7시 정도에 생산부 설비실은 한명의 정비공을 현장에 파견하여 액체염소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며 “설비검사 상황 기록”을 완비해야 한다.
- 3.3 현장생산 인원은 액체염소설비의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제때에 설비실 당직인원에게 통보한다.
- 3.4 당직인원은 통보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수리하기 힘들 시에는 즉시 생산부 담당자 및 안전 환경보호 부서의 책임자와 연락함과 동시에 일정한 유지보수 조치를 취하여 액체염소 누출을 방지한다. 생산부와 안전 환경보호 부서 책임자는 연락을 받은 후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고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상의한다.

4 응급대비책

- 4.1 안전 환경보호 부서는 액체염소 작업장에 방독면과 방호복 8세트, 누출막이용 공업윤활제 5kg와 고정띠 200m을 비치해 놓고 이에 대해 매년 1회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근처에는 소방용 수도꼭지 2개를 설치하고 지하배수구는 폐수처리 수집탱크에 연결되어야 한다.
- 4.2 생산부 설비실은 매년 소방용 수도꼭지, 집수탱크에 대해 1회 이상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사고발생 시 시설이 온전하도록 보장한다.
- 4.3 액체염소 누출사고 발생 시, 당번을 맡은 반장은 현장 지휘를 책임지고 일부 인원을 배치하여 생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며 인원을 구성하여 긴급 구조를 실시하고 1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 환경보호 부서와 생산부서의 책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4.4 현장인원은 다음의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 4.4.1 생산라인의 인원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생산 운영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급상황 진전을 세밀히 관찰한다.
 - 4.4.2 긴급 구조 인원은 우선 방호장치를 착용한 다음 액체염소 누출구를 막고 또 대량의 물로 누출구의 액체염소와 염소를 씻어낸다.
 - 4.4.3 연락담당자는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되 현장의 위험상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한다.
- 4.5 안전 환경보호 부서 인원은 정보 접수 후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태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직원 및 주위 주민 대피 여부, 외부 구조 요청 여부,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등을 확정한다.
- 4.6 생산부 책임자는 전화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생산을 정지 여부를 확정짓는다. 사고현장을 통제된 후에는 설비실에 연락하여 설비에 대해 보수, 정비한다.

- 4.7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소로 인해 액체염소 저장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누출 양이 많을 경우, 현장 근무 인원은 다음의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 4.7.1 우선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방호조치를 잘하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을 정지한다.
 - 4.7.2 저장탱크 중 남은 액체염소는 최대한 빨리 액체염소 탱크로리에 전이시켜 사고발생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 4.7.3 모래주머니와 같은 대형물체로 누출구를 막는다.
 - 4.7.4 일부 인원을 파견하여 한 면으로는 안전 환경보호 부서와 생산부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회사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대피하도록 하며 그 대피방향과 간단한 자체방호조치 (예를 들면 젖은 수건으로 입과 귀를 막는 등)를 알려준다.
 - 4.7.5 현장 긴급 구조 인원은 대량의 물로 누출된 염소와 액체염소를 씻어내어 염소가 외부로 확산 되는 것을 저감한다.
 - 4.7.6 안전 환경보호 부서는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인원을 배치하여 주위 주민을 대피시키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시나마 염소 흡입을 예방하도록 알려준다.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현지 환경보호국, 소방서와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안전 환경보호 부서의 기술책임자는 자체 방호를 잘하고 현장에 도착 후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현장 긴급 구조를 지휘한다.
- 4.8 수처리 작업장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집수탱크 중 산성폐수에 대해 중화처리를 진행하여 PH가 6~9에 도달해야 배출되도록 한다. 만약 세척한 물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중화하여 배출한다.
- 4.9 사고조사가 끝나면 생산부는 될수록 빨리 생산이 회복되도록 한다.

5 내, 외부 연락방식

- 5.1 안전 환경보호 부서 전화 ○○, 부장 핸드폰 ○○, 생산부 전화 ○○, 부장 핸드폰 ○○.
- 5.2 환경보호국 전화 ○○, 소방서 전화 ○○, 근처 ○○공장 환경보호과 전화 ○○.

6 응급대비책 테스트 및 평가심사 요구

- 6.1 응급대비책 수립 후, 작은 용기에 소량의 액체염소를 담아 공장구역과 주민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서 테스트 및 훈련을 진행한다. 안전 환경보호 부서와 제3작업장 전체 인원은 모두 실제 훈련에 참가한다.
- 6.2 사고발생 후 안전 환경보호 부서와 생산부는 사고발생 원인과 응급조치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요소 기록표”에 기록한다.
- 6.3 테스트 훈련과 평가심사 후 수정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 환경보호 부서에서 <문서 관리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7 인원 교육

- 7.1 행정 사무실은 <직원교육절차>에 따라 생산부 관리인원, 안전 환경보호부서 및 제3작업장 모든 근무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매 인원마다 본 절차 중의 업무절차, 요구, 연락전화에 대해 숙지하도록 요구한다. 안전 환경보호부서, 제3작업장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방호지식 교육과 실제 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 7.2 행정 사무실은 매년 1회 해당인원을 대상으로 본 절차와 방호지식에 관한 필기시험을 조직하며 80점 이상에 도달해야만 합격 통과한다. 안전 환경보호부서는 본 부서와 제3작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매 2년 1회 훈련교과를 진행한다. 불합격자는 자습 혹은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합격하도록 한다.

8 관련 참고 문서

- <문서관리절차> QEEMS2—2004-01/00
- <직원교육절차> EMS2—2004-05/00

9 관련 기록표

- 설비검사 상황기록 EMS4—2004-09
- 환경요소 검사표 EMS4—2004-01
- 문서수정 신청서 QEEMS4—2004-03

나. 응급처리의 실시

기업은 환경사고 발생 후 응급대비책을 가동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현재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고 관계 측에 통보한다.

응급처리 실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응급대비책과 일치해야 한다.
- 잠재적 혹은 실존하는 환경영향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응급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대비책을 실시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응급대비책은 분별된 잠재적 사건 혹은 긴급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긴급 상황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설령 응급테스트를 아무리 능숙하게 하였다하더라도 실제 대응과정 중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응급대응 시에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곧바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응급대응 인원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이 통일적으로 배치한 대응이다.
- 분리대응, 협업의 상호 협력을 견지하며 응급대비책이 각 대응인원의 직책을 명확히 구분한 목적은 응급대응 과정 중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관련 응급대응 인원은 대비책의 배치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단결협동의 마인드로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전제하에서 대응활동을 협조하여 진행한다. 현장 응급 지휘자는 각 활동의 진전 상황을 잘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근거하여 제때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먼저 사람을 구출하고 나중에 물건을 옮기며 안전이 우선이고 환경이 다음이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환경의 긴급 상황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반드시 우선 먼저 사람을 구하며 최대한 인원사망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재산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응급관리 평가와 오염예방

응급대응과 구호활동이 끝난 후 응급대비책과 응급대응 과정의 적절성, 효과성 및 충분성에

대해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응급대비책과 관리체계 중 존재하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다. 또 응급대비책, 응급준비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개선은 사건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유사한 현장에도 적용하고, 개선조치의 영향범위를 확대하여 그로 하여금 더욱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좋은 효과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관리체계 PDCA 순환과정방법을 응용하여 시중일관 오염예방 원칙을 실현하고, 응급준비와 대응 중에 PDCA의 관리이념을 응용하여 생산, 서비스 및 전반 과정 통제관리 중 긴급 상황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기존의 경험교훈을 분석 및 정리하고 기업의 긴급 상황, 사고와 관련되는 법률법규의 기타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이 입는 가장 큰 위험, 사고결과, 종합능력과 위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분석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수정과 예방조치를 취하며, 또한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기업의 응급능력과 사고 처리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응급준비와 대응실천 중, 시중일관 오염예방의 이념과 방법을 응용하며, 될수록 우선 먼저 긴급 상황과 잠복해 있는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또 사고의 잠재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 긴급 상황과 사고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인다.

긴급 상황과 사고 발생 후 가장 긴요한 때에 적절한 역할을 발휘하고, 또한 최대한 빨리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GB/T 14001—2004 <환경관리체계 요구 및 사용지침>중 시스템 관리 및 오염예방 이념을 응용하여 전반적인 응급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관리 환경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라. 응급대비책 사례

기업은 응급대비책 작성 시 대비책의 간결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본 기업의 위험특징에 입각하여 잠재적 중대한 위험, 사고유형, 사고발생의 가능성, 사고후과 및 영향의 심각성을 분별하고 평가한 기초 상에서 진행해야 한다. 현장 응급 처리방안의 작성업무를 강화하고 관건이 되는 부분, 중점부서, 중요목표 응급대비책의 제정을 중시하며, 응급대비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기업관리 및 직원의 환경보호의식, 현장처리 및 재난방지 대피, 자구능력, 서로 구해주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응급대비책 견본으로 참고하기 바라며, 각 기업은 자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응급대비책 예시-1]

○○○회사의 페인트 응급대비책

1 눈에 들어갔을 경우

- 1.1 즉시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되 눈꺼풀 안쪽은 충분히 깨끗하게 씻는다.
- 1.2 될수록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

2 피부에 닿았을 경우

- 2.1 면직물(예를 들면 옷)로 닦아낸다.
- 2.2 비누 혹은 피부세척제 사용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되 용제나 희석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3 피부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3 실수로 흡입한 후

- 3.1 만약 페인트 중 휘발성 기체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3.2 만약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또는 호흡이 정지되었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토한 내용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4 실수로 먹었을 경우

- 4.1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 4.2 구토한 내용물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5 화재 시의 조치

화재발생 시, 당직자는 신속히 주위에 가연성물건들을 치우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길을 진압하고 부서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만약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 폭발까지 발생했다면 당직자는 부서팀장에게 통보하고 부서팀장은 구조팀을 구성하여 관계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철수시키며 119에 신고접수를 한다. 화재원인과 현지상황, 발생위치를 보고하는 동시에 사람을 보내 신고접수를 하도록 한다.

6. 페인트가 누출 됐을 경우

- 6.1 신속히 주변의 인화성물질을 치운다.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물건이나 가연성물질)
- 6.2 누출된 페인트를 치울 때에는 방호물품을 착용한다. (장갑, 보호마스크, 방호복, 보호안경 등)
- 6.3 적은 양의 페인트가 누출 됐을 경우, 마른모래나 흙, 기타 불연성물질을 누출된 곳에 뿌려 흡수 시킨 후 회수해야한다.
- 6.4 많은 양의 페인트가 누출 됐을 경우, 흙더미를 주위에 높게 쌓아 유출을 방제해 주고 누출된 것을 용기에 담아 밀봉 및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놓아야한다.
- 6.5 서로 부딪혀 불꽃이 생기지 않는 공구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회수해야한다.
- 6.6 누출된 페인트를 빗물이나 오염망에 버리지 않는다. 이는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6.7 누출된 페인트에 젖은 회수물이나 폐기물은 위험물질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응급팀 구성 및 연락방법

팀장 : x x x 연락처 : x x x 부팀장 : x x x 연락처 : x x x
 팀원 : x x x 연락처 : x x x

8. 구조 지정 병원

x x x 병원, 연락처 : x x x
 작성 : x x x 심사 : x x x 승인 : x x x 실행일자 : xxxx년 xx월 xx일

[응급대비책 예시-2]

○○○기업의 폐수처리 작업 지침서

1. 일반적인 관리

- 1.1 폐수처리 보조약품과 수질관측의 용이한약품, 표준액등 배합하여 처리한다.
- 1.2 폐수량의 사정에 따라 때 맞춰 폐수처리 장치를 가동한다.
- 1.3 방류하는 산업, 생활 폐수의 수질현황이나 색깔, 냄새 같은 것들을 항시 확인한다.
- 1.4 COD와 pH지수 측량 결과와 폐수 방류량 및 약품소모량(공업황산)등의 항목을 <폐수처리 및 검측표>에 기록해 둔다.

2. 정확조가 넘쳤을 때의 대비방안

- 2.1 도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알려 즉시 오수운송펌프를 닫게 한다.
- 2.2 즉시 생기부 팀장에게 종합보고를 한다.
- 2.3 폐수정류소 관리자는 보수관리공에게 임시펌프를 이용하여 침수된 곳의 오수를 퍼내게 한다.
- 2.4 필요할 시, 환경감찰부에 통지해야 한다.

3. 산업 및 생활폐수처리 장비가 고장났을 때의 대책안

- 3.1 고장난 장비를 꺼준다.
- 3.2 즉시 생기부 담당자에게 종합보고를 한다.
- 3.3 수리공은 폐수조작관리자와 협조하여 폐수를 예비정화조에 퍼낸다.
- 3.4 수리공은 고장난 장비를 교환 또는 수리를 한다.
- 3.5 필요할 시, 환경감찰부에 통지해야 한다.

4. 공업용 황산조가 넘쳤을 경우 대비책

- 4.1 남아있는 황산을 예비통에 옮겨 담는다.
- 4.2 바닥에 있는 황산을 알칼리용액으로 중화한 후 물을 뿌려 닦아내어 준다.
- 4.3 처리 시, 반드시 부식방지 방호용품을 착용하고 산과 알칼리성분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작성 : x x x 심사 : x x x 승인 : x x x 실행일자 : xxxx년 xx월 xx일

[응급대비책 예시-3]

○○○석회석 광산 안전사고 응급대비책

1. 작성목적

중대한 생산안전사고발생과 환경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응급상황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제, 처리하기 위함이다. 작업자와 기업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주위의 생태계 환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응급상황과 대비책 모두를 중요시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이 예안을 제정한다.

2. 위험성분석

2.1 기업 상황

어느 시멘트유한공사광산부에는 우수한 품질의 대형 저알칼리석회석광산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작업자는 43명, 채굴축적량은 1억톤에 이른다. 응급설비로는 굴착기 3대, 180 불도저 2대, 시추기 3대, 7655 에어드릴 2대, 승합차 1대, 광석운반차 9대, 급수차 1대, 삽과 곡괭이 각각 5자루가 있으며 회사에는 의무소방대와 의무실이 갖추어져 있고 동시에 기타 관련 설비와 공구생산업체와 사업관계를 맺어 필요한 설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위험성분석

광산에서 생산 과정 중에는 화재나 폭발, 자연화재, 설비의 인한 상해, 작업자 중독, 질식 등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사고 중점 지역에 있는 것: KQ-200A 시추기 3대, WD-400 굴착기 3대, 7655 에어착암기 3대, KQD-80 시추기1대, 3364 와 3364Q 광석운반차 9대, 살수차 1대, 당번교대차량 1대, 수압파쇄기 1대, 원추파쇄기 2대와 파쇄기 부속장치, 폭발현장.

지질재해구역에 있는 것: (1)모든 광석운반도로, 약 3.5km; (2)채광장: 채광범위 0.76km², 채광해발고도의 높이는 주위지형보다 20~50m높게; (3)경계언덕: 제1채굴구역 190~140m, 언덕높이 50m, 제2채굴구역 200m~180m 언덕높이 50m; (4)폐석장: 면적 3000m². 주요위험물품: 발파자제, 휘발유, 경유 등 위험물품

3. 조직 및 직책

3.1 대표 임원구성 응급 업무팀

팀장: 공장장

부팀장: 부공장장

조원: (생략)

회사는 사고예방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장장과 안전과 임원, 각부서 임원들로 구성하여 일상업무와 안전관리를 겸하여 관할한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회사 내 사고예방위원회를 기반으로 즉시 공장장이 총책임을 맡고 안전과 임원이 다음으로 총책임을 맡아 응급구원 업무를 조직 및 지휘를 책임지고 지휘본부를 총통제실에 배치한다.

3.2 대표임원구성 사고현장응급팀

현장지휘자: 광산부 임원

현장부지휘자: 광산부 부임원

안전담당자: (생략)

기술지휘: 부서 임원

직책: 사고발생시 응급상황을 책임지고 응급구조작업과 긴급수리작업을 담당한다.

구성원: 각 부서 임원

공사팀: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현장 시공을 맡는다.

팀장: 부서 임원

팀원: 10 명

응급구조팀: 응급구조팀은 다른 인원들을 응급구조하고 기계장비를 구출하며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팀장: 부서 임원

팀원: 6명

물자조달팀: 즉시 구재물자를 제공하고, 각종 소식을 전달한다.

팀장: 부서 임원

팀원: 3명

예비팀: 긴급구조 시 유연성있는 지원을 담당한다.

팀장: 부서 임원

팀원: 파쇄작업장 10명

4. 비상대응책

4.1 사고 급수 분별

1급: 광산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고. (대형화재, 대형수재, 지질재해, 사상자 발생 사고)

2급: 광산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일반적인 화재, 비교적 작은 낙반사고 등의 지질재해, 부상자 발생 사고)

3급: 채광작업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대비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4.2 긴급신고절차

SP-09 긴급준비태세실행 및 통제에 응하는 절차

발견 → 한 단계씩 상부에 보고 → 지휘한다 (혹은 지휘기구에 보고) → 응급대비책 실행

(1) 긴급신고

사고발생 후, 현장인원은 즉시 상부로 보고하고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 및 대비책을 강구한다. 주의: 사고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부에 보고)

광산부, 안전보호 처리반은 관련부서나 소방, 의료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것 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안전보호 처리반은 구역 내 직책관리부에 종합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지휘 및 통제

화재사고, 폭발사고, 지질재해, 수재, 장비사고 및 기타 심각한 사상사고가 발생 했을 시
 최초발견자: 부서와 회사 안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만약 사고가 통제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지침서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진행을 돕는다. 통제가 불가
 능한 상태라고 생각된다면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고 반장이나 당직주임에게 보고하며 위험하게
 불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당직주임 또는 광산부임원은 신고가 접수된 후, 신속하게 응급지원대비책처리 지침을 하달해야
 하고 지휘부 인원이나 대비책관여인원들을 즉시 사고현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3) 사고현장 도착 후, 우선적으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상자를 재빨리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 부상이 심각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보내 구조할 수 있도록 함.

(4) 지휘부 인원은 사고현장 도착 후, 사고현장의 상태나 위험정도에 따라 알맞은 응급대응을 하고,
 각 응급 구조대에게 즉시 구조활동을 하도록 명령함. 만약 사고규모가 클 시, 안전관리반은
 신속하게 치안관리기관(소방지구대, 치안지구대, 방화안전위원회)과 안전감찰국, 질병위생 관리
 센터에 사고상황과 원하는 지원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고위험이 미치는 공장 안쪽에 인원의 안전을 확인할 때, 신속히 관련 인원을 구성하고 가까운
 기관에 협조하고 공장구역 밖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안전지대로 피난시킨다.

(6) 의료팀은 현장에 도착하면 상해를 입었거나 중독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조한다. 중독된 사
 람은 반드시 중독증상에 따라 즉시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부상자는 상처부위를 깨끗
 하게 하고 봉대로 감싸주고 산소를 공급하여 응급처치를 해준다.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7) 긴급설비 보수대는 사고현장 도착 후, 지휘부가 하달한 보수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설비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대비해 통제한다.

(8) 사고현장을 통제할수있다 생각 될 시, 즉시 두 개의 특별업무팀을 결성한다.

특별업무1팀: 안전, 방위, 생산, 노동조합, 환경보호, 기계설비와 사고발생부서로 구성된
 사고조사팀. (사고발생원인조사와 방법대책 수립업무를 검토)

특별업무2팀: 생산재개팀 (짧은 시간안에 생산시스템 재개와 예방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5. 현장복구 및 사고조사

5.1 환경보호

고체폐기물은 SP-27 고체폐기물배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처리

액체폐기물은 SP-34 누출된 석유 및 폐유배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처리

5.2 설비 및 생산재개

광산부와 회사 내 기계설비, 수리 등 관련부서는 훼손된 장비를 긴급수리하고 단 시간안에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지시한다.

광석운반도로와 채석장에 파괴된 곳을 즉시 복구; 비탈길 내리막구간에 있는 석재들을 청소하고
 비탈길을 보강하여 위험요소를 없앤다.

생산조건을 갖추었다는 상황 하에 회사안보반 관련부서로 구성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응급상
 황해제를 알려 생산을 재개한다.

6. 응급상황준비

SP-09 응급준비의 대처와 통제대응절차:

응급인원훈련: 회사 내 구성된 응급훈련과 안전교육에 참가; 광산부 응급훈련교육

대비책 연습: 회사 내 구성된 대비책 연습, 광산부는 매년 8월에 한번 대비책을 결성해 연습

공공 교육: 직원교육, 매주한번씩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모아 광산안전지식교육을 진행한다.

광산지역에 출입을 못하도록 주변마을주민에게 알리고 경비원을 당직으로 세워 채석장으로 들어
 가는 인원을 발견 시 교육을 진행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전 직원이 단합하여 정확하게 사고
 처리를 하고 광산부에서 제대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회사와 체결한 구조지원조직에게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다.

7. 대비책 훈련과 연습

응급관리인원은 회사안보사무실이 조직한 긴급사고처리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의무실에서 조직한 구조훈련에 참가하여 심폐소생술과 외상구급지식을 알고 있어야한다. 광산부는
 매년 8월 응급구조와 관련된 내용의 훈련을 한 차례 해야하고 아래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내용: 화재, 지질재해, 부상자 현장응급구조, 감전사고 응급구조 등. 광산부는 응급사고구조
 대비책을 숙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 대비책 유지보수 및 개선

응급사고 구조대비책은 광산부가 제정, 매년 1~2월에 광산부 조직인원이 응급사고 대비책을 개선을 진행하고 안전보호반에 승인 등록한다.

승인 후 각 작업현장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달하고 동시에 항상 주의해서 아래 내용을 검사하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즉시 응급사고구조대비책을 수정해야 한다.

- A: 응급인원의 신분과 연락처
- B: 응급물자의 변화
- C: 작업현장, 광산구역지도와 변화
- D: 운수노선의 변화
- E: 응급조직의 변화

9. 경비 확보

광산사고응급구조대비책에 필요한 경비는 안전보호반에 원서를 제출하고 안전환경반은 실제상황에 따라 요구를 만족시켜준다. 재해발생 과정 중 필요한 경비는 사고응급구조 임원그룹이 해결한다.

10. 대비책 지원첨부

- SP-1: 문서자료 관리절차
- SP-09: 응급준비 및 통제대응 절차
- SP-22: 위험원인식별 및 통제평가 절차
- SP-32: 전자기기설비 안전관리절차
- SP-33: 개인방호용품 통제절차
- SP-35: 특정설비 통제절차
- SP-36: 위험작업 통제허가 절차
- SP-38: 소방안전관리 절차
- SP-27: 고체폐기물 배출절차
- SP-34: 누출된 유류품 및 폐유의 방류절차
- SM/EHS-011: 사고조사 및 보고절차의 처리진행
- 각 공정별 작업지침서
- 광산부 지질재해와 홍수예방 대비책
- 폭파시공 과정 중 사고처리
- 광산부 화재진압 방안
- 기타 첨부

11. 관련 규정과 요구

사고발생 후, 신속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항시 응급 구조작업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생산책 임제와 관련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조치로는:

- (1) 응급구조시스템에 구조지휘부인원과 구조인원은 전공에 따라 일을 분담하고 맞는 그 전문성을 근거로 하여 구조원칙을 지도, 집결, 전개하기 편하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인원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매년 초 인원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조정하고 구조시스템의 현실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 (2) 임무분담에 따라 물자 및 기자재(지휘통신, 경보, 소방, 긴급수리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통공구)를 준비한다. 앞서 말한 기자재는 지정된 담당자가 보관하고 정기점검 및 보수하여 그것들을 양호한 상태유지 비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3) 각종제도를 개선하여 수립: 검사규정(매월 생산작업 안전검사와 합하여 정기적으로 응급구조작업 실현현황 및 기자재 보관현황을 검사한다.) 정기집회규정(매 분기 첫째 달 첫 주에 지도팀 구성원과 구조대 책임자가 회의를 개최하여 응급구조작업에 대해 토의한다.) 전체적인 작업을 비교 평가하며 안전한 생산작업을 하는 동시에 검사 및 평가하여 표창 및 격려를 진행하도록 한다.

12. 첨부문서 (생략)

[제 3 부]

기업의 환경관련 증빙 및 기록 관리

1. 환경관리 증빙 기록과 준수사항

가. 환경관리 운영 증빙과 기록

- 『기록』의 정의: “취득한 결과를 명백히 밝히거나 완수한 활동의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 문건”임

상술한 정의에 근거해 볼 때:

- ① 기록은 취득한 결과를 명백히 알아내거나 종사활동의 증빙 문건을 제공한다. 서식은 기록이 아니고, 서식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증빙성 문건이 되며, 비로소 기록이 될 수 있다.
- ② 기록은 환경관리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추적 가능한 증빙을 제공하고, 채택한 시정 조치와 예방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공한다. 환경기록 관리는 기록의 표식, 보존, 처리 등이 포함된다.
- ③ 기록은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을 채용하고, 디스켓이나 CD, 전자매체, 사진 등으로도 가능하다. 승인을 거친 기록표는 보통 오랜 시간 사용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판본 번호는 집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환경관리과정, 환경관리체계의 실행에 있어 주요하게 포함되는 것:

- a. 환경관련 법률, 법규와 기타 명세서를 적용;
- b. 중요한 환경요소와 관련 있는 환경영향;
- c. 환경 훈련기록;
- d. 검사, 조정과 유지기록;
- e. 환경검측 기록;
- f. 환경고발과 처리조치;
- g. 무허가 상황과 환경사고 보고;
- h. 관련자와 환경정보 교류기록;
- i. 관련 공급자와 청부자 환경통제 기록;
- j. 과정정보;
- k. 생산품정보 기록;
- l. 환경법규 준수 평가결과;
- m. 내외부 환경환경 감사, 검사 혹은 심사결과;
- n. 환경평가결과;

- o. 환경회의 기록;
- p. 환경성과 기록;
- q. 법률법규 부합성에 대해 기록;
- r. 기타 환경운영과 관련된 기록;

나. 환경관리 운영 증빙과 기록의 관리

- ① 환경기록의 통제 순서와 관리제도를 제정·실시하고, 직책과 과정 및 통제 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한다.
- ② 환경 기록 명세를 만든다.
- ③ 환경기록의 통제 직책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치한다.
- ④ 공급자 환경통제와 관련자 정보교류 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 ⑤ 환경 기록관리 요구를 명확히 한다. 기록내용, 보관, 식별, 검사 및 처리기준을 규정한다.
- ⑥ 중요 환경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관련인원이 작성한 진실성, 적시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 ⑦ 정기검사와 적합한지, 심사평가한 환경 관리 활동 및 기록 등이 조화로운지 확인한다.

2. 환경관리 운영 증빙과 기록 표서식 예시

이 장에서 소개하는 운영관련 증빙, 기록의 표격 양식, 제공하는 중소기업 표준환경관리 운영 증빙, 기록 격식과 아래의 각종 서식내용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 표2-1 ~ 표2-30

〈표 2-1〉 환경요소 조사/등기표 (예시)

부서 _____

순	번					
활동/제품/근무						
환경요소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상태	정상					
	비정상					
	긴급					
영향	대기					
	수질					
	소음					
	토양					
	자원					
	에너지					
기타						
비고						

편집: 날짜: 심사: 날짜: 승인: 날짜:

〈표 2-2〉 환경요소 평가표 (예시)

부서 _____

순	번					
활동 / 제품 / 근무						
환경요소						
시간						
상태						
환경요소 평가	단위점수제					
	시비판단법					
중대 환경요소 여부						
비고						

편집: 날짜: 심사: 날짜: 승인: 날짜:

〈표 2-3〉 중요 환경요소 명세서 (예시)

부서 _____

순번	관련부분	중요환경 요소	시간	상태	환경영향	오염원 혹은 부서	통제방식
	활동/제품/근무						

편집: 날짜: 심사: 날짜: 승인: 날짜:

〈표 2-4〉 환경관리체계 문서 법률법규 일람표

순 번	명칭	발부시간	문서번호	발부회사	설치일자	비고

표 제작자: 부서책임자: 표제작일자: 년 월 일

<표 2-5> 법률법규와 기타 요구명세서 및 준법성 평가기록표

부서 _____

순번	환경요소	법률법규와 기타요구명칭	실시일자	사용조항	어떻게 본조직에 적용 4.3.2	적합성 평가 4.5.2	적합성 증빙	평가자	평가시간	개정조치 4.5.3	비고

<표 2-6> 회사인원 능력평가 기록표 (예시)

부서 _____

순번	성명	직책	교육	훈련	경력	업무능력	결론평가

평가부서책임자:

일자:

평가인:

일자:

〈표 2-7〉 환경교육 훈련기록표 (예시)

훈련내용					
훈련교사			훈련교사		
훈련시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훈련장소		
순번	청강인원성명	작업부서	출석교사	성적심사	인증번호

〈표 2-8〉 정보 연락처 리스트 (예시)

번호

환경요소			
발생지점			발생시간
영향정도			책임부서
외부연락기관			
환경성분제품의 원인서술:			

환경성분제품의 원인서술:

서명:

년 월 일

처리방안:

서명:

년 월 일

관리자 대표심사:

서명:

년 월 일

〈표 2-9〉 관련자 건의/불만 대책보고서 (예시)

<input type="radio"/> 외부	<input type="radio"/> 내부		
발생시간: 년 월 일	책임부서:	제안부서:	
건의/불만내용:			
제안부서책임자소견:			제안인:
품질관리부 의견:			부서책임자 서명:
책임부서기입 발생원인:			관리대표 서명:
시정대책:			
예방대책:			
대책결과확인:			관리부서책임자:
관련문서수정확인:			책임부서확인:
피드백 확인:			품질관리부 확인:
			제안인:
			제안부서책임자:
비고: 현장사진 등과 같은 증거자료 있다면 함께 동봉합니다.			

〈표 2-10〉 테스트 문서 리스트 (예시)

순번	문서번호	문서명칭	비고

〈표 2-11〉 문서 송수신, 회수기록 (예시)

순번	문서번호	문서명칭	발급부서	사용자서명	사용일자	회수인	회수일자	폐기일자
	발급번호							

〈표 2-12〉 문서 변경 통지서 (예시)

번호

문서번호	문서명칭		
인쇄횟수	변경상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상황	변경부서	변경부수	변경부서서명
			변경일자

변경: 일자: 심사: 일자: 승인: 일자:

〈표 2-13〉 문서변경 기록표 (예시)

순번	변경문서통지서번호	변경문서구절번호	변경쪽수	변경상태표시	변경인과시간

〈표 2-14〉 오염물/폐기물 배출처리 기록 (예시)

순번	오염물/폐기물	배출부서	배출량/배출농도	배출행방	배출일자	기입자

〈표 2-15〉 사고조사 보고서 (예시)

번호

기업자:

일자:

사 고 발 생 부 서			
발 생 지 점		발 생 일 자	

환경오염, 사상인원과 재산손실상황:

사고발생경과:

사고원인 및 성질:

사고처리의견 및 건의

시정조치건의

조사구성원 서명:

〈표 2-16〉 중대사고 및 긴급상황 처리기록 (예시)

번호

중대사고 및 긴급상황 유형	<input type="checkbox"/> 화재	<input type="checkbox"/> 폭발	<input type="checkbox"/> 누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 생 지 점 및 부 서				
발 생 일 자 및 시 간				
중대사고 및 긴급상황 요약설명				
응 급 대 응 처 리 과 정				

비고:

〈표 2-17〉 환경검측 기록표 (예시)

환 경 요 소	검측장소	검측인/일자	검측통계수치	배출표준/결과분석	문제처리

〈표 2-18〉 합법성 평가기록 (예시)

순 번	환경 요소	적용법률법규와 기타요구명칭	적용조항번호 (지표)	합법적증빙	평가결과	평가인
						일자

〈표 2-19〉 시정(예방) 조치 기록표 (예시)

번호

책 임 부 서			
부적합 (잠재적 부적합) 사실서술:			
원인분석:	주관부서책임자:	일자:	
시정 (예방) 조치건의:	주관부서책임자:	일자:	
시정 (예방) 조치실행상황:	관리자대표:	일자:	
시정 (예방) 조치검증:	책임부서인:	일자:	
	검증인:	일자:	

〈표 2-20〉 내부 심사 계획 (예시)

번호

심 사 목 적				
심 사 범 위				
심 사 허 용				
심 사 인 원 구 성	성명	심사직무	자격	인원번호
				A
				B
				C
				D
			E	
심 사 일 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심사일정 활동 준비				
심 사 날 짜 시 간	심사받는 부서	적용조항 (요소)	인원번호	

편집: 일자: 승인: 일자:

〈표 2-23〉 내부 심사 보고 (예시)

번호

심사목적		심사범위	
심사허가		심사받는 부서	
심사구성원	제 1조: 제 2조:		
심사일자			

심사상황 총론:

심사결론:

시정조치요구:

심사조장 (편집): 년 월 일 관리자대표 (승인): 년 월 일

〈표 2-24〉 부적합 항목 분포도표 (예시)

조항 (요소)	부 서							합 계	
4.2								보통	심각
4.3.1									
4.3.2									
4.3.3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5.1									
4.5.2									
4.5.3									
4.5.4									
4.5.5									
4.6									
합	보통부적합								
계	심한부적합								

[주의] ◇ : 보통 부적합 항목; X : 심한 부적합 항목

〈표 2-25〉 환경평가계획 (예시)

평가 시간		장소		번호	
평가 인원					
평가 목적					
평가 범위					
작업준비요구					
순번	부서				비고
배포					
공동서명					
편집		년	월	일	대조심사
					년 월 일

〈표 2-26〉 관리평가기록

평가 시간		평가 장소	
회의 주최자			

평가목적:

참가한 평가인원 (부서):

평가내용요약:

1. 문서체계의 실용화;
2. 법률법규준수상황;
3. 환경방침의 실용화;
4. 환경목표, 지표 및 환경관리방안의 완성상황;
5. 환경관리체계의 유효성과 충분성;
6. 환경내부심사의 유효성;
7. 부적합, 시정과 예방통제시스템 및 그것의 유효성.

평가결론:

개선, 교정, 예방요약 및 책임부서:

편집: 심사: 승인: 일자:

〈표 2-27〉 목표, 지표와 환경관리방안 일람표 (예시)

총 쪽 / 제 쪽

환경 목표	환경지표	환경관리방안	비용/위엔	책임부서

편집:

승인자:

년 월 일

〈표 2-28〉 기업환경목표 (예시)

(____년도)

환경 관리 목표		
중요 환경 요소	해결목표	책임부서

편집:

승인자:

년 월 일

〈표 2-29〉 기업 환경목표 관리방안 (예시)

기 업 명 칭		심 사 인 원	
편 집 부 서		편 집 인 원	편 집 일 자

방안내용:

편집: 승인자: 년 월 일

〈표 2-30〉 환경관리제도 일람표 (예시)

순 번	제도명칭	효력발생일자	비 고
1	환경생산책임제도		
2	환경생산책임심사제도		
3	목표심사제도		
4	환경검사제도		
5	환경교육훈련제도		
6	출근 전 환경활동제도		
7	소방책임제도		
8	치안방위제도		
9	환경사고보고처리제도		
10	환경자원시설관리제도		
11	응급구조예방제도		
12	환경보호자금보장제도		
13			
14			
15			

편집: 년 월 일 심사: 년 월 일 승인: 년 월 일

[부록]

<부록 1> 환경보호법(개요)

- [환경보호법]은 중국 환경정책의 전반에 걸쳐 기본법이 되고 있음. 동 법이 제정되기 전 우선 1979년에 [시행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 법 제1조는 동법이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음을 명기하고 있음
-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동 [시행법]에 의한 기본방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보호와 경제건설, 사회발전의 협조
 - 오염물 발생 요인 제거 정책과 발생 후 처리 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
 -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종합이용을 도모
 - 환경을 파괴한 자가 회복하고 자가 대책을 수행
 - 환경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환경보호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환경교육을 충실히 이행
- [환경기본법]은 시행법으로 그 효력을 계속해 오다가 1989.12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 통과함으로써 정식 법률로 시행되게 되었음
- 2014년 4월 2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4번째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 1989.12.26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
 - ※환경보호법 수정 경과
 - 1차 심의: 2012년 8월,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28차 회의
 - 2차 심의: 2013년 6월,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3차 회의
 - 3차 심의: 2013년 10월 2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5차 회의
 - 4차 심의: 2014년 4월 2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8차 회의
- 신규 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 신설
- 동 법 제1조에 따르면, '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대중 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법에 국가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이 천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동 법에서는 환경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천연적인, 그리고 인공개조를 거친 자연요인을 일괄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 물, 해양, 토지, 매장광물, 산림, 초원, 습지, 야생생물, 자연유적, 인문유적,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 동 법은 총칙, 감독과 관리, 환경의 보호와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법률책임, 부칙의 7장 7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에서는 경제 사회의 발전과 동등한 수준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에 환경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대중 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라 함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천연적인, 그리고 인공개조를 거친 자연요인을 일괄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 물, 해양, 토지, 매장광물, 산림, 초원, 습지, 야생생물, 자연유적, 인문유적,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도시와 농촌 등이 포함된다.

제3조 동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절약 및 순환이용, 환경보호 및 개선,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등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비, 대중참여, 손해책임부담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6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환경질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 및 감소해야 하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손해를 유발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환경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고 저탄소적, 절약적인 생활방식을 취하며 환경보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을 지지하고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독려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촉진,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및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의 사용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홍보와 보급 사업을 강화하고 말단 대중성 자치조직, 사회조직, 환경보호 자원봉사자가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 지식 홍보를 독려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서와 학교는 환경보호지식을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학생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언론매체는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지식의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전국의 환경보호사업의 실시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할 행정구역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처와 군대환경보호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원보호 및 오염방지 등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1조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및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장려를 한다.

제12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한다.

제2장 감독과 관리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부처와 더불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근거한 국가 환경보호규칙을 제정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개 및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부처와 더불어 국가 환경보호규칙의 요구에 따라 관할행정구역의 환경보호규칙을 제정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및 실시한다. 환경보호규칙의 내용에는 생태보호 및 오염방지의 목표, 임무, 보장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주체기능구역규획, 토지이용종합규획, 도농규획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관련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제정책과 기술정책을 제정할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국가 환경질량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환경질량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지방 환경질량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 환경질량기준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 환경질량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 환경질량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방 환경질량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되어야 한다. 국가는 환경기준 연구 실시를 독려한다.

제16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국가 환경질량기준과 국가의 경제조건, 기술조건에 근거해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되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환경관측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측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더불어 관측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가 환경질량관측소(지점)를 통일적으로 규획하여 설치함. 또한 관측데이터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환경관측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한다. 관련 업종과 전문분야 등 각종 환경질량관측소(지점)를 설치함에 있어 법률법규의 규정과 관측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관측기구는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관측설비를 사용하고 관측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관측기구와 관련 책임자는 관측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 또는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환경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자원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19조 개발이용규획을 제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건설할 때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개발이용 규획은 조직과 실시를 금지하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건설 사업은 조업 개시를 금지한다.

제20조 국가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중점지역과 유역의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연합방지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통일적인 규획, 통일적인 기준, 통일적인 관측, 통일적인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상기 규정 이외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사업은 상급 인민정부가 조정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조정하여 해결한다.

제21조 국가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 등 분야의 정책과 조치를 취해 환경보호 기술장비, 자원종합이용, 환경서비스 등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독려 및 지지한다.

제22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층 저감해야 하며 인민정부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 등 분야의 정책과 조치를 취해 이를 독려 및 지지해야 한다.

제23조 인민정부는 기업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전환, 부지이전, 폐쇄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 및 그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며 피검사자는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부서, 기구와 관련 사업인원은 피검사자를 위해 상업기밀을 보장해줘야 한다.

제25조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거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시설과 설비를 봉인, 차압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

보호 목표완성상황을 동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 및 관련 책임자와 하급 인민정부 및 관련 책임자의 심사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심사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심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 달성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법에 따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와 개선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목표와 환경정비 임무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환경질량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환경질량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중점지역과 중점구역의 지방인민정부는 기한 내 목표달성계획을 제정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 민감구역, 생태환경 취약구역 등 구역에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설치하고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대표적인 각종 유형의 자연생태시스템구역, 진귀한 또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자연분포구역, 중요한 상수원함양구역, 중대한 과학문화가치가 있는 지질구조와 저명한 종유동, 화석분포구역,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 인문유적, 고수명목(古樹名木)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 보호하여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제30조 자연자원을 개발 이용할 때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법에 근거해 생태보호 및 복원정리 방안을 제정 및 실시해야 한다. 외래생물종을 도입하거나 생물기술을 연구, 개발, 이용함에 있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생물다양성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국가는 생태보호 지역의 재정이전 지불을 강화하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 보상자금을 규정대로 활용해야 하며 생태보호 보상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지역과 생태보호지역 인민정부가 협의방식 또는 시장규칙에 따라 생태보호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한다.

제32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상응한 조사, 관측, 평가, 복원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제33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농업환경보호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농업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예·경보를 강화한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토양오염과 토양사막화, 알칼리화, 염화, 석막화, 지면침강을 방지하며 식생파괴,

수토유실, 수체 부영양화, 수자원 고갈, 물종멸종 등 생태균형 실조현상을 방지해야 함. 식물 병충해에 대한 종합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향(乡)급 인민정부는 농촌 환경보호 공공서비스수준을 제고시키고 농촌의 환경종합정리를 강화한다.

제34조 국무원과 연해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해안공정과 해양공정의 건설에 있어 법률법규 규정과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를 방지 및 저감해야 한다.

제35조 도농 건설은 해당지역의 자연환경 특징에 부합되어야 하고 식생, 수역과 자연경관을 보호하며 도시원림, 녹지와 풍경명승구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제36조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단체가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과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독려 및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단체는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재료절약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설비,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매 및 사용해야 한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류처리, 회수이용을 지도해야 한다.

제38조 국민은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잘 이행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환경에 대한 손해를 줄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환경과 건강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평가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또한 환경질량의 대중건강에 대한 영향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독려 및 조직하며 상응한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 및 통제한다.

제4장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

제40조 국가는 청정생산과 자원순환이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한다. 기업은 청정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자원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배출량이 적은 공법과 기술, 폐기물 종합이용기술, 오염물질 무공해 처리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41조 건설사업 과정에 주체공정과 오염방지 시설을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오염방지 시설은 비준을 거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임의로 분해 또는 방치해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42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 생산건설 또는 기타 활동 중에 배출되는 폐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분진, 악취기체,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선복사, 전자파복사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 책임제도를 구축하여 업체 책임자와 관련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염물질 중점배출업체는 국가 관련규정과 관측규범에 따라 관측설비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관측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원시 관측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지하도관, 지하배수구멍, 침투웅덩이, 관주의 방식을 취하거나 관측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위조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43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해야 함. 오염배출비용은 전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되며 임의 업체와 개인이 유보, 점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할 경우 오염배출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제44조 국가는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를 실시함. 중점오염원 배출총량 통제지표는 국무원이 시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할당량을 이행함.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와 지방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 사업단위 앞으로 할당받은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환경질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새로이 증가시키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대한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한다.

제45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관리제를 실시한다. 오염배출허가관리제 실시 대상인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배출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배출허가증을 미취득할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한다.

제46조 국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법, 설비와 제품에 대해 퇴출제도를 실시함. 임의 업체와 개인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법, 설비와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환경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기술, 설비, 재료,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기업 사업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 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돌발적 환경사고에 대한 위험억제, 긴급대응준비, 긴급처리, 사후복구 등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오염 공공관측 예·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예·경보 방안을 제정한다. 환경이 오염을 입어 대중건강과 환경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적시에 예·경보 정보를 발령하고 긴급대응책을 가동한다.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돌발적 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을 제정하며 이를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함. 돌발적 환경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업 사업 단위는 즉각 상응 조치를 취해 처리하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주민들에게 적시에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관련 부처에 보고한다. 돌발적 환경사고 긴급대응처리 사업이 끝난 뒤, 관련 인민정부는 즉시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영향과 손해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적시에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48조 화학물품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생산, 저장, 운반, 판매, 사용, 처리함에 있어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 관련 부처 및 기구는 농업생산 경영자에게 과학적인 재배와 양식방법을 지도해주며 과학적 합리적으로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생산자료를 사용하고 농용 비닐박막, 농작물대 등 농업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농업 비점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용 기준과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고체폐기물, 폐수를 농경지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함.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생산자료를 사용하거나 관개를 실시함에 있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축산양식장, 양식단지, 지정도축기업 등의 부지선정, 건설, 관리는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축산양식과 도축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응당 상응한 조치를 취해 가축분뇨, 사체, 오수 등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0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 중에서 일정 자금을 배정하여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보호, 생활오수와 기타 폐기물 처리, 축산양식과 도축오염방지, 토양오염방지, 농촌 공업광산 오염정비 등 환경보호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제51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및 부가배관망, 고체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환경위생시설,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 기타 환경보호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하며 공공시설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환경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5장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제53조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획득하고 환경보호에 참여, 환경보호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처는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대중참여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국민, 법인과 기타 단체가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환경보호를 감독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국가 환경질량, 중점오염원 모니터링정보와 기타 중대한 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상황 공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처는 법에 따라 환경질량, 환경관측, 돌발적 환경사고, 환경행정허가, 행정처벌, 오염배출비용 징수 및 사용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의 환경법 위반정보를 사회신용파일에 기록하고 법률위반자 리스트를 적시에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55조 중점오염 배출업체는 자사에서 배출하는 주요한 오염물질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배출상황,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운영상황을 대외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일 경우, 건설업체가 보고서를 제정할 때 대중에게 발생가능 영향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서의 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처는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다음 국가기밀과 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건설사업이 대중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음이 발견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중의견을 책임지고 수렴하도록 요구한다.

제57조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임의 업체와 개인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 또는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처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인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신고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58조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시급(設區市)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된 사회단체

(2) 환경보호 공익활동에 연속 5년 이상 종사하고 불법 기록이 없는 사회단체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사회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경제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9조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처벌을 받고 기한 내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개정 명을 내린 다음 날부터 원 벌금액에 따른 일일연속 누진제로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규정의 벌금처벌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오염방지 시설의 운영원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실 또는 불법소득 등 요인을 확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수요에 따라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일일연속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종류를 증가할 수 있다.

제60조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비준권한을 갖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 건설업체가 법에 따라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 문서의 비준을 획득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건설조업을 개시할 경우,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처는 건설 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복원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 중점오염 배출업체가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진실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공개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공고를 낼 수 있다.

제63조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다음 중 행위를 행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가 안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 (1) 건설사업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건설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함.
- (2)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인해 오염배출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함.
- (3) 지하도관, 지하배수구멍, 침투웅덩이, 관주의 방식을 취하거나 관측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위조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함.
- (4) 국가가 생산/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생산, 사용함으로 인해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함.

제64조 환경을 오염하고 생태를 파괴함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침권(侵權)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5조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관측기구, 환경관측설비와 오염방지설비의 유지보수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기구가 환경서비스 수행과정에 허위로 조작함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책임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외에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기타 책임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6조 환경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유효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된 시기 또는 응당 알아야 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제67조 상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하급 인민정부와 관련부처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관련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처분 제안을 제출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관련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 리직책이 있는 부처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또는 직급강등 처벌을 내리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리고 관련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을 해야 한다.

- (1) 행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행정허가를 비준함.
- (2) 환경법 위반행위를 은닉해줌.
- (3) 법에 따라 휴업,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음.
- (4)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관리회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환경사고를 초래하는 행위, 생태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태를 파괴한 등의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시에 조사 처리하지 않음.
- (5) 동법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 경영장의 시설, 설비를 봉인, 차압함.
- (6) 관측데이터를 수정, 위조하거나 수정, 위조하도록 사주함.
- (7)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음.
- (8) 징수한 오염배출비용을 유보, 점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함.
- (9)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

제69조 동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70조 동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록 2> 물오염방지법(개요)

○ 1984년 5월 1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개정됨

○ 총 8장 92개조로 구성된 수질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기준과 계획, 감독관리, 수질오염방지 대책의 3개 부분이 있음

○ 주요내용

- 총칙(제1장)

- 목적 :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음용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
- 범위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등 지표수역 및 지하수역의 오염방지에 적용

- 수질오염방지의 기준과 계획

-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국가수질환경기준을 제정,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환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국가수질환경기준과 국가경제, 기술여건에 근거하여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이미 규정을 한 내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 후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 수질 오염방지 대책

- 일반규정
- 산업수질 오염방지 분야
- 도시수질 오염방지
- 농업용수 및 농촌수질 오염방지
- 선박 수질오염 방지
- 음용수 상수원지 및 기타특별수역에 대한 보호

- 수질오염사고의 처리 및 법적책임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지법

1984년 5월 1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개정됨. 2008.6.1일부로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음용수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동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등 지표수역 및 지하수역의 오염방지에 적용된다.

제3조 수질오염방지에서 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방지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음용수상수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산업오염, 도시향진 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 비점원의 오염을 방지, 생태정리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질환경 오염 및 생태파괴를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 및 저감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질환경보호 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수환경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수질환경보호목표책임제도와 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수질환경보호목표 완성상황을 지방인민정부와 해당 책임자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 과학기술연구와 선진기술의 적용 및 보급응용을 장려·지원하며 수질환경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제7조 국가는 재정이전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음용수상수원보호구역과 하천, 호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환경생태보호 보상메커니즘을 구축·보완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수질오염방지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국토자원, 위생, 건설, 농업, 어업 등 부서 및 중요 하천,

호수유역 수자원 보호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서 관련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9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중점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기업과 개인은 수질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수질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를 검거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표창 및 장려한다.

제2장 수질오염방지의 기준과 계획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국가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환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2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국무원 물 관리 주관부서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하천/호수유역 수역의 사용기능 및 관련지역의 경제, 기술여건에 근거하여 해당 중요하천/호수유역 수역에 적합한 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3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국가수질환경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여건에 근거하여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이미 규정을 한 내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 후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오염방지의 요구와 국가 또는 지방의 경제, 기술여건에 근거하여 적시에 수질환경기준과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 수질오염방지 사업은 유역/지역별로 통일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하천/호수의 유역수질오염 방지계획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 국무원 경제종합조정기구, 물관리 부서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외의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 하천/호수의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은 국가에서 확정된 중요하천/호수의 유역수질오염 방지계획 및 해당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동급의 물관리 부서 및 관련 市, 현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하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여러 현을 경과하는 하천/호수의 유역수질오염 방지계획은 국가에서 확정된 중요하천/호수 유역수질오염 방지계획과 해당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동급 물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마련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에 보고한다.

비준을 받은 수질오염방지계획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본근거이며 계획 개정안은 기존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비준을 받은 하천/호수의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제정한다.

제16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자원을 개발, 이용 및 조정할 때에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통일적인 배치를 함으로써 하천의 합리적인 수자원량과 호수, 저수지 및 지하수역의 합리적인 수위를 보존하며 수역의 생태기능을 확보한다.

제3장 수질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17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사업 및 기타 수상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때 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건설사업장에서 하천/호수에 오염배출구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 우선 물관리 주관부서 혹은 유역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항, 어업수역과 관련된 건설사업일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교통, 어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설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체사업과 동시에 설계·시공·사용되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검수에 통과되어야 하며 검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사업장은 생산 또는 사용되지 못한다.

제18조 국가는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총량통제제도를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저감 또는 통제하며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각 시, 현 인민정부에 배분한다. 시, 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의 요건에 근거하여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각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시달한다. 구체적 방법과 시행절차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수환경질 상황과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에서 총량 저감 및 통제를 시행할 중점수질오염물질을 확정한다.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관련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해당 지역의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증가시키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대한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한다.

제19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요건에 근거하여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省, 자치구, 직할시 목록을 공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요건에 근거하여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市, 현 목록을 공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동 법률을 위반하거나 수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기업을 공개한다.

제20조 국가는 오염배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수역에 산업폐수와 의료오수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소지해야 폐수와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은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영기업도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오염배출허가증 없이 또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수역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폐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1조 수역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사업자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소유하고 있는 수질오염배출시설, 처리시설, 정상작업 여건에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종류, 수량 및 농도를 신고·등록하며 수질오염방지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및 개인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기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개인사업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천, 호수에 오염배출구를 설치할 경우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중점오염배출기업은 수질오염물질배출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설비와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측정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자체 배출한 산업폐수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며 초기측정기록을 보존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수질오염물질배출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해야 할 중점오염배출기업 목록은 해당 관할지역 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의 요건 및 오염배출기업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

량 및 농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제24조 수역에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개인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종류, 수량,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한다. 오염배출비용은 오염방지에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국가는 수환경질측정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측정제도를 구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수 환경측정규범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국가 수 환경 상황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아울러 국무원 수행정 관련 부서와의 측정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26조 국가는 확정된 중요 하천/호수유역의 수 환경보호 사업기구는 소재 유역의 여러 켄간 수역의 수환경질 상황을 책임지고 측정하며 그 측정결과를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국무원 물 관련 주관부서에 적시에 보고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역수자원보호지도기구가 설립되었을 경우 측정결과를 유역수자원보호지도기구에도 적시에 보고한다.

제27조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동 법의 규정에 의해 감독·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부서는 해당 관할범위의 오염배출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조사대상 기업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 필요자료를 제공한다.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상업기밀을 고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여러 행정지역 간 수오염 분쟁은 관련 지방인민정부에서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공통의 상급인민정부에서 해결한다.

제4장 수오염 방지대책

제1절 일반규정

제29조 수역에 유류, 산성액체, 염기성액체 혹은 극독폐액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역에서 유류 혹은 유독 오염물질을 저장했던 차량과 용기를 씻는 것을 금지한다.

제30조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 혹은 高방사성 및 中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수역에 低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할 경우 국가 관련 방사성 오염방지의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1조 수역에 열량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할 경우 상응한 대책을 취해 수역의 수온이 수환경질 기준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32조 병원체를 포함한 오수는 국가의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소독처리를 거친 후 배출한다.

제33조 수역에 산업폐기물, 도시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인 등의 용해성 극독폐액을 수체에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직접 지하에 묻는 것을 금지한다.

용해성 극독폐액을 저장하는 장소에 대해 방수, 누수방지, 유실방지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제34조 하천, 호수, 운하, 저수지 최고수위선 이하의 모래사장이거나 언덕에 고체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질을 퇴적,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5조 하수도 구멍, 틈새 및 증류동 등을 이용하여 유독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6조 침투방지조치가 없는 용수로, 저수지를 이용하여 유독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 및 기타 폐기물을 수송 혹은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7조 다층 지하수의 함수층 수질차이가 클 경우 층을 나누어 채굴한다. 이미 오염된 지하수 혹은 피압수는 혼합 채굴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지하사업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탐측,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때 보호대책을 취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9조 인공관개를 통해 지하수를 보충하여 지하수질 악화를 방지한다.

제2절 산업수질 오염방지

제40조 국무원 관련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산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선을 시행한다. 종합방지대책을 취해 수자원의 중복이용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한다.

제41조 국가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낙후한 공법과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일정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공법목록과 수질오염을 초래하여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일정기간 내 금지시킨 설비 목록을 공개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혹은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설비목록 중의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사용을 중지한다. 공법 채택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공법목록 중의 공법의 사용을 중지한다.

동 조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태된 설비는 기타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국가는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소형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 유황제련, 비소제련, 수은제련, 정유, 도금, 농약, 석면, 유리, 시멘트, 철강, 화력발전 및 기타 수질환경을 심각히 오염하는 생산사업을 신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3조 기업은 원재료 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배출량이 적은 청정공법을 적용하며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물의 생성을 저감해야 한다.

제3절 도시수질 오염방지

제44조 도시오수는 집중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재정예산과 기타 경로를 통해 자금을 모아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및 부설 배관망을 건설하여 해당 행정지역의 도시오수 수집효율과 처리효율을 제고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 환경보호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도시향진계획 및 수질오염방지계획에 근거하여 전국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계획을 편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경제종합거시조정, 환경보호, 물 관리 등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행정지역의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및 부설 배관망의 건설을 추진하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영단위는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 배출자에게 오수처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여 오수집중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징수한 오수처리비용은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오수처리비용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45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배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배출수 수질이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배출기준에 부합될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운영기구는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배출수 수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배출수 수질 및 수량에 대해 감독조사를 행사한다.

제46조 생활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 침투방지 등 대책을 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제4절 농업용수 및 농촌 수질오염 방지

제47조 농약의 사용은 반드시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농약의 운송과 저장 및 품질보증기한을 초과해 효력을 상실한 농약의 처리에 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8조 현금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 농업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해당 조치를 취하여 농민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을 통제하고 수질오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축산양식장, 양식단지에 축산분뇨·폐수 종합이용시설이나 무공해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축산양식장, 양식단지는 축산분뇨·폐수 종합이용시설 또는 무공해화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하며 오수의 목표기준 배출을 통해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50조 수산양식업자는 수역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먹이와 약제를 합리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51조 농경지 관개수로에 공업폐수와 도시생활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하류와 가장 가까운 관개취수원의 수질이 농경지관개용수 수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공업폐수와 도시생활오수를 관개용수로 활용할 경우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및 농산물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5절 선박 수질오염 방지

제52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이 포함된 오수, 생활오수는 반드시 선박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양운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내륙 하천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륙하천 선박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잔유, 폐유는 회수하여야 하며 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박쓰레기를 수역에 투기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박에 유류나 독성 화물을 적재·운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출 방지 및 침투방지 조치를 취하여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53조 선박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오염방지설비와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수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에 관여하는 선박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항구, 부두, 하역사업장 및 선박 정비·제작업체는 선박오염물, 폐기물을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선박오염물, 폐기물 수거작업에 종사하거나 유류 또는 오염위험성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청결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운영규모에 맞는 수거처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55조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은 작업방법을 작성해야 하며 효과적인 안전조치 및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 사업장소재지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잔유, 기름이 포함된 오수, 오염위험성 잔여화물 수거사업을 진행하거나 유류, 오염위험성 화물 적재 선실 청결작업을 진행하는 선박.
- (2) 액상 오염위험성 벌크 화물의 환적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3) 선박 수상분리작업, 인양 또는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수상, 수중시공 작업.

어항수역에서 어업선박 수상분리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 어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음용수 상수원지 및 기타 특별수역에 대한 보호

제56조 국가는 음용수상수원지 보호구제도를 구축한다. 음용수상수원지 보호구는 1급 보호구와 2급 보호구로 구분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용수 상수원지보호구의 외곽지역을 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용수상수원지보호구역의 확정은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지정방안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여러 시, 현을 경유하는 음용수상수원지보호구역은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지정방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서가 동급 수질행정, 국토자원, 보건, 건설 등 부서와 공동으로 계획안을 제정하여 동급 발전개혁, 임업, 어업 등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를 경유하는 음용수상수원 보호구는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유관 유역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국무원 수질행정, 국토자원, 보건, 건설 등의 부서와 공동으로 계획안을 제정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음용수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용수상수원 보호구의 범위 조정을 통해 음용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지자체 인민정부는 음용수 상수원 보호구의 접경지역에 명확한 경계표지 및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57조 음용수상수원 보호구내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8조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내에 급수시설이나 상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개축·확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 완료한 급수시설 및 상수원 보호와 무

관한 건설 프로젝트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에서 이를 철거 또는 폐쇄하도록 명한다.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내에서는 가두리 양식, 관광, 수영, 낚시나 기타 음용수 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 활동이 금지된다.

제59조 음용수상수원 2급 보호구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개축·확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 완료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한다.

음용수상수원 2급 보호구내에서 가두리 양식, 관광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여 음용수수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60조 음용수상수원 보호구내에 수원오염이 심각한 건설프로젝트를 신축하거나 확충하는 것을 금지하며 프로젝트 개축 시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현금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는 반드시 음용수상수원 보호구의 실제수요에 따라 준 보호구 내에서 공정건설, 습지건설, 수원함양림 건설 등 생태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이 직접 음용수 상수원지에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음용수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62조 음용수상수원이 오염되어 급수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사업체에게 수질오염물질 배출금지 또는 저감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용수상수원 보호구내에서 인을 함유한 세척제,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재배와 양식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관광명소의 하천, 주요 어업수역 및 기타 특수 경제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하천을 보호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취해 보호구의 수질이 지정용도별 수질환경기준에 부합되도록 한다.

제65조 관광명소의 하천, 주요 어업수역 및 기타 특수 경제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하천의 보호구내에 신규로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호구 부근에 배출구를 신규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내의 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6장 수질오염사고의 처리

제66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한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긴급사고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 수질오염사고 대응준비, 대응처리 및 사후복원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67조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한 산업체는 반드시 관련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안을 제정해야 하며 응급준비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성 화학제품을 생산, 저장하는 산업체는 해당 조치를 취하여 안전생산사고 처리 중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질오염 조성 가능 소방폐수와 폐액을 직접 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68조 산업체에 중대한 사고 또는 기타 긴급사고가 발생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이미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당해 산업체의 응급대안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환경보호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이를 본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오염사고나 어업선박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발생지 어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선박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는 반드시 사고발생지의 해사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어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어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사처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법적책임

제69조 환경보호주관부서나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행하지 않거나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않는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 또는 적발신고를 받은 위법행위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분한다.

제70조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감독검사 시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하며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건설 또는 검수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정을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검수 합격 될 때까지 해당시설의 생산과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하며 5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물질배출 신고등록사항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2) 해당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연계한 모니터링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 (3) 해당 규정에 따라 배출한 공업폐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제73조 산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주관부서의 허가 없이 수질오염처리시설을 철거 또는 방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하고 배출부과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역에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이 국가나 지자체가 규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방류한 주요수질오염물질이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기한 내 정비하도록 명하며 배출부과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정비기간 동안에는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과 배출 제한을 명하거나 조업중지 후 정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조업중지 정비기간은 최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업중지기간 만료 후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쇄하도록 명한다.

제75조 음용수상수원 보호구내에 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며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50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조업중지 후 정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기 조항 외에 법률, 법규 및 국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구를 설치하였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며 2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현급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에게 조업중지 및 정비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질행정 주관부서나 유역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하천, 호수에 배출구를 신축·개축·확충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질행정 주관부서나 유역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상기조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처벌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금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 처리조치를 취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만료 후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산업체를 지정하여 처리조치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 (1) 수역에 유류, 산성폐액, 알칼리성폐액을 배출한 경우
- (2) 수역에 맹독성 폐액이나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인 등을 함유한 수용성 유독 잔재를 배출, 투기 또는 직접 매립한 경우
- (3) 수역에서 유류, 유독 오염물질을 저장했던 차량이나 용기를 세척하는 경우
- (4) 수역에 공업폐기물 잔재, 도시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을 배출, 투기하거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의 최고수위선보다 낮은 갯벌, 간석지 등에 고체폐기물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퇴적 또는 저장한 경우
- (5)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이나 고방사성, 중방사성 폐수를 배출 또는 투기한 경우
- (6)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수역에 저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 온폐수 또는 병원체를 함유한 호수를 배출한 경우
- (7) 간이 침투정(滲井), 배수 구멍(滲坑), 틈새(裂隙) 및 종유동(溶洞)을 이용하여 독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나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 또는 투기한 경우.
- (8) 침투조치가 없는 수로, 연못 등을 이용하여 독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및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나 기타 폐기물을 수송 또는 저장한 경우.

상기 조항중 제(3)호, 제(6)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이 금지되는 시설목록에 고시된 시설을 생산, 판매, 수입, 사용하였거나 수질환경오염이 심각한 원인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공정목록에 고시된 공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서에서 지정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며 5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게 조업중지 및 폐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산업정책에 어긋나는 소형제지, 제혁, 날염, 염색, 코크스, 유황 정제, 비소 정제, 수은 정제, 석유 정제, 전기도장, 농약, 석면, 시멘트, 유리, 강철, 화력발전소 및 기타 수질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였을 경우, 소재지 시·현 인민정부에서 이를 폐쇄할 것을 명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적법

· 유효한 수역환경 오염방지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해사관리기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 업무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며 2,000위엔 이상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만료 후 시정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서는 항행 잠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해사관리기관, 어업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며 2,000위엔 이상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사관리기관, 어업주관부서에서 직책역할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수질오염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한 내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질을 배제할 것을 명하며 기한 내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사관리기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역할에 따라 처리능력을 구비한 사업체를 지정해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법 선박이 부담한다.

- (1) 수역에 선박쓰레기 또는 선박에서 나오는 잔유, 폐유를 배출한 경우
 - (2) 작업지 해사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선박을 이용하여 잔유, 함유오수, 오염위험화물 잔여물의 수거사업을 진행하거나 유류, 오염위해성화물을 적재한 선실의 청결작업을 진행 또는 액상 오염위해성 벌크화물의 환적작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 (3) 작업지 해사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선박 수상 분리, 인양 및 기타 선박을 이용한 수상, 수중 시공작업을 진행한 자
 - (4) 작업지 어업주관부서의 허가 없이 어항수역에서 어업선박 수상분리작업을 한 자
- 상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0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기 제(3)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8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자체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며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철거 또는 폐쇄한다.

- (1)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내에 급수시설 및 상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신축·개축·확충하였을 경우
- (2) 음용수상수원 2급 보호구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개축·확충하였을 경우,
- (3) 음용수상수원 준 보호구 내에서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확충하였거나 프로젝트 개축 시 배출량을 증가하였을 경우.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내에서 가두리 양식, 관광, 수영, 낚시 또는 기타 음용수수역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며 2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내에서 수영, 낚시 또는 기타 음용수수역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한 개인에 대하여서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며 5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 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시정하도록 명하며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2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해당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안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 (2) 수질오염사고 발생 후 적기에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안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83조 산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하도록 명한다. 해당 요구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리능력 미비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처리능력이 있는 사업체를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중대 또는 특대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직접책임이 있는 담당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 업체로부터 취득한 수익의 50%이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또는 비교적 큰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 또는 특대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사고 직접 손실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어업오염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어업선박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는 어업주관부서가 처벌하고 기타 선박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는 해사관리기관에서 처벌한다.

제84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만료 후 행정재심사 또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이 관련 인민법원에게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85조 수질오염사고 피해 당사자는 배출자에게 위험배제 및 손실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관하여 배출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수질오염 피해손실에 관하여 배출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질오염피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출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배출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수질오염피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 수질오염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 주관부서나 해사관리기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종류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결정에 불복할 시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87조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소송에서 법에 의한 면책사유 및 배출자의 행위와 피해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배출자가 부담한다.

제88조 수질오염의 피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의해 대표를 추천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관련 사회단체는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질오염 피해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서비스기관 및 변호사가 수질오염피해소송중의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89조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기관에 위탁하여 모니터링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위탁받은 환경모니터링기관은 사실대로 관련 모니터링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9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9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질오염이란 특정 물질의 투입으로 인하여 수역에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성적인 변화가 발생해 수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인체건강을 위해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여 수질악화를 조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2) 수질오염물질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에 배출되어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한다.
- (3) 독성오염물질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체에 의해 흡수되어 해당 생물체나 그 후대의 발병, 비상행위, 유전자 변이, 생리기능 상실, 몸체변형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을 가리킨다.
- (4) 어업수역이란 지정 어패류의 산란장, 먹이장, 월동장, 회유 통로 및 어패류·조류의 양식장을 가리킨다.

제92조 이 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대기오염방지법(개요)

○ 중국은 1987년 9월 5일 대기오염방지법(원 법률명: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大氣污染防治法))을 제정하고 1991년 이 법의 세칙을 공포함.

이후 1995년 8월과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총 7장 66조로 구성된 대기오염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방지 감독 관리,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자동차나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방지, 폐가스·분진·악취 오염방지 등임. 부문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대기오염방지 감독관리>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설·확장·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영향평가 실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 전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
-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작업 조건하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양·농도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기 제도
- 대기오염물 배출농도 규제
- 산성비 오염규제지역 및 아황산가스 오염규제지역 지정과 동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규제 실시
- 오염물배출부가금 징수제도
- 특정지구(관광지역·자연보호지역·문물보호지역 및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건설금지
- 대기오염방지 중점도시 지정제도
- 낙후기술 및 낙후 설비 개선제도 실시와 청정생산기술의 채택

<석탄 연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방지>

- 고 유황·고 회분 석탄의 개발 제한, 저유황 저 회분 석탄사용 장려
- 도시연료구조의 개선, 도시가스의 생산과 사용 확대 보급 등 필요한 조치
- 규정 요구에 미달되는 보일러는 제조·판매·수입 금지
- 아황산가스 배출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규정된 오염물 배출 기준 혹은 규제지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탈황·집진 설비 설치
- 국가의 기업이 선진 탈황·집진 기술을 채용하도록 장려정책

<자동차·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방지>

- 자동차,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나 선박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의 생산과 소비 장려
-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까지 유연 자동차 연료유의 생산·수입·판매 정지
- 자동차,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오염 정기검사

<폐가스·분진·악취오염방지>

- 분진 배출업소에 대한 엄격한 방진조치, 유독 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분진의 대기 배출 제한
-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가연성기체의 회수 및 이용
-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 생산, 가스와 석탄의 코크스화, 금속제련 과정 중 황화합물을 함유한 기체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탈황시설 설치
-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피치·아스팔트·고무·플라스틱·피혁·쓰레기 및 기타 매연이나 분진·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소각 금지
- 유해성 기체 또는 분진이 날릴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역·저장 시 밀폐 또는 방호 조치
-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품 생산과 사용 장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2000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통과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2호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2000년4월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하였다. 현재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을 반포한다. 2000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0년 4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인체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반드시 대기환경보호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공업을 배치하고, 대기오염방지의 과학적인 연구를 강화하며,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각 지방의 주요 대기오염물의 배출총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관할구역의 대기환경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여 관할구역내의 대기환경 질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公安, 교통, 철도, 어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자동차나 선박의 대기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유관주관부문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모두 대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감시하고 고발할 권한이 있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대기환경기준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여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의거 하여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중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지방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배출기준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보고 등기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동차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국가 배출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정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지방배출기준이 있는 구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응당 지방배출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대기오염방지 및 그와 관련된 종합이용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와 대기환경의 보호, 개선 방면에 성적이 뛰어난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한다.

제9조 국가는 대기오염 방지의 과학기술 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각급인민정부는 식수와 잔디 조성, 도시와 농촌의 녹화사업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사막화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11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설, 확장, 개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관 건설항목의 환경보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항목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건설항목이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 및 생태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항목을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그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환경 보호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가유관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규정의 요구에 미달되는 건설항목은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중전 제10조)

제12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부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환경보호부문에 오염물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정상작업 조건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양, 농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등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기 오염방지방면의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의 오염물 배출단위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 대기오염물질 처리설비는 반드시 정상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물 처리시설을 제거하거나 방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그 오염물 배출농도는 국가나 지방규정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국가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강화된 대기오염방지의 요구와 국가의 경제, 기술 조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오염물 배출부과금 징수기준을 제정한다.

오염물 배출부과금 징수는 반드시 국가규정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징수된 오염물 배출부과금은 일률적으로 재정에 계상하여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감사기관은 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제15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항상 규정된 대기환경 질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이나 국무원이 비준하여 확정한 산성 우 규제구와 아황산가스 오염 규제구에 대하여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규제구로 규정할 수 있다.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대기오염물 총량규제구내의 유관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사업단위의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허가증을 발급한다.

대기오염물 총량규제임무가 있는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결정된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과 허가증에 규정된 배출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설정한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 문물보호 부근지구 및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설비를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오염물이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사업단위가 이미 건설한 시설에서 그 오염물이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개선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무원은 도시 총체계획, 환경보호계획 목표와 도시대기환경 상황에 의거 대기오염방지 중점도시를 정한다.

직할시, 성 정부, 연해 개방도시와 중점관광도시는 응당 대기오염 중점도시에 포함된다. 대기환경질량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기오염방지 중점도시는 응당 국무원 혹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 부문이 규정한 기한에 의거 대기환경 질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 도시 인민정부는 기한 내 기준달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무원의 위임 혹은 규정에 의거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기한 내에 기준달성계획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기상, 지형, 토양 등 자연조건에 근거하여 이미 산성우를 발생시켰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구 혹은 기타 이산화황 오염이 심각한 지구에 대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성우 통제구 혹은 이산화 황 오염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

제19조 기업은 응당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작은 청결생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대기오염물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가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낙후된 생산기술 및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낙후된 설비에 대하여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경제종합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기한을 정하여 채용을 금지하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목록과 기한을 정하여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설비목록을 공포한다.

생산자, 소비자, 수입자 혹은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규정에 삽입된 목록 중의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생산기술의 채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주관부문이 국무원유관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규정에 삽입된 목록 중의 기술의 채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앞 두 항목의 규정에 의거 도태대상인 설비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사고발생 또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유독 유해기체나 방사능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사고 또는 인체건강에 위해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단위는 반드시 즉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대기오염의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단위나 주민에게 알리고 이를 당해지역의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인체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오염물질 배출단위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명령을 포함한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 부문과 기타 감독관리부문은 관할 범위내의 오염물질 배출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검사를 받는 단위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부문은 검사대상 단위를 위하여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지켜 줄 의무가 있다.

제22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응당 대기오염 검측제도를 수립하고 검측 망을 조직하며 통일적인 검측방법을 제정한다.

제23조 대, 중 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대기환경질량 상황공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기환경질량 예보를 점차 전개해 나가야 한다.

대기환경질량 상황공보는 도시대기환경오염특징과 주요오염물의 종류 및 오염 위해 정도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석탄이 발생시킨 대기오염방지

제24조 국가는 석탄의 정제 가공을 추진함에 있어 석탄의 유황분과 회분을 저감하고 고 유황, 고 회분 석탄의 개발을 제한한다. 새로 채굴한 석탄이 고 유황 고회분의 석탄광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련의 석탄 세광, 선광 설비를 갖추어 석탄중의 유황분과 회분함량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개발하여 채굴한 석탄이 고 유황분, 고 회분의 광산에 속한 경우에는 응당 국무원이 비준한 계획에 의거 기한 내에 일련의 석탄 세광, 선광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성과 납 등 유독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석탄의 개발과 채취를 금지한다.

제25조 국무원 유관부문과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도시연료구조의 개선, 도시가스의 발전, 가스의 생산과 사용 확대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 중점도시 인민정부는 관할구역 내에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오염도가 높은 연료의 판매, 사용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당해 인민정부가 규정한 오염도가 높은 연료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며,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전기 혹은 기타 청정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석탄청결이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저유황 저회분의 유량의 석탄사용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석탄정제기술의 개발과 확대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27조 국무원 유관주관부문은 응당 국가규정의 보일러 매연, 분진배출기준에 의거 보일러 품질기준중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요구에 미달되는 보일러는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없다.

제28조 도시건설은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석탄 열 공급 지구에서 열원을 통일적으로 해결하여 집중식 열 공급을 발전시킨다. 집중 열 공급관이 설치된 지구에서는 새로이 석탄 열공급 보일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대, 중 도시 인민정부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혹은 기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염도가 높은 연료 사용금지 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대, 중 도시 시내지역의 기타 민용 취사로는 기한 내에 고체유황연탄 혹은 기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30조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화력발전소나 대중 형 기업이 규정된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규제지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탈황, 집진 설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기타 아황산가스 배출을 통제하거나 집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성 우 규제구와 아황산가스 규제구내에서 이미 건설된 기업이 규정된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 처리한다.

국가는 기업이 선진의 탈황, 집진 기술을 채용하도록 격려한다. 기업은 응당 연료연소 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인구가 집중된 지구에서 석탄, 광미, 광재, 연탄재 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소 가스나 먼지제거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방지

제32조 자동차나 선박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선박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제조당시의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오염물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그 개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준을 얻어야 한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대기오염방지의 요구와 국가유관기술규범에 따라 정비하여 사용 중인 자동차가 규정된 오염물 배출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의 생산과 소비를 격려한다.

국가는 양질의 연료유 생산, 사용을 격려하고, 연료유중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감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까지 연 함유 자동차 연료유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이미 공안기관의 자질인증을 취득한 자동차 검사 단위에게 위탁하여 규범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오염

정기검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교통, 어정 등 감독관리권을 갖고 있는 부문은 이미 유관 주관부문의 자질인증을 취득한 선박의 정기검사 단위에게 위탁하여 규범에 따라 선박에 대한 배기오염 정기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자동차를 잠시 정차시킨 채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 배출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5장 폐가스, 분진, 악취, 오염 방지

제36조 대기 중으로 분진을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방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독 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분진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화처리를 거쳐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7조 공업생산 중에 발생한 가연성기체는 응당 회수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 이용하는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 대기 중에 배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회전로의 가스, 아세틸렌, 전기로의 황린가스, 유기탄화수소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보호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가연성 기체 회수이용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회수이용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가연성기체의 방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응당 가연성기체를 충분히 연소시키거나 혹은 기타 대기오염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생산, 가스와 석탄의 코크스화, 금속제련 과정 중 황 화합물을 함유한 기체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탈황시설을 갖추거나 기타 탈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기체와 교질 용액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관방사성방호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대기 중에 악취를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주위의 주민거주지역이 오염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인구집중지구나 기타 법에 의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 내에서 피치, 아스팔트,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 및 기타 유독 유해한 매연이나 분진,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구밀집지역, 비행장주변, 교통간선 부근 및 당해 인민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곡물줄기와 낙엽 등 매연오염이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의 두 항 이외에도 도시인민정부는 실지상황을 고려하여 분진오염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 유독유해기체 혹은 분진이 날릴 수 있는 물질을 운송, 하역,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조치를 하거나 기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녹화 책임제, 건설시공관리 강화, 지면포장면적의 확대, 폐 토사 적치규제와 청결한 운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 1인당 녹지면적을 제고하고 시내의 토사노출 면적을 감소시켜 도시의 먼지날림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시 시내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시공 혹은 기타 먼지날림 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당해 지역 환경보호의 규정에 의거 먼지날림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도시의 먼지날림 오염 규제상황을 도시환경 종합정비 심사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44조 도시 식품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기름으로 인한 매연이 부근 주민거주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오존층 소모물질 대체품의 생산과 사용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오존층 소모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 오존층 소모물질의 생산량을 점차 감소시킨다.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오존층 소모물질을 생산, 수입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문이 결정한 양에 따라 생산, 수입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6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또는 이 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감독관리부서는 상황에 따라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과 경고 혹은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1)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한 유관 오염물 배출 신고 사항에 대한 보고 거절 또는 거짓보고
- (2)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감독관리부문의 현장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 시 거짓으로 대하는 경우
- (3) 오염배출단위가 대기오염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거하거나 대기오염물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4) 매연이나 분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인구 집중지구에서 석탄, 광미, 광재, 연탄재, 모래와 자갈, 먼지 등 물질을 적치한 경우

제47조 건설항목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국가유관 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규정의 요구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부문은 생산 혹은 사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4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 중으로 국가나 지방규정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 처리결정 권한과 기한 내 처리요구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9조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이 금지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사용한 경우, 혹은 채용이 금지된 기술을 채용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문이 개선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종합주관부문에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요청한다.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양도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법에 의거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은 양도자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위법소득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50조 이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과 비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을 개발, 채취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 규정의 권한에 의거 폐업을 명한다.

제51조 이 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오염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제거를 명하거나 오염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를 몰수한다.

제52조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집중 열 공급관이 설치된 지구에 새로 열 공급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이 위법행위의 정지 또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3조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선박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된 오염물 배출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자동차와 선박은 몰수하여 폐기한다.

제54조 이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 내 유연자동차 연료유를 생산, 수입 혹은 판매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 혹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생산, 수입, 판매 중인 유연자동차 연료유와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5조 이 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혹은 교통, 어정 등 법에 의거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나 선박의 배기가스 검사 측정을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혹은 교통, 어정 등 법에 의거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은 위법해위의 정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토록 하며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인증책임기관이 자동차 선박의 정기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법에 의거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토록 하며,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1) 적절한 오염방지설비를 취하지 않아 대기 중으로 분진, 악취 혹은 기타 유독 물질을 함유한 기체를 배출한 경우
- (2) 당해지역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회전로의 가스, 아세틸렌, 전기로의 황린가스, 유기탄화수소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 (3) 밀폐조치나 기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송, 하역, 저장함으로서 유독 유해 기체나 분진이 날리는 경우
- (4) 도시 식품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적절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름으로 인한 매연이 부근 주민거주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제57조 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밀집지역이나 기타 법에 의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 내에서 피치, 아스팔트,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 및 기타 유독 유해한 매연이나 분진,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구밀집지역, 비행장주변, 교통간선부근 및 당해인민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곡물줄기와 낙엽 등 매연오염이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2백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시공 혹은 기

타 먼지날림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종사하면서 먼지날림에 대한 적절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기한 내 개선토록 하고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당해지역 환경보호규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정지하고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전항 규정의 건설시공이 먼지날림 오염을 조성한 것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이 결정한다.

기타 먼지날림 오염발생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련 주관 부문이 결정한다.

제59조 이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 오존층 소모물질을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문이 허가한 양을 초과하여 생산 혹은 수입한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유관행정주관부문이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행정 주관부문이 생산, 수입 할당량을 취소한다.

제60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기한 내 설비를 일괄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새로 채굴한 석탄이 고 유황, 고회분의 석탄광산이나 국가 유관규정에 의하여 일괄 설치해야 하는 석탄 세정, 선광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 (2) 황 화합물을 함유한 기체를 배출하는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 생산, 가스, 석탄의 코크스화 및 금속제련 기업이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탈황장치를 일괄 설치하지 않거나 기타 탈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61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기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사업단위에 대하여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위해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손실의 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50만 위엔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재단위 혹은 상급주관기관이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거나 규율처분을 한다.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조성하여 공사 간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인명 사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중전 제47조 수정)

제62조 대기오염의 위해를 발생시킨 단위는 위해를 제거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손실을 받은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하여 분규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경 보호부서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63조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즉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피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64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수된 오염배출부과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감사기관 또는 검찰기관은 유용한 항목을 반환 토록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반환케 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

제65조 환경보호감독관리자의 직권남용, 직무 소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칙

제66조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개요)

○ 중국은 1995년 10월 30일 고형폐기물관리법(원 법률명: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法)을 제정하여 1996.4.1일부터 시행함

- 총 6장 77조로 구성된 고형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고형폐기물(산업고형폐기물,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와 유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 고형폐기물을 발생·보관·처리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 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삼동시(三同時)제도의 적용 대상

<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

- 고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기한 내 처리제도
- 고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통제
- 낙후기술 및 낙후 설비 개선제도 실시와 청정생산기술의 채택
- 산업고형폐기물의 신고·등록제도
- 산업고형폐기물 배출부과금 제도
- 청정에너지로의 연료구조 개선계획수립

<유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 유해폐기물목록 제정, 유해폐기물분류기준, 분류방법, 식별표지 규정
- 유해폐기물 배출 신고·등록제도
- 유해폐기물 배출부과금 납부제도
- 유해폐기물영업허가증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1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04년 12월 29일 수정 통과되었기 이에 공포하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타오(胡錦濤)
2004년 12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원칙을 실시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기 위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충분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을 실현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도시와 향(鄉)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업발전 등 계획을 수립할 때 고체폐기물 생성량 감소 및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오염자 법률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발생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법에 의한 오염방지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의 방지기술 확대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재생제품이나 재이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종합이용활동 중 성적이 뛰어난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제9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적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는 도시생활 쓰레기의 청소, 수집·보관·운송 및 처리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국가 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2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중 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기물의 보관, 이용, 처리 프로젝트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확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최초 허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의 검사 합격 후 건설프로젝트를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는 응당 주된 공정의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 감독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 관할 범위 내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다. 피검 사업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자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기관이 현장검사 시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검사 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또는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이용·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유실, 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무 곳이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 등 법률이나 법규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마음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품 및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반드시 국가의 청정생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국가경제기술조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구에 의거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포장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강제회수 목록에 나열된 제품, 포장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체 생산한 제품의 포장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과학연구나 생산기업이 회수이용 및 처리가 편리하고 쉽게 분해되는 박막 커버제품, 상품 포장제품을 연구, 생산하는 것을 장려한다. 농업용 박막을 사용하는 회사나 개인은 회수이용 등 조치를 취하여 농업용 박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 시켜야 한다.

제20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에서 발생된 분변을 수거·보관·이용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공항주변, 교통간선부근 및 당해 지방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벧짚대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제21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처리하는 설비, 시설 및 장소는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과 국무원유관주관부서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설정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생활음용수원지와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구역 내에서는 공업폐기물을 집중 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 및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고체폐기물을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반출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접수지역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고체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반출할 수 없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버리거나 쌓아놓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 또는 자동허가 수입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수입규제 및 자동허가수입 관련 고체폐기물목록을 제정, 조정, 발표한다. 수입금지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은 국무원 환경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의 공동심사를 거친 후 확정한다. 수입 자동허가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자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품질감독검사 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6조 수입자는 세관이 자신의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로 분류하는데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27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의 생산 공법 및 설비를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유관 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공법과 설비를 연구하고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생산 공법 및 시설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그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생산자·판매자·수입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에 포함된 설비의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기한 내에 각각 중지하여야 한다. 생산 공법을 도입한 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 목록에 포함된 공법의 채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된 도태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공업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업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생산 공법과 설비를 확대보급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기관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 공법,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 위해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 신고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공업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자는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발생한 공업고체폐기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이나 보관 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는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폐쇄나 철거 등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업고체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자가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에 대해 안전처리 또는 관련 조치를 취해 시설 및 장소의 안전운동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전 당사자가 공업고체폐기물 및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오염방지책임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생산을 중지한 사업자가 미처리한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비용은 관련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동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했을 경우, 토지사용권 양수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36조 광산기업은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選鑛) 기술을 채택하여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보관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기업은 국가 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봉쇄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가전제품, 폐차 및 폐 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향(鄉) 생활쓰레기 수집·운송·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생활쓰레기의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율을 높여 생활쓰레기 수집·처리 공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때에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제때에 운송, 처리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분류 수거하여 운송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이용을 적극 전개하고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야채를 깨끗이 처리한 후 도시로 반입토록 하여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회수망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의 회수이용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폐쇄, 철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공정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즉시 운송하여야 하며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공교통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시 신규(新區)개발, 구(舊)도시 개축과 주택지구 개발건설 사업자 및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장소 경영회사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법규에서 정한다.

제4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0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을 작성하며 통일적인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 및 식별표지를 규정한다.

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물 및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운송·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 조치 및 위험폐기물의 보관·이용·처리조치를 포함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신고사항 또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공동으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55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개선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결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대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 발생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6조 매립방식에 의한 위험폐기물 처리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위험폐기물 수거·보관·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이용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이용·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거·보관·이용·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거·보관·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험폐기물의 보관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방호조치가 따라야 하며, 보관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관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험폐기물을 위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제59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동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접수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위험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을 이전할 때, 위험폐기물 이동지역 및 접수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통과지역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관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도로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제거조치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위험폐기물의 발생·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돌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비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동 방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위험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업자는 반드시 즉시 환경에 대한 오염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오염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위험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5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의 폐쇄비용은 사전에 제기하여 투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개선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발급한 경우
-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3) 법에 의거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하며 벌금에 처한다.

- (1)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업폐기물을 신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
-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보관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여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되어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 (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폐지, 방치, 철거한 경우
- (5)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음용수 수원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업폐기물의 보관, 처리시설이나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 (6) 성·자치구·직할시를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임의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한 경우
- (7) 상응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고체폐기물의 흘날림, 유실, 침투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 (8) 운송과정에서 공업고체폐기물을 버린 경우

전항 (1), (8)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2), (3), (4), (5), (6), (7)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 또는 사용되는 경우 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현장검사 집행부서가 기한 내 개선을 명한다. 개선을 거부하거나 검사 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000元 이상 2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금류의 분변을 수거·보관·처리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태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도태된 생산 공법을 채용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개선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3조 광미,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4조 이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 개선을 명하며 벌금에 처한다.

-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버리거나 또는 쌓아두는 경우
-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 (3) 공정 시공사업자가 공사과정중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 (4) 공정 시공사업자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한 경우
- (5)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도로변에 버리거나 흘날린 경우

사업자는 전항의 (1), (3),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 항의 (2), (4) 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 항의 (1),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이 법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와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 (1)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 국가규정에 의한 위험폐기물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등록을 한 경우
-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 (4)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
- (6)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이동한 경우
- (7)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경우
- (8) 안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상호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한 경우
-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도구로 운반한 경우
- (10)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 운송·처리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1)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흘날리거나 유실되거나 침투되거나 또는 기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12)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도로에 버리거나 흘날린 경우
-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1), (2), (7), (8), (9), (10), (11), (12), (13)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 (3), (5), (6)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당 납부하여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발생자가 그 발생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또 법에 의거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대집행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경영허가증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이용·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하여 투기하거나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상 1,0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또는 동 고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책임진다. 세관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이 동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元 이상 5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제80조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온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세관에 그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세관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수입자에게 오염제거명령을 내린다.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기한 내 개선을 결정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임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정부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20,000元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손실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되 벌금액은 1,000,000元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주된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벌 한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이용·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4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 환경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감독관리부서가 조정, 처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자문기구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소송중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한다.

제85조 고체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을 배상하며, 아울러 환경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6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7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 기관에 측정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모니터링 기관은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정확한 관련 측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88조 이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생활, 기타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포기되거나 방치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이나 물질 그리고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으로 고체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나열된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 (2) "공업고체폐기물"이라 함은 공업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 (3) "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중 또는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중에 발생한 고체폐기물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 (4)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위험

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의거 인정된 위험특성을 갖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 (5) "보관"이라 함은 고체 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 (6) "처리"라 함은 고체폐기물 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을 줄이거나 또는 그 위해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말하며, 또는 고체폐기물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 매립지에 최종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이용"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9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역으로 배출된 폐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이 법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유보하는 성명을 한 것은 제외한다.

제91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오수 종합배출 표준

1. 오수 종합배출 표준

코드번호 : GB 8978-1996

반포: 국가환경보호총국

1996-10-04 비준 / 1998-01-01 실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수질오염을 관리하고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와 해양 등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의 양호한 상태를 보호하며, 인체의 건강 확보, 생태평형 유지, 국민경제 및 도시와 농촌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표준을 제정한다.

1. 주제내용과 적용범위

1.1 주제내용

이 표준은 오수배출 행방에 따라 연도별 69가지 수오염물질의 최고 허가 배출 농도 및 일부 업종의 최고 허가 배출량을 규정하였다.

1.2 적용범위

이 표준은 현존 단위의 수오염 물질 배출관리 및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시설설계, 준공 검수 및 그 투입 후의 배출 관리에 적용한다.

국가종합배출표준과 국가업종배출표준을 교차 집행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제지 공업은 GB 3544-92 《제지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선박은 GB 3552-83 《선박 수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선박공업은 GB 4286-84 《선박공업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해양석유 개발공업은 GB 4914-85 《해양석유 개발공업 기름함유 오수 배출표준》을 집행, 방직염색공업은 GB 4287-92 《방직염색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육류가공 공업은 GB 13457-92 《육류가공 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합성암모니아공업은 GB 13458-92 《합성암모니아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강철공업은 GB 13456-92 《강철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항공추진제사용은 GB 14374-93 《항공추진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병기공업은 GB 14470.1~14470.3-93과 GB 4274~4279-84 《병기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인 비료공업은 GB 15580-95 《인 비료 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수산화나트륨, 폴리 염화 비닐 공업은 GB 15581-95 《수산화나트륨, 폴리 염화 비닐공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집행, 기타 수오염 물질배출은 모두 이 표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3 이 표준이 반포 된 이후 국가업종 수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새로 추가한 업종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상응하는 국가 수오염 물질 업종 표준을 집행하고 이 표준을 집행하지 않는다.

2. 인용표준

GB 3097-82 해수수질표준

GB 3838-88 지표수질 환경표준

GB 8703-88 복사방지규정

■ 제1분류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 농도

(단위: mg/L)

번호	오염물질	최고허가배출농도
1	총 수은	0.05
2	알킬기 수은	없어야 함
3	총 카드뮴	0.1
4	총 크롬	1.5
5	6가크롬	0.5
6	총 비소	0.5
7	총 납	1.0
8	총 니켈	1.0
9	벤젠(a) 피린	0.00003
10	총 베릴륨	0.005
11	총 은	0.5
12	총 a 방사성	1Bq/L
13	총 β 방사성	10Bq/L

■ 제2분류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98년 1월 1일 이후 건설한 단위)

(단위: mg/L)

번호	오염물질	적용범위	1급표준	2급표준	3급표준
1	PH	모든 오염배출단위	6~9	6~9	6~9
2	색도(희석배수)	모든 오염배출단위	50	80	-
3	부유물(SS)	채광, 선광, 선탄공업	70	300	-
		산금선광	70	400	-
		변방지역 사금선광	70	800	-
		도시 2급 오수처리장	20	30	-
		기타 오염배출단위	70	150	400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4	5일생화산소요구량 (BOD5)	사탕수수, 모시풀 고무질추출, 습법 섬유판, 염료, 털 세척 공업	20	60	600
		사탕무 설탕제조, 알코올, 조미료, 피혁, 화학섬유공업	20	100	600
		도시2급 오수처리장	20	30	-
		기타오염배출단위	20	30	300
5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사탕무 설탕제조, 합성지방산, 습식섬유판, 염료, 털 세척, 유기인 농약공업	100	200	1000
		조미료, 알코올, 의약품원료, 생물제약, 모시풀 고무질추출, 피혁, 화학섬유공업	100	300	1000
		석유화학공업(석유제련 포함)	60	120	500
		도시 2급 오수처리장	60	120	-
		기타 오염배출단위	100	150	500
6	석유류	모든 오염배출단위	5	10	20
7	동물 식물유	모든 오염배출단위	10	15	100
8	휘발폐놀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0.5	2.0
9	총 시안화물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0.5	1.0
10	황화물	모든 오염배출단위	1.0	1.0	1.0
11	암모니아질소	의약품원료, 염료, 석유화학공업	15	50	-
		기타 오염배출단위	15	25	-
12	불화물	황인공업	10	15	20
		저 불소지역 (수역불소함유량 < 0.5mg/L)	10	20	30
		기타 오염배출단위	10	10	20
13	인산염(P로 계산)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1.0	-
14	포름알데히드	모든 오염배출단위	1.0	2.0	5.0
15	아닐린류	모든 오염배출단위	1.0	2.0	5.0
16	니트로 벤젠류	모든 오염배출단위	2.0	3.0	5.0
17	음이온 표면활성제 (LAS)	모든 오염배출단위	5.0	10	20
18	총 동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1.0	2.0
19	총 아연	모든 오염배출단위	2.0	5.0	5.0
20	총 망간	합성지방산공업	2.0	5.0	5.0
		기타 오염배출단위	2.0	2.0	5.0
21	채색 현상제	영화현상	1.0	2.0	3.0
22	현상제 및 그 산화물 총량	영화현상	3.0	3.0	6.0
23	원소 인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1	0.3

24	유기인 농약 (p로 계산)	모든 오염배출단위	없어야 함	0.5	0.5
25	로고	모든 오염배출단위	없어야 함	1.0	2.0
26	파라티온	모든 오염배출단위	없어야 함	1.0	2.0
27	메틸기 파라티온	모든 오염배출단위	없어야 함	1.0	2.0
28	말라티온	모든 오염배출단위	없어야 함	5.0	10
29	펜타클로로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나트륨 (펜타클로로페놀로 계산)	모든 오염배출단위	5.0	8.0	10
30	흡착가능 유기 할로겐화물(AOX) (Cl로 계산)	모든 오염배출단위	1.0	5.0	8.0
31	클로로포름	모든 오염배출단위	0.3	0.6	1.0
32	4염화탄소	모든 오염배출단위	0.03	0.06	0.5
33	트리클로로에틸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3	0.6	1.0
34	사염화에틸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2	0.5
35	벤젠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2	0.5
36	메틸벤젠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2	0.5
37	에틸벤젠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38	o-크실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39	p-크실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40	m-크실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41	염화벤젠	모든 오염배출단위	0.2	0.4	1.0
42	o-벤젠2염화물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43	p-벤젠2염화물	모든 오염배출단위	0.4	0.6	1.0
44	p-nitrochlorobenzene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1.0	5.0
45	2,4-dinitrochlorobenzene	모든 오염배출단위	0.5	1.0	5.0
46	페놀	모든 오염배출단위	0.3	0.4	1.0
47	메타-크레졸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2	0.5
48	2,4-dichlorophen	모든 오염배출단위	0.6	0.8	1.0
49	2,4,6- trichlorophenol	모든 오염배출단위	0.6	0.8	1.0
50	dibutyl phthalate	모든 오염배출단위	0.2	0.4	2.0
51	dioctyl(o-)phthalate	모든 오염배출단위	0.3	0.6	2.0
52	아크릴로니트릴	모든 오염배출단위	2.0	5.0	5.0
53	총 셀렌	모든 오염배출단위	0.1	0.2	0.5
54	변 대장균수	병원, 동물병원 및 의료기구 병원체 함유 오수	500개/L	1000개/L	5000개/L
		전염병, 결핵병 병원 오수	100개/L	500개/L	1000개/L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55	총 염소(염화 소독한 병원오수)	병원, 동물병원 및 의료기구 병원체 함유 오수	<0.5..	>3(접촉 시간≥1h)	>2(접촉 시간≥1h)
		전염병, 결핵병 병원 오수	<0.5..	>6.5(접촉 시간≥1.5h)	>5(접촉 시간≥1.5h)
56	총 유기탄소(TOC)	합성지방산 공업	20	40	-
		모시풀 고무질추출공업	20	60	-
		기타 오염배출단위	20	30	-

주: 기타 오염배출단위: 이 공제항목의 업종 이외의 모든 오염배출단위
 * 50개 침상 이상의 병원
 ** 염소 추가하여 소독한 후 탈염 처리하여 이 표준에 도달

■ 일부업종 최고 허가 배수량('98년 1월 1일 이후 건설한 단위)

(단위: mg/L)

번호	업종 유형		최고 허가 배수량 혹은 최저 허가 물 중복지용율	
1	광산 공업	비철금속 시스템 선광	물 중복지용율 75%	
		기타 광산공업채광, 선광, 선탄	물 중복지용율90%(선탄)	
		산금 선광	중력선광	16.0m³/t (광석)
			부유선광	9.0m³/t (광석)
			청화법	8.0m³/t (광석)
탄 모르타르	8.0m³/t (광석)			
2	코크스화업체(가스공장)		1.2m³/t (코크스)	
3	비철금속제련 및 금속가공		물 중복지용율 80%	
4	석유제련공업(직 배수 정유소 미포함) 가공 심도별 분류: A.연료 정유소 B.연료+윤활유 정유소 C.연료+윤활유+정유화공 정유소 (유황함유 원유 혈암유과 석유 첨가제 생산 기지의 정유소 포함)		A >500만t, 1.0m³/t (원유) 250~500만t, 1.2m³/t (원유) <250만t, 1.5m³/t (원유)	
			B >500만t, 1.5m³/t (원유) 250~500만t, 2.0m³/t (원유) <250만t, 2.0m³/t (원유)	
			C >500만t, 2.0m³/t (원유) 250~500만t, 2.5m³/t (원유) <250만t, 2.5m³/t (원유)	
5	합성 세탁제 공업	염화법 알킬기벤젠 생산	200.0m³/t (알킬기벤젠)	
		분해법 알킬기벤젠 생산	70.0m³/t (알킬기벤젠)	
		알킬기벤젠 합성세탁제 생산	10.0m³/t (제품)	
6	합성지방산 공업		200.0m³/t (제품)	
7	습법 섬유판 생산 공업		30.0m³/t (판)	
8	설탕제 조공업	사탕수수 설탕 제조	10.0m³/t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 제조	4.0m³/t (사탕무)	

9	피혁 공업	돼지 생가죽	60.0m ³ /t (원피)	
		소가죽	100.0m ³ /t (원피)	
		양가죽	150.0m ³ /t (원피)	
10	발효 양조 공업	알코올 공업	옥수수를 원료로 함	100.0m ³ /t (알코올)
			고구마유를 원료로 함	80.0m ³ /t (알코올)
			당밀을 원료로 함	70.0m ³ /t (알코올)
		조미료 공업	600.0m ³ /t (알코올)	
	맥주 업종(배수량은 맥아수 부분 미포함)	16.0m ³ /t (맥주)		
11	크롬산 공업		5.0m ³ /t (제품)	
12	황산공업(세탁법)		15.0m ³ /t (황산)	
13	모시풀 고무질추출공업		500m ³ /t (원 마)	
			750m ³ /t (정련섬유)	
14	비 스 코 스 섬 유 공 업 단 순섬유	짧은 섬유(면 중장 길이의 섬유, 털 중장 길이의 섬유)	300.0m ³ /t (섬유)	
		긴 섬유	800.0m ³ /t (섬유)	
15	화학섬유 모르타르		본색:150.0m ³ /t (모르타르); 표백:240.0m ³ /t (모르타르)	
16	제약공업 의약품 약	페니실린	4700.0m ³ /t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1450.0m ³ /t (스트렙토마이신)	
		테라마이신	1300.0m ³ /t (테라마이신)	
		테트라시클린	1900.0m ³ /t (테트라시클린)	
		jiemycin	9200.0m ³ /t (jiemycin)	
		오레오마이신	3000.0m ³ /t (오레오마이신)	
		젠타마이신	20400.0m ³ /t (젠타마이신)	
		비타민 C	1200.0m ³ /t (비타민 C)	
		클로로마이세틴	2700.0m ³ /t (클로로마이세틴)	
		SMZ	2000.0m ³ /t (SMZ)	
		비타민 B1	3400.0m ³ /t (비타민 B1)	
		아날긴	180.0m ³ /t (아날긴)	
		페나세틴	750.0m ³ /t (페나세틴)	
푸라졸리돈	2400.0m ³ /t (푸라졸리돈)			
카페인	1200.0m ³ /t (카페인)			

17		로고	700m³/t (제품)
		메틸파라티온(수상법)..	300m³/t (제품)
		파라티온(P2S5법)..	500m³/t (제품)
		파라티온(PSCI3법)..	550m³/t (제품)
		디디브이피(디프테렉스 알칼리분해법)	200m³/t (제품)
		디프테렉스	40m³/t (제품)(글로칼 폐수생산 미 포함)
		마라티온	700m³/t (제품)
18	제초제 공업	nitrofen	5m³/t (제품)
		켄타클로로페놀 나트륨	2m³/t (제품)
		펜타클로로페놀	4m³/t (제품)
		MCPA	14m³/t (제품)
		2,4-D	4m³/t (제품)
		butachlor	4.5m³/t (제품)
		chlorotoluron(Fe분말로 환원)	2m³/t (제품)
		chlorotoluron(Na2S로 환원)	3m³/t (제품)
19	화력발전공업	3.5m³/(MW.h)	
20	철도화물차 세척	5.0m³/대	
21	영화 현상	5m³/1000m (35mm 필름)	
22	석유역청공업	냉각조의 물 순환이용 율 95%	
* 제품은 100% 농도로 계산			
**P2S5, PSCI3, PCI3 원료 폐수 생산 미포함			

2. 도시 오수처리장 오염물질 배출표준

코드번호 : GB 18918-2002

반포: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02-12-24 반포 / 2003-07-01 실시

1. 범위

이 표준은 도시 오수처리장의 배출수, 폐기 배출과 오폐수(공제)하는 오염물질 제한치를 규정하였다. 이 표준은 도시오수처리장의 배출수, 폐기 배출과 오폐수(공제)의 관리에 적용한다.

주민 아파트단지와 공업 업체 내에 독립적인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도 이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도시오수처리장 수오염 물질 배출 기본공제 항목은 표1과 표2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기본 공제(관리) 항목 최고허가 배출농도 (일평균)

(단위: mg/L)

번호	기본 공제 항목		1급표준		2급표준	3급표준
			A 표준	B 표준		
1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50	60	100	120①
2	생화산소요구량 (BOD ₅)		10	20	30	60①
3	부유물 (SS)		10	20	30	50
4	동식물유		1	3	5	20
5	석유류		1	3	5	15
6	음이온 표면 활성제		0.5	1	2	5
7	총 질소 (N으로 계산)		15	20	-	-
8	암모니아 질소 (N으로 계산) ②		5 (8)	8 (15)	25 (30)	-
9	총 인 (P로 계산)	2005년12월31일전 건설	1	1.5	3	5
		2006년1월1일부터 건설	0.5	1	3	5
10	색도 (희석배수)		30	30	40	50
11	pH		6-9			
12	변 대장균 수량 (개/L)		10 ³	10 ⁴	10 ⁴	-

[주] :

- ① 아래 상황은 제거율 지표에 따라 집행한다. 유입수 COD 가 350mg/L 이상 시, 제거율은 60%이상 이어야 함. BOD가 160mg/L 이상의 경우 제거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② 괄호 밖의 데이터는 수온>120℃ 시의 공제지표임. 괄호 안의 데이터는 수온≤120℃ 시의 공제표준임

■ 일부 제1분류 오염물질의 최고 허가 배출농도 (일평균)

(단위: mg/L)

번호	항목	표준치
1	총 수은	0.001
2	알킬 함유 수은	없어야 함
3	총 카드뮴	0.01
4	총 크롬	0.1
5	6가크롬	0.05
6	총 비소	0.1
7	총 납	0.1

■ 공제항목 선택 최고 허가 배출농도 (일평균)

(단위: mg/L)

번호	선택 공제항목	표준치	번호	선택 공제항목	표준치
1	총 니켈	0.05	23	트리클로로에틸렌	0.3
2	총 베릴륨	0.002	24	퍼클로로에틸렌	0.1
3	총 은	0.1	25	벤젠	0.1
4	총 동	0.5	26	메틸벤젠	0.1
5	총 아연	1.0	27	o-크실렌	0.4
6	총 망간	2.0	28	파라크실렌	0.4
7	총 셀렌	0.1	29	M-크실렌	0.4
8	BAP	0.00003	30	에틸벤젠	0.4
9	휘발 페놀	0.5	31	클로로벤젠	0.3
10	총 시안화물	0.5	32	1,4-벤젠염화물	0.4
11	황화물	1.0	33	1,2-벤젠염화물	1.0
12	포름알데히드	1.0	34	p-nitrochlorobenzene	0.5
13	아닐린류	0.5	35	2,4-dinitrochlorobenzene	0.5
14	총 니트로 화합물	2.0	36	페놀	0.3
15	유기인농약 (P 로 계산)	0.5	37	메타크레졸	0.1
16	말라티온	1.0	38	2,4-di-methane	0.6
17	로고	0.5	39	2,4,6-trichlorophenol	0.6
18	파라티온	0.05	40	dibutyl phthalate	0.1
19	메틸파라티온	0.2	41	dioctyl (o-)phthalate	0.1
20	펜타클로로페놀	0.5	42	폴리아크릴로니트릴	2.0
21	클로로포름	0.3	43	흡착가능유기할로겐화물 (AOX 는CL 로 계산)	1.0
22	사염화탄소	0.03			

■ 도시오수처리장 구역(보호대 주변) 폐기배출 최고 허가농도

단위: mg/m³

번호	공제항목	1급표준	2급표준	3급표준
1	암모니아	1.0	1.5	4.0
2	황화수소	0.03	0.06	0.32
3	악취농도	10	20	60
4	메탄 (공장구역 최고 체적 농도%)	0.5	1	1

■ 슬러지 안정화 공제표준

안정화 방법	공제항목	공제지표
혐기성 소화	유기물 분해율 (%)	>40
호기성 소화	유기물 분해율 (%)	>40
호기성 퇴비	함수율 (%)	<65
	유기물 분해율 (%)	>50
	기생충알 사망률 (%)	>95
	대변 대장 균 수량	>0.01

[주]

- 도시오수처리장의 슬러지는 탈수처리를 해야 하고 탈수 후 슬러지 함수율은 80% 이하이어야 함
- 처리 후의 슬러지를 매립처리 시 안전매립의 해당 환경보호 요구에 도달해야 함
- 처리 후의 슬러지 농용 사용 시 그 오염물질 함량은 “농용 공제표준 제한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그 사용 조건은 GB4284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슬러지 농용 사용 시 공제표준 제한치

번호	공제항목	최고 허가 함량 (mg/kg 건 오니)	
		산성 토양 (pH<6.5)	중성과 알칼리성 토양 (pH>=6.5)
1	총 카드뮴	5	20
2	총 수은	5	15
3	총 납	300	1000
4	총 크롬	600	1000
5	총 비소	75	75
6	총 니켈	100	200
7	총 아연	2000	3000
8	총 동	800	1500
9	붕소	150	150
10	석유류	3000	3000
11	BAP	3	3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12	(PCDD/PCDF 단위:ng 독성단위/kg 건오니)	100	100
13	흡착가능 유기할로겐화물 (AOX) (Cl로 계산)	500	500
14	폴리염화비페닐 (PCB)	0.2	0.2

■ 수오염물질 모니터링분석 방법

- 표본 추출방법은 여러 곳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샘플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샘플 중량은 1kg이상 이어야 함

번호	공제항목	측정방법	측정하한선 (mg/L)	방법 출처
1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크롬산염법	30	GB 11914-89
2	생화산소요구량(BOD)	희석과 접종법	2	GB 7488-87
3	부유물(SS)	중량법		GB 11901-89
4	동식물유	적외선 광도법	0.1	GB/T16488-1996
5	석유류	적외선 광도법	0.1	GB/T16488-1996
6	음이온표면활성제	메틸렌 블루 분광 광도법	0.05	GB 7494-87
7	총 질소	알칼리성 과황산칼륨-자외선분해 분광 광도법	0.05	GB 11894-89
8	암모니아 질소	증류와 적정법	0.2	GB 7478-87
9	총 인	몰리브덴산염-암모늄 분광 광도법	0.01	GB 11893-89
10	색도	희석배수법		GB 11903-89
11	pH 값	유리 전극법		GB 6920-86
12	대변 대장균 수량	다관발효법		1)
13	총 수은	냉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0.0001	GB 7468-87
		dithizone분광 광도법	0.002	GB 7469-87
14	알킬기 수은	기상 색보법	10ng/L	GB/T14204-93
15	총 카드뮴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화합추출법)	0.001	GB 7475-87
		dithizone분광광도법	0.001	GB 7471-87
16	총 크롬	과망간산칼륨산화-디페닐 카르바지드분광광도법	0.004	GB 7466-87
17	6가 크롬	디페닐카르바지드분광광도법	0.004	GB 7467-87
18	총 비소	Ag-DDC분광광도법	0.007	GB 7485-87
19	총 납	원자흡수분광광도법 (화합추출법)	0.01	GB 7475-87
		Diphenylthiocarbazone 분광광도법	0.01	GB7470-87
20	총 니켈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0.05	GB11912-89
		diacetyldioxime분광광도법	0.25	GB11910-89

21	총 베릴륨	활성탄 흡착 - CAS 광도법		1)
22	총 은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0.03	GB 11907 - 89
		카드뮴시제2B 분광 광도법	0.01	GB 11908 - 89
23	총 동	원자흡수분광광도법	0.01	GB 7475 - 87
		DDC분광광도법	0.01	GB 7474 - 87
24	총 아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0.05	GB 7475 - 87
		dithizone분광광도법	0.005	GB 7472 - 87
25	총 망간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0.01	GB 11911 - 89
		과칼륨요드산염분광광도법	0.02	GB11906 - 89
26	총 셀렌	2,3-iaminonaphthalene형 광법	0.25µg/L	GB 11902 - 89
27	BAP	고압액상색보법	0.001µg/L	GB 13198 - 91
		아세틸화여과지크로마토그 래피	0.004µg/L	GB 11895 - 89
		형광분광광도법		
28	취발페놀	증류후4-아미노기안티피린 분광광도법	0.002	GB 7490 - 87
29	총 시안화물	질산은적정법	0.25	GB 7486 - 87
		이소니코틴산-pyrazolone 비색법	0.004	GB 7486 - 87
		피리딘-바르비투르산비색법	0.002	GB7486 - 87
30	황화물	methylthionine chloride 분광광도법	0.005	GB/T16489 - 1996
		직접 현색 분광광도법	0.004	GB/T17133 - 1997
31	포름알데히드	디아세톤분광광도법	0.05	GB 13197 - 91
32	아닐린류	N-(1-naphthyl) 에틸렌디아민아조 분광광도법	0.03	GB 11889 - 89
33	총 니트로기 화합물	기상 색보법	5µg/L	GB 4919 - 85
34	유기인 농약 (P로 계산)	기상 색보법	0.5µg/L	GB 13192 - 91
35	말라티온	기상 색보법	0.64µg/L	GB 13192 - 91
36	디메토에이트	기상 색보법	0.57µg/L	GB 13192 - 91

번호	공제항목	측정방법	측정하한선 (mg/L)	방법 출처
37	파라티온	기상 색보법	0.54µg/L	GB 13192 - 91
38	메틸파라티온	기상 색보법	0.42µg/L	GB 13192 - 91
39	펜타클로로페놀	기상 색보법	0.04µg/L	GB 8972 - 88
		사프라닌T 분광광도법	0.01	G B9803 - 88
40	클로로포름	공간기상색보법	0.30µg/L	GB/T17130 - 1997
41	4염화탄소	공간기상색보법	0.05µg/L	GB/T17130 - 1997
42	트리클로로에틸렌	공기기상색보법	0.50µg/L	GB/T17130 - 1997
43	사염화에틸렌	공기기상색보법	0.2µg/L	GB/T17130 - 1997
44	벤젠	기상 색보법	0.05	GB 11890 - 89
45	메틸벤젠	기상 색보법	0.05	GB 11890 - 89
46	o-크실렌	기상 색보법	0.05	GB11890 - 89
47	p-크실렌	기상 색보법	0.05	GB11890 - 89
48	m-크실렌	기상 색보법	0.05	GB 11890 - 89
49	에틸벤젠	기상 색보법	0.05	GB 11890 - 89
50	염화벤젠	기상 색보법		HJ/T74 - 2001
51	1,4 벤젠2염화물	기상 색보법	0.005	GB/T17131 - 1997
52	1,2 벤젠2염화물	기상 색보법	0.002	GB/T17131 - 1997
53	p-nitrochlorobenzene	기상 색보법		GB 13194 - 91
54	2,4-dinitrochlorobenzene	기상 색보법		GB 13194 - 91
55	페놀	액상 색보법	1.0µg/L	1)
56	메타 - 크레졸	액상 색보법	0.8µg/L	1)
57	2,4-dichlorophen	액상 색보법	1.1µg/L	1)
58	2,4,6-trichlorophenol	액상 색보법	0.8µg/L	1)
59	dibutyl phthalate	기상, 액상 색보법		HJ/T72 - 2001
60	dioctyl (o-)phthalate	기상, 액상 색보법		HJ/T72 - 2001
61	아크릴로니트릴	기상 색보법		HJ/T73 - 2001
62	흡착가능유기할로겐화물 (AOX) (Cl로 계산)	Microcoulometric법	10µg/L	GB/T 15959 - 1995
		이온 색보법		HJ/T 83-2001

[주] : 임시 아래방법을 사용하고 국가 방법표준이 반포된 후 국가표준을 집행함
 "1)" 《물과 폐수 모니터링 분석방법 (제3판, 제4판)》 중국환경과학출판사

■ 대기 오염물질 모니터링 분석방법

번호	공제항목	측정방법	방법출처
1	암모니아	차아염소산나트륨-살리실산분광광도법	GB/T14679-93
2	황황수소	기상색보법	GB/T14678-93
3	악취농도	삼점비교식취대법	GB/T14675-93
4	메탄	기상색보법	CJ/T3037-95

■ 슬러지 특성 및 오염물질 모니터링 분석방법

번호	공제항목	측정방법	방법출처
1	오니 함수율	건조법	1)
2	유기물질	중크롬산칼륨법	1)
3	회충알 사망률	현미경 법	GB 7959-87
4	대변 대장균	세균값발효법	GB 7959-87
5	총 카드뮴	흑연로 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41-1997
6	총 수은	냉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36-1997
7	총 납	흑연로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41-1997
8	총 크롬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37-1997
9	총 비소	붕소수소칼륨-질산은분광광도법	GB/T17135-1997
10	붕소	강황소 비색법	2)
11	광물유	적외분광광도법	2)
12	P(a)B	기상 색보법	2)
13	총 동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38-1997
14	총 아연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38-1997
15	총 니켈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	GB/T17139-1997
16	PCDD/PCDF	동위소희석고분별모세관기상색보/ 고 분별 질량스펙트럼법	HJ/T 77-2001
17	흡착가능유기할로겐화 물 (AOX)		미정
18	다염화비페닐 (PCB)	기상 색보법	미정

[주] : 임시 아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국가 방법표준을 반포 한 후 국가표준을 집행

“1)” 《도시쓰레기 농용 모니터링 분석방법》

“2)” 《농용 슬러지 모니터링 분석방법》

3. 수오염물질 배출표준 (*북경시 지방표준 예시)

코드번호 : DB11/307-2005

반포: 북경시환경보호국, 북경시질량기술감독국, 2005-07-22 반포 / 2005-09-01 실시

■ 지표수에 배출 및 그 합수 범위의 수오염물질 배출 제한치

(단위: mg/L)

분류	번호	오염물질이나 항목명칭	1급 제한치		2급 제한치	3급 제한치
			A	B		
1류	1	총 수은	0.001	0.002	0.002	0.002
	2	알킬기 수은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3	총 카드뮴	0.01	0.02	0.02	0.02
	4	총 크롬	0.1	0.5	1.0	1.5
	5	6가크롬	0.05	0.2	0.2	0.2
	6	총 비소	0.04	0.1	0.1	0.1
	7	총 납	0.1	0.1	0.1	0.1
	8	총 니켈	0.05	0.5	0.5	0.5
	9	벤젠(a)피린	없어야 함	0.00003	0.00003	0.00003
	10	총 베릴륨	없어야 함	0.005	0.005	0.005
	11	총 은	0.1	0.5	0.5	0.5
	12	총 a 방사성(Bq/L)	0.1	1.0	1.0	1.0
	13	총 β 방사성(Bq/L)	1.0	10	10	10
2류	14	PH	6.5~8.5	6.5~8.5	6~9	6~9
	15	수온 (°C)	30	35	35	35
	16	색도(배)	10	30	50	80
	17	부유물(SS)	10	30	50	80
	18	5일생화산소요구량(BOD5)	5.0	15	20	30
	19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15	50	60	100
	20	석유류	0.3	2.0	4.0	8.0
	21	동식물유	1.0	5.0	10	15
	22	휘발페놀	0.01	0.2	0.2	0.5
	23	총 시안화물	0.05	0.2	0.2	0.5
	24	황화물	0.01	0.2	0.2	0.5
	25	암모니아질소	2.0	5.0	10	15
	26	총 질소	15	20	-	-
	27	불화물	1.0	2.0	5.0	5.0
	28	총 인(p로 계산) (폐쇄된 수역으로 배출)	0.1	0.5	0.5	1.0
	29	포름알데히드	0.5	0.5	0.5	1.5
	30	메틸알코올	3.0	3.0	5.0	1.0
	31	아닐린류	0.1	0.4	0.4	1.0
	32	니트로벤젠	0.5	0.5	0.5	1.0
	33	음이온표면활성제(LAS)	0.5	3.0	5.0	8.0

2류	34	총 동	0.1	0.5	0.5	1.0
	35	총 아연	1.0	2.0	2.0	3.0
	36	총 망간	0.5	1.0	2.0	2.0
	37	채색 현상제	0.2	1.0	1.0	2.0
	38	현상제 및 그 산화물 총량	0.6	2.0	3.0	3.0
	39	원소 인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1	0.1
	40	유기인농약(p로 계산)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5
	41	로고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1.0
	42	파라티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1.0
	43	메틸기 파라티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1.0
	44	말라티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없어야 함	5.0
	45	펜타클로로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나트륨(펜타클로로페놀로 계산)	없어야 함	없어야 함	5.0	8.0
	46	흡착가능 유기할로겐화물(AOX)(Cl로 계산)	없어야 함	없어야 함	1.0	5.0
	47	클로로포름	0.1	0.2	0.3	0.6
	48	4염화탄소	0.01	0.02	0.03	0.06
	49	트리클로로에틸렌	0.05	0.1	0.3	0.6
	50	사염화에틸렌	0.05	0.1	0.1	0.2
	51	1,2-이염화에탄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3	0.6
	52	벤젠동족체	1.0	1.2	2.0	2.5
	53	벤젠	0.05	0.1	0.1	0.2
	54	메틸벤젠	0.1	0.1	0.1	0.2
	55	에틸벤젠	0.1	0.2	0.4	0.6
	56	m-크실렌	0.1	0.2	0.4	0.6
	57	o-크실렌	0.1	0.2	0.4	0.6
	58	p-크실렌	0.1	0.2	0.4	0.6
	59	염화벤젠	0.02	0.05	0.05	0.1
	60	o-벤젠2염화물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4	0.6
	61	p-벤젠2염화물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4	0.6
	62	1,2,4-벤젠3염화물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4	0.6
	63	p-nitrochlorobenzene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5	1.0
	64	2,4-dinitrochlorobenzene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5	1.0
	65	페놀	0.01	0.01	0.2	0.3
	66	메타-크레졸	0.01	0.01	0.1	0.2
	67	2,4-dichlorophen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6	0.8
	68	2,4,6-trichlorophenol	없어야 함	없어야 함	0.6	0.8
	69	dibutyl phthalate	없어야 함	0.05	0.2	0.4
	70	dioctyl (o-)phthalate	없어야 함	0.05	0.3	0.6
	71	아크릴로니트릴	없어야 함	없어야 함	2.0	3.0
	72	총 셀렌	0.05	0.1	0.1	0.2
	73	총 유기탄(TOC)	10	20	20	30
	74	가용성고체총량	1000	1000	2000	2000

■ 도시 오수처리장에 배출된 수오염물질 배출 제한치

(단위: mg/L)

분류	번호	오염물질이나 항목명칭	제한치	
1류	1	총 수은	0.05	
	2	알킬기 수은	없어야 함	
	3	총 카드뮴	0.1	
	4	총 크롬	1.5	
	5	6가크롬	0.5	
	6	총 비소	0.5	
	7	총 납	1.0	
	8	총 니켈	1.0	
	9	벤젠(a)피린	0.00003	
	10	총 베릴륨	0.005	
	11	총 은	0.5	
	12	총 a 방사성(Bq/L)	1.0	
	13	총 β 방사성(Bq/L)	10	
2류	14	PH	6~9	
	15	수온 (°C)	35	
	16	부유물(SS)	400	
	17	5일생화산소요구량(BOD5)	300	
	18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500	
	19	석유류	10	
	20	동식물유	100	
	21	휘발페놀	2.0	
	22	총 시안화물	영화현상(철시안화물)	5.0
			기타 오염배출 단위	1.0
	23	황화물	1.0	
	24	불화물	10	
	25	포름알데히드	5.0	
	26	메틸알코올	20	
	27	아닐린류	3.0	
	28	니트로벤젠	5.0	
	29	음이온표면활성제(LAS)	15	
	30	총 동	1.0	
	31	총 아연	5.0	
	32	총 망간	5.0	
	33	채색 현상제	3.0	
	34	현상제 및 그 산화물 총량	6.0	

2류	35	원소 인	0.3
	36	유기인농약(p로 계산)	0.5
	37	로고	2.0
	38	파라티온	2.0
	39	메틸기 파라티온	2.0
	40	말라티온	10
	41	펜타클로로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나트륨 (펜타클로로페놀로 계산)	10
	42	흡착가능 유기할로겐화물 (AOX)(Cl로 계산)	8.0
	43	클로로포름	1.0
	44	4염화탄소	0.5
	45	트리클로로에틸렌	1.0
	46	사염화에틸렌	0.5
	47	1,2-이염화에탄	1.5
	48	벤젠동족체	5.0
	49	벤젠	0.5
	50	메틸벤젠	0.5
	51	에틸벤젠	1.0
	52	m-크실렌	1.0
	53	o-크실렌	1.0
	54	p-크실렌	1.0
	55	염화벤젠	1.0
	56	o-벤젠2염화물	1.0
	57	p-벤젠2염화물	1.0
	58	1,2,4-벤젠3염화물	1.0
	59	p-nitrochlorobenzene	5.0
	60	2,4- dinitrochlorobenzene	5.0
	61	페놀	1.0
	62	메타-크레졸	0.5
	63	2,4- dichlorophen	1.0
	64	2,4,6- trichlorophenol	1.0
65	dibutyl phthalate	2.0	
66	dioctyl (o-)phthalate	2.0	
67	아크릴로니트릴	5.0	
68	총 셀렌	0.5	
69	가용성고체총량	2000	
70	침전 고체(mL/L 15min)	10	

<부록 6> 대기 오염물질 종합배출 표준

코드번호 : GB 16297-1996

반포: 국가환경보호국

1996-04-12 비준 / 1997-01-01 실시

이 표준은 33가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한치를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표준 집행 중 각항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중국의 현재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 체계에서 종합성 배출표준과 업종 배출표준을 중복 집행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현재 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설계,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 및 그 투입 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적용한다.

[대기배출 표준등급]

이 표준에서 규정한 최고 허가 배출분류는 현행 오염원에 따라 1, 2, 3급으로 나누며, 신 오염원은 2, 3급으로 나눈다. 오염원이 존재하는 환경공기 질 기능구역에 따라 분류하며 상응 등급의 배출표준을 집행한다. 즉:

- 1류 구역의 오염원은 1급 표준을 집행한다. (1류 구역은 신, 증축 오염원을 금지한다. 1류 구역에서 현행 오염원 개축 시 현행 오염원의 1급 표준을 집행한다)
- 2류 구역의 오염원은 2급 표준을 집행한다.
- 3류 구역의 오염원은 3급 표준을 집행한다.

■ 현행 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치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1	이산화황	1200 (유황, 이산화황, 유산과 기타 유황포함 화합물 생산)	15	1.6	3.0	4.1	무조직 배출원 역풍 참조점 설치, 순풍 모니터링 점 설치	0.50 (모니터링 점과 참조점 농도 차이)
			20	2.6	5.1	7.7		
			30	8.8	17	26		
			40	15	30	45		
			50	23	45	69		
		700 (유황, 이산화황, 유산과 기타 유황포함 화합물 사용)	60	33	64	98		
			70	47	91	140		
			80	63	120	190		
			90	82	160	240		
			100	100	200	310		
2	질소 산화물	1700 (질산, 질소비료와 폭약 생산)	15	0.47	0.91	1.4	무조직 배출원 역풍 참조점 설치,	0.15 (모니터링 점과 참조점 농도 차이)
			20	0.77	1.5	2.3		
			30	2.6	5.1	7.7		
			40	4.6	8.9	14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420 (질산사용과 기타)	50 60 70 80 90 100	7.0 9.9 14 19 24 31	14 19 27 37 47 61	21 29 41 56 72 92	순풍 모니터링 점 설치	차이)
3	입자물질	22 (탄소잉크 먼지, 염료먼지)	15 20 30 40	배출금지	0.60 1.0 4.0 6.8	0.87 1.5 5.9 1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
		80 (유리먼지, 석영먼지, 광재 먼지)	15 20 30 40	배출금지	2.2 3.7 14 25	3.1 5.3 21 37	무조직 배출원 역풍 참조 점 설치, 순풍 모니터링 점 설치	2.0 (모니터링 점과 참조 점 농도 차이)
		150 (기타)	15 20 30 40 50 60	2.1 3.5 14 24 36 51	4.1 6.9 27 46 70 100	5.9 10 40 69 110 150	무조직 배출원 역풍 참조 점 설치, 순풍 모니터링 점 설치	5.0 (모니터링 점과 참조 점 농도 차이)
4	산화수소	150	15 20 30 40 50 60 70 80	배출금지	0.3 0.51 1.7 3.0 4.5 6.4 9.1 12	0.46 0.77 2.6 4.5 6.9 9.8 14 19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25
5	크롬산 스모그	0.080	15 20 30 40 50 60	배출금지	0.009 0.015 0.051 0.089 0.14 0.19	0.014 0.023 0.078 0.13 0.21 0.29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075
6	황산 스모그	1000 (폭약공장)	15 20 30 40	배출금지	1.8 3.1 10 18	2.8 4.6 16 27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1.5
		70 (기타)	50 60		27 39	41 59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70 80		55 74	83 110			
7	불소화물	100 (과인산석회공업)	15	배출금지	0.12	0.18	무조직 배출원 역풍 참조점 설치, 순풍 모니터링 점 설치	20 (모니터링 점과 참조점 농도 차이)	
			20		0.20	0.31			
			30		0.69	1.0			
		40	1.2		1.8				
		50	1.8		2.7				
		60	2.6		3.9				
		80	3.6		5.5				
		11 (기타)	70		4.9	7.5			
8	염소		85	25	배출금지	0.60	0.9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50
				30		1.0	1.5		
				40		3.4	5.2		
				50		5.9	9.0		
				60		9.1	14		
				70		13	20		
		80		18		28			
9	납 및 그 화합물	0.90	15	배출금지	0.005	0.007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075	
			20		0.007	0.011			
			30		0.031	0.048			
			40		0.055	0.083			
			50		0.085	0.13			
			60		0.12	0.18			
			70		0.17	0.26			
			80		0.23	0.35			
			90		0.31	0.47			
100	0.35	0.60							
10	수은 및 그 화합물	0.015	15	배출금지	1.8×10 ⁻³	2.8×10 ⁻³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015	
			20		3.1×10 ⁻³	4.6×10 ⁻³			
			30		10×10 ⁻³	16×10 ⁻³			
			40		18×10 ⁻³	27×10 ⁻³			
			50		28×10 ⁻³	41×10 ⁻³			
			60		39×10 ⁻³	59×10 ⁻³			
1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15	배출금지	0.060	0.09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50	
			20		0.10	0.15			
			30		0.34	0.52			
			40		0.59	0.90			
			50		0.91	1.4			
			60		1.3	2.0			
			70		1.8	2.8			
			80		2.5	3.7			
12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15	15	배출금지	1.3×10 ⁻³	2.0×10 ⁻³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010	
			20		2.2×10 ⁻³	3.3×10 ⁻³			
			30		7.3×10 ⁻³	11×10 ⁻³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40 50 60 70 80		13×10 ⁻³ 19×10 ⁻³ 27×10 ⁻³ 39×10 ⁻³ 52×10 ⁻³	19×10 ⁻³ 29×10 ⁻³ 41×10 ⁻³ 58×10 ⁻³ 79×10 ⁻³		
13	니켈 및 그 화합물	5.0	15 20 30 40 50 60 70 80	배출금지	0.18 0.31 1.0 1.8 2.7 3.9 5.5 7.4	0.28 0.46 1.6 2.7 4.1 5.9 8.2 11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50
14	주석 및 그 화합물질	10	15 20 30 40 50 60 70 80	배출금지	0.36 0.61 2.1 3.5 5.4 7.7 11 15	0.55 0.93 3.1 5.4 8.2 12 17 2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30
15	벤젠	17	15 20 30 40	배출금지	0.60 1.0 3.3 6.0	0.90 1.5 5.2 9.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50
16	메틸벤젠	60	15 20 30 40	배출금지	3.6 6.1 21 36	5.5 9.3 31 54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3.0
17	크실렌	90	15 20 30 40	배출금지	1.2 2.0 6.9 12	1.8 3.1 10 18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1.5
18	페놀	115	15 20 30 40 50 60	배출금지	0.12 0.20 0.68 1.2 1.8 2.6	0.18 0.31 1.0 1.8 2.7 3.9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10
19	포름알데 히드	30	15 20 30 40 50 60	배출금지	0.30 0.51 1.7 3.0 4.5 6.4	0.46 0.77 2.6 4.5 6.9 9.8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25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20	아세트알데히드	150	15	배출금지	0.060	0.09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50
			20		0.10	0.15		
			30		0.34	0.52		
			40		0.59	0.90		
			50		0.91	1.4		
			60		1.3	2.0		
21	아크릴로니 트릴	26	15	배출금지	0.91	1.4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75
			20		1.5	2.3		
			30		5.1	7.8		
			40		8.9	13		
			50		14	21		
			60		19	29		
22	아크릴알데히드	20	15	배출금지	0.61	0.9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50
			20		1.0	1.5		
			30		3.4	5.2		
			40		5.9	9.0		
			50		9.1	14		
			60		13	20		
23	시안화 수소	2.3	25	배출금지	0.18	0.28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30
			30		0.31	0.46		
			40		1.0	1.6		
			50		1.8	2.7		
			60		2.7	4.1		
			70		3.9	5.9		
			80		5.5	8.3		
24	메틸알코올	220	15	배출금지	6.1	9.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15
			20		10	15		
			30		34	52		
			40		59	90		
			50		91	140		
			60		130	200		
25	아닐린류	25	15	배출금지	0.61	0.9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50
			20		1.0	1.5		
			30		3.4	5.2		
			40		5.9	9.0		
			50		9.1	14		
			60		13	20		
26	염화벤젠	85	15	배출금지	0.67	0.9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50
			20		1.0	1.5		
			30		2.9	4.4		
			40		5.0	7.6		
			50		7.7	12		
			60		11	17		
			70		15	23		
			80		21	32		
			90		27	41		
			100		34	52		

번호	오염물질	최고 허가 배출농도 mg/m ³	최고 허가 배출 속도, kg/h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농도 제한치	
			배기통 높이 m	1급	2급	3급	모니터링 지점	농도
27	니트로벤젠	20	15	배출금지	0.060	0.090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50
			20		0.10	0.15		
			30		0.34	0.52		
			40		0.59	0.50		
			50		0.91	1.4		
			60		1.3	2.0		
28	염화 에틸렌	65	15	배출금지	0.91	1.4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75
			20		1.5	2.3		
			30		5.0	7.8		
			40		8.9	13		
			50		14	21		
			60		19	29		
29	벤젠 (a)피린	0.50×10 ⁻³ (역청, 탄소, 제품생산과 가공)	15	배출금지	0.06×10 ⁻³	0.09×10 ⁻³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01
			20		0.10×10 ⁻³	0.15×10 ⁻³		
			30		0.34×10 ⁻³	0.51×10 ⁻³		
			40		0.59×10 ⁻³	0.89×10 ⁻³		
			50		0.90×10 ⁻³	1.4×10 ⁻³		
			60		1.3×10 ⁻³	2.0×10 ⁻³		
30	포스겐	5.0	25	배출금지	0.12	0.18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0.10
			30		0.20	0.31		
			40		0.69	1.0		
			50		1.2	1.8		
31	역청연기	280 (아스팔트)	15	0.11	0.22	0.34	생산설비에 현저한 무조직 배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80 (정련, 딥 코팅)	20	0.19	0.36	0.55		
			30	0.82	1.6	2.4		
			40	1.4	2.8	4.2		
		150 (건축교반)	50	2.2	4.3	6.6		
			60	3.0	5.9	9.0		
			70	4.5	8.7	13		
			80	6.2	12	18		
32	석면먼지	2개(섬유)/cm ³ 혹은 20mg/m ³	15	배출금지	0.65	0.98	생산설비에 현저한 무조직 배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		1.1	1.7		
			30		4.2	6.4		
			40		7.2	11		
			50		11	17		
33	비메탄총 알킬	150 (용제 휘발유 혹은 기타 혼합 알킬류 물질 사용)	15	6.3	12	18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	5.0
			20	10	20	30		
			30	35	63	100		
			40	61	120	170		

1) 보통 무 조직 배출원 역풍 2~50m 범위에서 참조점을 설치, 순풍 하 풍향 2~50m범위에서 모니터링 점 설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표준 부록C 참조, 아래 동일

2) 경계선 외 농도 최고점은 보통 배출원 순풍의 단위 경계선 외 10m 범위에 설치해야 함. 무 조직 배출의 최대 농도가 10m범위 초과로 예상되면 모니터링 점을 그 예상농도 최고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C 참조, 아래 동일

3) 유리 이산화규소 10%이상 함유한 각종 먼지

4) 염소배출 배기통은 25m이상이어야 함

5) 시안화수소배출 배기통은 25이상이어야 함

6) 포스겐배출 배기통은 25이상이어야 함

<부록 7> 폐기물 분야 주요 관리표준

1.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반포: 국무원

반포시기 : 2004-05-30

실시시간 : 2004-07-01

문건 번호 : 국무원령 제 4 0 8 호

시효성 : 유효

2004년 5월 19일 국무원 제 50차 상무회의에서 기 통과되었고 현재 공포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온가보

2004년 5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위험폐기물에 대한 수집, 저장과 처리 경영활동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경영방식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종합경영허가증과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으로 나눈다.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각 종류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자동차 수리활동 중 발생한 폐 광물유와 주민 일상생활 중 발생한 폐 카드뮴니켈전지의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제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심사허가 발급과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는 조건

제5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종합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려면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3명 이상 환경공정전업 혹은 관련 전업 중급 이상 직명이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고체폐기물 오염처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 (2)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위험폐기물운송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운송도구가 있어야 한다.
- (3) 국가나 지방 환경보호 표준과 안전표준에 부합되는 포장도구, 전이와 임시저장시설, 설비 및 검사를 거쳐 합격한 저장 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 (4) 국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부합되고 국가나 지방 환경보호표준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처리시설, 설비와 부대 오염방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 중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은 국가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의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5) 경영하는 위험폐기물은 품목별 상응한 처리기술과 공법이 있어야 한다.
- (6) 위험폐기물 경영안전을 확보하는 규장 제도, 오염방지조치와 사고응급구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 (7) 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매립장소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방수, 삼투방지의 운송도구가 있어야 한다.
- (2) 국가나 지방 환경보호 표준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포장도구, 운송과 임시 저장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 (3) 위험폐기물 경영안전을 확보하는 규장 제도, 오염방지 조치와 사고응급 구원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는 절차

제7조 국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아래 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 허가하고 발급한다.

- (1) 년 1만톤 이상의 고체폐기물을 소각
- (2) 폴리염화비페닐, 수은 등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협이 큰 위험폐기물을 처리
- (3) 국가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든 종합성 집중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위험폐기물을 처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소재지 구역의 시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본 조의 제2항, 제3항 규정 외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제8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 증서 발급 기관에 신청하고 이 방법 제5조나 제6조 규정 조건의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증서발급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 단위에서 제출한 증명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신청단위의 경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실제수요에 따라 위생, 도시와 농촌계획 등 해당 주관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한다.

제10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아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 (1) 법인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 (2) 위험폐기물 경영방식
- (3) 위험폐기물 종류
- (4) 연간 경영규모
- (5) 유효기간
- (6) 증서발급 날짜와 증서번호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의 내용에는 저장, 처리시설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위험폐기물의 경영단위에서 법인명칭, 법정 대표인과 주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공상 변경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증서발급 기관에 신청하여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시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는 원 신청절차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재차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 (1) 위험폐기물의 경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
- (2) 위험폐기물 종류를 증가할 경우
- (3) 위험폐기물 경영설비를 신축 혹은 개축, 증축할 경우
- (4) 위험폐기물의 경영이 원 심사허가 연간 경영규모 20% 이상 초과할 경우

제13조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계속하여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증서 교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원 증서발급 기관은 증서교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증서를 교체해줘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의 종사를 중지하는 것은 경영시설, 장소에 대하여 오염 방지조치를 취하고 처리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앞 항 규정의 조치를 취한

날부터 20일 내에 원 증서발급 기관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 원 증서발급 기관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합격 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15조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수입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넘어 전자류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6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전년도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의 발급 상황을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 두어야 한다.

상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는 하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 심사허 가 발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즉시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심사허가 발급하는 과정 중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17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서면 검사와 현지검사 등 방식을 통하 여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 하며 감독검사인원이 서명 후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 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검열할 권리가 있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위험폐기물경영단위의 경영활동 중 원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 였을 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선하게 해야 한다.

제18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요구하여 정기 적으로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건립하고 여실하게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하는 종 류, 출처, 행방과 사고여부 등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한 경영상황 기 록부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중단 한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바쳐서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기록부관리 제도를 건립,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심사허가 발급 상황을 반포해야 한다.

제20조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처리단위와 접수계약을 체결하고 수 집한 폐 광물유와 폐 카드뮴니켈전지를 90일 내에 처리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처리 해야 한다.

제21조 위험폐기물의 경영시설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선하기 전에 무해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매립하는 경영시설의 서비스기한이 만료 후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매립했던 토지에 대하여 봉쇄 조치를 취하고 확정된 봉쇄구역에 영구성 표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이 방법의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12조,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위법행위를 중단하게 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것은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한 것은 위법소득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이 미만인 것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 14조 제1항,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한다. 개정하지 않는 것은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염사고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고체 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이 방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제27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 증서발급 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 개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정돈하지 않거나 개선을 거치고도 여전히 원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제2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몰수하는 동시에 공상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공상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시켜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했거나 몰수당한 단위는 5년 내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하고 수령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사업인원이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이 방법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할 경우
- (2)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함부로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처벌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 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 (3)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에서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4)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사업 중 기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제6장 부칙

제31조 본 방법에서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1)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들거나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식에 근거하여 인정한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2) 수집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모으는 활동을 말한다.
- (3) 저장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 처리 전에 그를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장소나 시설 중에 놓고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모으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임시 시설이나 장소에 매번 쌓아 둔 중량이 5000kg 초과하였거나 쌓아 둔 시간이 90 일 초과한 활동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을 소각, 용해, 소결, 분해, 중화, 소독, 증류, 추출, 침전, 여과, 해체 및 기타 위험폐기물의 물리, 화학, 생물 특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의 수량을 줄이고 위험폐기물의 체적을 줄이며 그 위험성분을 감소 혹은 제거하는 활동이나 위험폐기물을 최종 환경보호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장소나 시설에 보관하고 다시 회수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제32조 본 방법 실시 전에 지방 법규, 규장이나 기타 문건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기 취득한 단위는 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재차 수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없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 방지방법

《폐기위험화학품환경오염방지방법》은 2005년 8월 18일 국가환경보호총국 2005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현재 이를 공포한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해진화
2005년 8월 3일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7호

제1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와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폐기 위험화학품이라 함은 사용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로부터 버려졌거나 포기한 위험화학품과 도태, 위조, 기한이 지난 위험화학품,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한 위험 화학품 및 접수한 위험화학품을 말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은 위험폐기물에 속하며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포함된다.

제3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 수집, 운송, 저장, 이용, 처리활동의 환경오염 방지에 적용한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시제, 약품 환경오염의 방지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담은 용기와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을 받은 포장물은 위험폐기물에 따라 관리를 진행한다.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의 방지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량 감소, 폐기 위험화학품 안전 및 적정이용과 폐기 위험화학품 무해화 처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이용 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의 이용을 지지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충분한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실행한다.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집중처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방지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한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서는 전국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폐기 위험화학품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오염방지 책임을 진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생산항목과 규모를 적정 배치하고 국가 관련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지키며 폐기위험화학품의 생산량을 되도록 감소시켜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스스로 혹은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위험 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상응하는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는 사용자와 대중에게 폐기 위험화학품 회수, 이용, 처리 단위와 회수, 이용, 처리방법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9조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위험화학품 폐기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관리계획을 제정하며 법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위험화학품의 정보등기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 폐기 위험화학품의 종류, 품명, 성분 혹은 구성, 특성, 생산량, 이동, 저장, 이용, 처리상황,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 즉시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폐기 위험화학품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는다. 위험화학품 생산단위에서 그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폐기 위험화학품을 회수이용, 처리하는 것은 소재지 성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상응 생산능력과 완벽한 관리제도 구비
 - (2) 위험 화학품 회수이용, 처리시설, 기술과 공법 구비
 - (3) 국가 혹은 지방 환경보호표준과 안전요구의 부대 방지시설과 사고 응급구원 조치 구비
-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위험 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폐기 화학품을 회수, 이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 이용 시설, 설비와 장소가 국가 환경보호 해당 법률법규 및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용하지 못하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혹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폐기 위험화학품이 발생하는 단위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것은 그에게 폐기 위험화학품의 품명, 수량, 성분 혹은 구성, 특성,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접수단위는 접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확인을 거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품종, 성분, 특성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된 것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혹은 저축설비, 재고제품 및 생산 원료에 대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국가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장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환경유해평가보고를 편집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용지에 오염을 초래한 것은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후 환경보호부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완료한 후 환경보호검사기구에 위탁하여 회복 후의 용지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용기와 포장재 및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하여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이동은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역을 넘는 시 급 이상 행정구역에서의 이동은 법에 따라 이동지역의 시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친 후 이동할 수 있다.

제17조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감독 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 혹은 접수한 폐기위험 화학품을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춘 단위에 위탁하여 회수, 이용, 처리해야 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해 명확한 담당자가 있는 것은 처리비용은 담당자가 부담하고 몰수한 행정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추납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한 명확한 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접수한 자가 상납한 폐기 위험화학품은 몰수한 행정주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본급 재정에 처리비용을 신청한다.

제18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하는 단위의 주요 담당자는 반드시 본 단위 폐기 위험화학품의 관리가 해당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본 단위 폐기위험 화학품의 환경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해당 환경보호법률법규, 전업기술과 응급구원 등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단위는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예방책을 제정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필요한 환경응급시설과 설비를 건설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 시 사고 책임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고 즉시에 오염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게 통보하며 국가 해당 사고 보고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와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정돈하게 해야 한다.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는 기록해야 하고 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한다. 검사 받는 단위는 검사기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면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본 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방치할 경우
- (2) 규정에 따라 폐기 위험화학품을 신고 등기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등기의 경우
- (3)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4)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이동하는 경우
- (5)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 (6)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 예방책을 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생한 폐기 위험화학품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본 방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과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될 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가의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정에 따라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검사하지 않는 경우
- (2) 환경유해평가보고를 작성하지 않고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 (3)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복구를 실시할 경우
- (4) 환경복구 후의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이 엄중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것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처리임무를 완성하지 않은 것은 본 급 인민정부에서 영업중지 혹은 폐쇄를 결정한다.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부서의 현장 검사를 거절, 방해하는 것은 현장검사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한다. 개정하지 않거나 검사 시 거짓행위에 대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고 행정처벌의 결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환경보호부서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만기가 되도록 벌금을 상납하지 않는 것은 매일 그 벌금액의 3%를 추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2)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제29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반포기관 : 국가환경보호총국

반포시기 : 2003-09-12

실시시기 : 2003-10-15

시효성 : 유효

작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은 2003년 4월 1일 국가환경보호총국 제4차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였고 현재 반포한다.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신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체 건강을 확보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신화학물질 생산과 수입에 종사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에서는 신 화학물질 환경관리에 대해 생산 전과 수입 전의 신고등기제도를 시행한다. 신화학물질을 생산 혹은 수입 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 전 혹은 수입 전에 신화학물질 신고를 하고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증(아래 등기증이라고 약칭)을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화학물질은 신화학물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이 방법에서 신화학물질이라 함은 신고 시 아직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화학물질의 명단을 책임지고 수록하며 적시에 공포한다.

제5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표준과 기술규범을 책임지고 제정한다.

제6조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전문가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원회라고 약칭)를 설립한다. 심사위원회는 신화학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서면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제7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기구 및 그 사업인원은 신화학물질 신청인(아래 신청인이라고 약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신고

제8조 신청인은 생산 전이나 수입 전에 국가환경보호총국 화학품 등기중심(아래 등기중심이라고 약칭)에 신화학물질 신고서, 테스트 수치보고와 테스트 기구의 자격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내용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구조, 테스트방법, 용도, 연간 생산 혹은 수입량, 물리, 화학 성질, 중독학 및 생태 중독학의 특성, 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오염예방과 제거방법, 폐기물 처리조치 등을 포함한다. 중국 경외에서 테스트 베이스를 완성하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완성한 경외 테스트 기구는 반드시 국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화학물질의 생태 중독학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중국의 제공한 테스트 생물로 완성한 테스트 베이스를 포함해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 자료에 상업비밀이나 기술비밀에 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 자료에 명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비밀내용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등기중심에 서면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분자구조가 비슷하고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근접한 신화학물질에 대해 신청인은 시리즈 신고를 제출하여 품목별 신화학물질에 따라 각각 등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두 명 이상 신청인이 함께 동일 신 화학물질을 신고하면 매 신청인에 따라 각각 등기증을 접수한다.

제12조 이미 4개 이상 기타 국가나 지역 경제일체화 조직의 현존 화학물질목록에 든 신화학물질은 신고 시 신고서와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생태 중독학 테스트 보고만 제공하면 된다.

제13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신고면제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 (1)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매년 생산 혹은 수입한 신 화학물질의 수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 (2) 신화학물질 단량체 함량이 2% 보다 낮은 중합체
- (3) 공법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한 신화학물질 수량이 1000 kg 미만인 것은 일년간의 신고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하지 않음
- (4) 중국 경내에서 중국의 테스트제공 생물로 신화학물질 생태 중독학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신화학물질 테스트 샘플을 수입한 경우

신고면제수속을 신청하는 신고인은 등기중심에 신고면제 신청서와 해당 이 조례 제1항의 상황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물질의 과학연구, 공법연구와 개발, 생산 혹은 수입한 수량, 고객 명칭 등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3장 등기

제14조 등기중심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 자료에 대하여 형식상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부합되면 수리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등기중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거나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수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한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기중심에서 수리하는 것은 수리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위원회에서는 신고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해당 신 화학물질 환경관리표준과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그 화학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서면으로 평가의견을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료에 대하여 등기여부의 결정을 해야 한다. 등기하게 하는 것은 등기증을 발급하고 등기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결정을 등기중심에 통지하고 등기중심에서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7조 신고면제를 처리하는 것은 등기중심에서 신고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건의를 제출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심의하게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신고자료와 처리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신고면제의 신청에 대하여 신고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등기중심에 통지하며 등기중심에서는 그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8조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이 방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기 혹은 신고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그 결정과 신 화학물질 환경영향 감독관리 통지서를 그 신화학물질 생산자나 수입자의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결정과 신 화학물질 환경영향감독 관리통지서를 그 화학물질 생산자 혹은 수입자의 소재지 구내의 시급 혹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등기증 소유자는 매번 실제 생산, 수입 혹은 신화학물질을 사용자에게 전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생산자 혹은 수입자의 소재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및 행방 상황 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생산자나 수입자의 소재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서는 등록표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구내의 시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구내

의 시급 환경보호부서에서는 등록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며 성급 환경보호부서에서는 등록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지에서 이동하는 것은 생산자나 수입자의 소재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서 등록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화학물질 이동상황 및 그 신화학물질에 대한 결정, 환경영향감독 관리통지서를 사용자 소재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의 소재지 현 급 환경보호부서에서는 신화학물질 행방상황 및 그 신 화학물질에 대한 결정, 환경영향 감독관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내의 시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구내의 시 급 환경보호부서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성 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등기증 소유자는 신화학물질 신고, 생산과 수입, 신화학물질 영향 등 자료를 그 화학물질을 공포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부서에서 신화학물질 생산 혹은 수입한 신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의 신축, 개축, 증축 항목에 종사하는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심사할 때 그 항목의 등기증 취득여부를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해야 한다.

제23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신화학물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신화학물질 환경오염이 엄중한 것을 발견하면 생산자, 수입자 혹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과하여 즉시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위해를 제거하게 하며 해당 상황을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상 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보고를 받은 후 검사를 진행하고 그 신화학물질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갖고 있는 등기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24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청인이 등기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거짓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1만원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그 위법 행위를 공시하고 불량 기록을 기재하며 3년 이내에 그 신화학물질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2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그 위법 행위를 공시하고 그 불량기록을 기재하며 3년 내에 그 신 화학물질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 (1) 환경보호부서의 현장 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 시 거짓행위
- (2)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 생산, 수출 및 행방 상황 등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 신고, 생산 혹은 수입, 신화학물질 영향 등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4) 신고하지 않거나 등기증을 취득하지 않고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6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기구 및 그 사업인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청인의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7조 아래 문건의 격식과 내용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 (1) 신 화학물질 신고서
- (2) 신화학물질 신고 면제 신청서
- (3) 신화학물질 등기증
- (4) 신화학물질 환경영향 감독관리 통지서
- (5) 신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및 행방 상황 등록표

제28조 신화학물질 신고 등록의 비용은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한다.

4. 고체폐기물 감별지도 원칙(시행)

국가환경보호총국 발표

이 지도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서 정의한 고체폐기물과 비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세관의 상품코드를 확정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의 감별은 우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다음은 이 지도원칙의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위의 정의와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여전히 감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지도원칙 제3부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물질, 물품이나 자재가 고체폐기물 혹은 비 고체폐기물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별 결과에 논쟁이 있는 것은 국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함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감별과 판결을 진행한다. 수입 절차에서 수입자가 세관의 수입한 화물을 고체폐기물관리범위에 넣은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1. 고체폐기물의 정의

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으나 포기되었거나 버려진 고체, 반고체와 용기 속에 넣은 기체의 물품, 물질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고체폐기물관리의 물품, 물질에 넣은 것을 말한다.

2. 고체폐기물의 범위

2항 1)에 해당되는 물질이나 물품이 2항 2)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고체폐기물이다.

1)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 물품과 자재를 포함(그러나 한정되지 않음)한다.

- (1) 가정에서 수집한 쓰레기
-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폐기 제품
- (3)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 (4) 사무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 (5) 도시오수 처리공장 슬러지,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찌꺼기
- (6) 기타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찌꺼기, 슬러지
- (7) 도시 수로 준설 슬러지
- (8) 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계속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9) 가짜 위조 제품
- (10) 소유자 혹은 그 대표가 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이나 물품
- (11) 오염 된 자재(다염화비페닐 PCBs에 의해 오염된 기름)

- (12)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모든 자재, 물질 혹은 물품
- (13)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고체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

2) 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이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방사성 폐기물
- (2) 저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원 생산과정으로 돌아가거나 그 발생한 과정으로 돌아간 물질이나 물품
- (3) 그 원래 용도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물품
- (4) 실험실용 샘플
- (5)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허가한 기타의 고체폐기물관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나 물품

3. 고체폐기물과 비고체폐기물 평정

1) 폐기물의 잡업방식과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

표 1의 작업방식과 표 2의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를 반드시 표 1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표 2의 한 개 혹은 여러 개 원인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체폐기물이라고 판단한다. 표 1과 표 2는 반드시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고 단독으로 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1 작업방식>

번호	저장과 처리작업	번호	이용 작업
D1	지하 혹은 지상에 놓아서 처리, 예하면 매립	R1	연료로 사용하지만 직접 소각이 아니거나 기타 방식으로 열 에너지 발생
D2	토지처리	R2	유기물질의 회수/ 재활용
D3	심층 주입	R3	금속과 금속화합물의 재순환/ 회수
D4	지표 저축	R4	기타 무기물질의 재순환/ 회수
D5	특별 설계한 매립, 예하면 덮개가 있고 서로 분리되며 환경과 차단한 라이닝이 있는 격리 조에 넣는다	R5	산 혹은 알칼리의 재활용
D6	수역에 배출, 해저 매립 포함	R6	오염제거 물질의 회수에 사용
D7	소각, 에너지 회수기능이 있으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각과 시멘트 킬른 처리 포함	R7	촉매제 성분의 회수
D8	영구 저축, 예하면 용기를 광정에 놓는다	R8	사용했던 기름의 재 제련 혹은 기타 방식으로 재 사용

D9	저축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혼합, 새로 포장하거나 임시 저축	R9	농업 혹은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토지처리
D10	저축 혹은 처리가 필요한 화합물 혹은 혼합물을 발생하는 물리화학, 생물처리	R10	이용 조종에서 발생한 잔여물질의 사용
D11	자연환경 속에 누출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R11	이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물질의 교환과 축적
D12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성명하거나 해당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저축 혹은 처리 조종의 작업방식	R12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에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함께 성명 혹은 해당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이용 조작으로 하는 작업 방식

<표2 폐기물을 반드시 종합이용, 저장과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폐기물종류>

번호	폐기물 종류
Q1	생산 혹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
Q2	품질표준 혹은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Q3	벌금에 처한 가짜위조 제품
Q4	기한이 넘은 제품 혹은 화학품
Q5	유출, 분실 혹은 기타 사고를 겪고 오염을 받은 자재
Q6	사용 중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Q7	오염 토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Q8	고유 기능을 잃은 제품, 예하면 폐 촉매제
Q9	쓰기 좋지 않은 물질 혹은 물품. 예를 들면 오염된 산, 오염된 용제
Q10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잔여물, 슬러지
Q11	기계 가공/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Q12	원자재 가공에서 발생한 찌꺼기
Q13	국무원 경제종합 거시조정 부서에서 종합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거나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국가해당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반드시 종합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기타 폐기물류

2)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아래 물질이라고 약칭)가 고체폐기물에 속하는 여부를 평가하려면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일반요소 : 이 물질을 일부러 생산 했는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 했는지, 경제가치가 마이너스인지, 정상적인 상업순환이나 사용의 일부분인지를 판단
- (2) 특성 : 그 물질의 생산에 품질규제가 있는지, 국가 혹은 국제에서 인정한 규범 / 표준이 있는지를 판단
- (3) 환경영향 ; 동일 초급제품 대비 그 물질의 사용이 환경에 해가 없는지, 동일 상용 원자재 대비 생산과정에서 그 물질의 사용이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위해를 증가시

키는지,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 물질이 환경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4) 사용과 귀착점 ; 그 물질 사용 전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지, 직접 생산/상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작은 회복으로 투입 사용이 가능한지, 여전히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기타 용도의 대체물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고정적인 용도가 있는지, 현존의 형식 혹은 표 1의 작업방식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표 2의 작업방식을 거쳐 처리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이 고체폐기물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으로 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물품별 평가대상에 따라 중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다르다. 구체적인 판단은 물질의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감별을 하여야 한다.

5.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

국가환경보호총국 [2001]199호

2001-12-17 실시

1. 총칙

1.1 위험폐기물 관리와 처리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등 해당법규, 정책과 표준에 따라 이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이 정책은 사회경제,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수정한다.

1.2 이 기술정책에서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넣었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위험특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 기술정책에서 특수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독성이 크거나 환경 위험이 크고 관리가 어렵거나 위험폐기물의 통용 방법으로 관리와 처리를 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병원 임상폐기물, 폴리염화비페닐류 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재, 폐전지, 폐 광물유, 수은 함유 폐형광 등관 등이다.

1.3 위험폐기물 관리의 단계성 목표

2005년에 중점지역과 중점도시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적정하게 저장하고 처리여건이 갖추어진 것은 안전처리를 실현한다. 병원임상폐기물의 환경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전국 위험폐기물 발생량을 2000년 말의 수준으로 통제한다. 전국에서 위험폐기물 신고 등기제도, 전이전표제도와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2010년에 중점구역과 중점도시의 위험폐기물 환경무해화 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2015년에 모든 도시의 위험폐기물 환경 무해화 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1.4 이 기술정책은 위험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송, 분류, 검사, 포장, 종합이용, 저장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오염방지 기술선택에 적용하며 상응 설비의 계획, 입안, 소재 선택, 설계, 시공, 운영과 관리를 지도하여 상응 산업의 발전을 인도한다.

1.5 이 기술정책의 총 원칙은 위험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이다.

1.6 행정구역을 넘는 종합성 위험 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1.7 위험폐기물의 수집 운송 단위,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과 운영 단위는 상응하는 기술 자격이 있어야 한다.

1.8 각급 정부는 격려성 경제정책 등 조치를 제정하여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위험 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체계의 건립을 가속화하고 위험폐기물의 오염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위험폐기물의 감량화

2.1 위험폐기물의 감량화는 어떠한 위험폐기물을 발생하는 공예법정에도 적용된다. 각

급 정부는 경제와 기타 정책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위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기업은 폐기물이 적거나 없는 공법을 적극 사용해야 하고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 공법과 제품 목록》에서 도태한 기술 공법과 설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 2.2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신고 및 등기하고 표준에 부합되는 전문시설과 장소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보존하고 위험폐기물 표시판을 세우며 해당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있는 단위에 인계하여 수집, 운송, 저장과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과정에서 조치를 취하여 위험폐기물의 체적, 중량과 위험 정도를 줄여야 한다.

3. 위험폐기물의 수집과 운송

- 3.1 위험폐기물은 그 성분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전문 용기로 분리수거 해야 한다.
- 3.2 위험폐기물을 수송하는 용기는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쉽게 파손, 변형, 노화되지 않고 누출,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라벨에 상세하게 위험폐기물의 명칭, 중량, 성분, 특성 및 누출, 확산 오염사고 발생의 경우 응급조치와 보완방법을 명기해야 한다.
- 3.3 주거생활, 사무실과 제3산업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폐전지, 폐 형광등관 등)은 생활쓰레기와 분리 수거해야 하고 분리수거를 통하여 그 회수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제고하며 위험폐기물의 회수 망을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 3.4 안전하고 고 효율적인 위험폐기물 운송 시스템의 발전과 각종 형식의 전용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며 위험폐기물의 운송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엄격히 위험폐기물 운송의 관리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운송하고 운송 과정의 2차 오염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 3.5 전문 위험폐기물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위험폐기물에 대한 전문 운송을 유도하며 운송 차량에는 특수 표지가 있어야 한다.

4. 위험폐기물의 이동

- 4.1 위험폐기물의 월경 이동은 《위험폐기물 월경이동 규제 및 그 처리의 바젤공약》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국내 이동은 《위험폐기물 전이전표 관리방법》 및 기타 해당 규정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4.2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와 지방에서 제정한 위험폐기물 이동 관리방법에 따라 위험폐기물의 행방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를 진행해야 하며 이동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환경 속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위험폐기물의 자원화

- 5.1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은 우선 회수이용을 고려하고 후 처리의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회수이용과정은 국가와 지방 해당 규정의 요구에 도달해야 하고 2차 오염을 피해야 한다.

- 5.2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은 생산시스템 내의 회수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산시스템 내에서 회수 이용할 수 없는 위험폐기물은 시스템 외의 위험폐기물 교환, 물질 전환, 재가공, 에너지이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수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 5.3 각급 정부는 전문항목 기금 설립, 정부 보조금 등 경제정책과 기타 정책조치를 통하여 업체에서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회수 이용할 것을 유도하며 위험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한다.
- 5.4 국가에서는 위험폐기물 회수이용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하고 위험폐기물의 회수이용기술과 설비수준을 점차 제고하며 기술력 제고, 경제성 있는 위험폐기물의 회수이용기술을 적극 추진한다.

6. 위험폐기물의 저장

- 6.1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해 임시 회수이용이나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발생단위에서 전문적인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저장하고 위험폐기물 표지를 설치하거나 전문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저축해야 하며, 저장기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험폐기물의 저장 단위는 상응한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인계하거나 비 위험폐기물 저장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은 상응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6.2 위험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6.2.1 누출을 막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지면과 막은 견고한 누출방지 재료로 건축해야 한다. 분리시설, 경보장치와 방풍, 자외선 차단, 방수 시설이 있어야 한다.
 - 6.2.2 기초 삼투방지 층이 점토층으로 된 것은 그 두께는 1m 이상이고 삼투계수는 1.010-7cm/초 보다 작아야 한다. 기초 삼투방지 층은 두께가 2mm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기타 인공 삼투방지 재료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삼투 계수는 1.010-10cm/초 보다 작아야 한다.
 - 6.2.3 누출액체 수집 장치 및 기체 포집구와 기체 정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 6.2.4 액체, 반고체 위험폐기물을 저축하는 곳은 부식을 방지하는 경화지면이 있어야 하고 지면에 틈이 없어야 한다.
 - 6.2.5 서로 분리하여야 하는 고체폐기물 저장 구역은 반드시 분리시키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 6.2.6 라이닝에는 침출수 수집제거 시스템, 빗물 완화 시스템, 우수 수집조를 건설해야 한다.
 - 6.2.7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위험폐기물의 저장 장소는 소방 설비를 갖추고 독성이 강한 위험폐기물의 저장 장소는 반드시 전문인원이 24시간 관리해야 한다.
- 6.3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의 장소선택과 설계, 운영과 관리, 안전보호, 환경감독 및 응급조치, 폐쇄 등은 《위험폐기물저장오염공제표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7. 위험폐기물의 소각처리

- 7.1 위험폐기물 소각은 위험폐기물의 감량화와 무해화를 실현할 수 있고 그 여열을 회수 이용할 수 있다. 소각처리는 그 유용 성분을 회수 이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발열량

이 있는 위험폐기물에 적합하다. 폭발하기 쉬운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소각 시설의 건설, 운영과 오염공제관리는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 및 기타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7.2 위험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7.2.1 위험폐기물 소각처리 전에 반드시 사전 처리나 특수처리를 하여 소각 조건에 도달하여야 하며 위험폐기물은 용광로에서 균일하고 완전하게 소각해야 한다.

7.2.2 소각로의 온도는 1,100C 이상에 도달하고 연기가 머무는 시간은 2.0초 이상, 소각 효율은 99.9% 이상, 소각 제거율은 99.99% 이상 이어야 한다.

7.2.3 소각시설은 반드시 사전처리 시스템, 배기가스정화 시스템, 경보시스템과 응급처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

7.2.4 위험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한 찌꺼기, 연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회는 반드시 위험폐기물에 따라 안전 매립처리를 해야 한다.

7.3 위험폐기물의 소각은 회전킬른을 기초로 하는 소각기술이 적합하고 위험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로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시멘트 생산의 회전 킬른을 개조 사용하여 위험폐기물을 소각 하는 것을 촉진한다.

7.4 위험폐기물 소각 여열의 이용을 촉진한다. 규모가 비교적 큰 위험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하여 열병합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7.5 병원임상 폐기물,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 일부 전염성, 독성이 크거나 지구성 유기오염성분을 함유한 특수 위험폐기물은 전문 소각시설 로에 소각해야 한다.

8. 위험폐기물의 안전매립 처리

8.1 위험폐기물의 안전 매립처리는 그 성분과 에너지를 회수 이용하지 못하는 위험폐기물에 적용한다.

8.2 처리를 거치지 않은 위험폐기물을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혼입해서는 안 되며 안전 매립은 위험폐기물의 최종 처리수단이다.

8.3 위험폐기물 안전 매립장은 반드시 입장요구와 경영허가증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위험폐기물을 접수해야 하고 입장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처리를 하여 매립장의 반입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8.4 위험폐기물의 안전매립장은 반드시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8.4.1 요구에 부합되는 삼투방지 층이 있어야 하고 2차 오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천연 기초 층 포화 삼투계수가 1.010-7 cm/초 보다 작고 두께가 5m일 때 천연 기초 층을 직접 사용하여 삼투방지층으로 할 수 있다. 천연기초 층 포화삼투계수가 1.010-7-1.010-6 cm/초 일 때 복합 라이닝을 삼투방지 층으로 할 수 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두께가 1.5 m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천연 기초 층 포화 삼투계수가 1.010-6 cm/초 보다 클 때 두 겹의 인공 합성 라이닝(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삼투방지 층으로 해야 하고 위 층 두께가 2.0mm 이상, 아래 층 두께가 1.0mm 이상 이어야 한다.

8.4.2 엄격히 작업 규정에 따라 단원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압축과 피복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8.4.3 깨끗한 물과 오수의 분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침출수의 발생량을 줄이며, 침출수 배출 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체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배기구멍, 기체 수집시스템, 정화 시스템과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8.4.4 매립장 운영관리 단위에서는 스스로 혹은 기타 단위에 위탁하여 매립장의 지하수, 지표수, 대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 8.4.5 매립장이 종료된 후 봉쇄처리를 해야 하고 효과적인 피복과 생태환경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 8.4.6 매립장을 봉쇄한 후 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야만 토지에 대하여 적당한 비 농업 개발과 이용을 실시할 수 있다.
- 8.5 위험폐기물의 매립은 《위험폐기물매립오염공제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9. 특수 위험폐기물의 오염방지

- 9.1 병원임상폐기물(방사성 폐기물 포함하지 않음)
 - 9.1.1 병원임상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한 부문별 처리를 촉진한다. 인체 조직기관, 혈액제품, 혈액감염, 체액의 직물, 전염병병원의 임상폐기물, 환자 생활쓰레기 및 혼합 수집한 병원임상폐기물은 전용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해야 하며 전용 소각시설은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9.1.2 도시에는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와 도시 소재지의 병원임상 폐기물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 9.1.3 일회용 의료기구와 약품의 회수이용을 금지한다.
- 9.2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
 - 9.2.1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 소각 시설로 집중시켜서 처리하고 기타 경로를 통한 이용 및 처리는 안 되며 그 전용 소각시설은 국가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9.2.2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관리, 저장과 처리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전력장치 및 그 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9.2.3 집중 저축 기한이 20년을 초과하였거나 20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미 환경오염을 초래한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물질은 기한 내에 소각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9.2.4 신규 사용을 금지한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전력장치는 원칙상에서 반드시 소각처리를 해야 하며, 특수한 애로가 있는 것은 임시 저장할 수 있으나 저장 기한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시 저장창고와 집중 저장창고의 위치 선정과 설계는 반드시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폐기물의 임시 저장창고와 집중 저장창고 설계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집중 저장창고의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9.2.5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위험폐기물의 조사 및 그 저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위험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추적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9.3 생활쓰레기 소각재

- 9.3.1 생활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한 재는 반드시 단독으로 수집하고 생활쓰레기, 소각 찌꺼기 등 기타 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기타 위험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9.3.2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발생지에서 장기적으로 저장하거나 간이 처리, 배출해서는 안 된다.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발생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화와 안정화 처리를 진행한 후 운송할 수 있고 운송은 전용 운송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도구는 반드시 밀폐해야 한다.
- 9.3.3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반드시 안전 매립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9.4 폐전지

- 9.4.1 국가와 지방 각급 정부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하여 수은, 카드뮴 전지를 도태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국가 법률과 산업정책에 따라 제품구성을 조절하고 제때에 수은, 카드뮴 전지를 도태해야 한다.
- 9.4.2 수은, 카드뮴 함유 전지가 도태되기 전에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단위는 분리수거, 저장, 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폐전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9.4.3 폐전지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수은, 카드뮴 함유 전지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혼입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9.4.4 폐 납전지는 반드시 회수이용을 해야 하고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그 수집, 운송 절차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관리에 넣어야 한다. 연간 처리 규모가 2만톤 이상인 폐 납전지 회수이용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형의 납 재활용 업체를 도태하며 습식 납 재활용 생산 공법의 사용을 유도한다.

9.5 폐광물유

- 9.5.1 폐광물유 수집체계의 건립을 격려하고 폐 광물유를 함부로 버리거나 묻어버리고 하수도에 버리거나 건축 몰드오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황산, 백토법(白土法)을 사용하여 폐 광물유 재활용을 금지한다.
- 9.5.2 폐 광물유의 관리는 《폐윤활유 회수와 재활용기술 지도원칙》 등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고 무산 폐유 재활용기술을 사용하고 새로운 유수 분리시설이나 활성 효소를 사용하여 폐유에 대해 회수 이용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점도시에서 구역 폐 광물유 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여 소재지의 폐 광물유를 발생시키는 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9.6 폐 형광등관

- 9.6.1 각급 정부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하여 제품구성을 조절하고 고 오염 형광등관을 도태하여야 하며 폐 형광등관의 수집체계와 자금기체의 확립을 격려한다.
- 9.6.2 폐 형광등관의 발생, 수집과 처리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도시에서 구역 폐 형광등관의 회수 처리시설 건설을 유도하며 그 구역의 폐 형광등관의 회수처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위험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과 설비

- 10.1 고 효율 위험폐기물 수집 운송기술과 설비의 연구 개발과 도입을 촉진한다.
- 10.2 고 효율, 실용적인 위험폐기물 자원화 이용기술과 설비의 연구개발과 도입을 격려한다, 위험폐기물 분리수거와 파쇄설비, 열 처리설비, 대형 위험폐기물 처리와 이용설비, 사회 위험폐기물처리와 이용설비를 포함한다.
- 10.3 위험폐기물 처리 전용 감시계기 설비의 개발과 국산화를 가속화한다. 소각시설 온라인 연기 측정기구 등을 포함한다.
- 10.4 고 효율, 실용적인 위험폐기물 소각 플랜트기술과 설비의 연구개발을 격려한다. 위험폐기물 소각로 기술, 위험폐기물 소각 오염공제기술과 위험폐기물 소각 여열 회수이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
- 10.5 고 효율, 실용적인 안전 매립처리 핵심기술과 설비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한다. 신형 매립 삼투방지 라이닝과 피복재료, 매립 전용기구, 위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술 및 위험폐기물 매립장 봉쇄기술을 포함한다.
- 10.6 위험폐기물 감별기술 및 계기설비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하며 위험폐기물 관리기술과 방법의 연구를 격려한다.
- 10.7 폐전지와 폐 형광등관의 처리와 회수이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

6. 수입제한폐기물 심사허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환경보호총국사무청 문건: 환경 사무청 [2006] 89호

수신 ; 각성, 자치구, 직할시환경보호국(청)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제한 고체폐기물(아래 “수입폐기물”이라고 약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수입폐기물 심사허가 체계를 규범화하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불법 판매 등 위법행위 두절하고 수입폐기물 가공이용 과정 중 환경오염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폐기물 수입항구 심사허가 관리 진일보 강화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반드시 엄격히 <제한수입폐기물 심사허가관리 강화에 관한 해당 문제 통지> (환경 사무청2004 -100호)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입항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수입 항구의 심사허가는 근처 원칙을 실시한다. 흑룡강, 길림, 내몽골, 산서, 섬서, 녕하, 감숙, 청해, 신강, 서장, 사천, 중경, 운남, 귀주, 호북, 호남, 강서, 안휘, 하북, 하남, 북경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각급 환경 보호부문은 다른 성(자치구, 직할시) 연해항구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신청을 심사할 때 수입폐기물 가공이용단위의 이용 능력, 이용 상황 기록과 원거리 항구 수입폐기물 원가결산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 합격 후 신청한 자료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 받을 수 있다.

2. 수입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을 가공 이용하는 단위에 대한 감독 관리 진일보 강화

- 1) 단위 등록이용관리를 강화한다. 2006년 9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이용 단위는 반드시 국가 해당요구에 따라 소재지 시급 환경보호 부문에 등록 등기를 해야 하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수입 이용단위 등록표>>에 기입해야 한다(시행)(첨부 1 참고)
- 2) 이용 상황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서 등록을 마친 후 경영 기록부를 준비하여 수입폐기물 (이용 불가능한 잔여물의 방향 포함)의 실제 수입, 운송, 이용과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이용단위는 실제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날로부터 분기별 경영기록부의 주요사항을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이용 상황 등록표>에 기입하여 등록 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단서를 보존하여 문의할 때 제공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다.
- 3)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단위의 이용능력과 이용상황, 오염방지조치에 대하여 일상적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각지 (시)급환

경보호부문은 매년 이용단위 등록상황,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상황을 성급 환경보호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환경 보호부문에서는 일괄하여 환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보총국은 각지 이용단위등록,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하여 통보한다.

3.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위조, 변조,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진일보 강화

합법적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받은 가공이용 단위에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가공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환경보호부문 특히 연해항구 소재지의 지방 환경보호부문은 현지 경찰, 세관, 품질검사 등 해당 부분과 함께 본 지역 내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위조, 변조,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하여 확실히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위조, 변조, 판매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공시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년 8월 1일

<부록 8> 공업부문 업체 소음배출 표준

코드번호 : GB 12348—2008

[대체 GB 12348-90, GB 12349-90]

반포: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8-10-01 실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소음환경오염방지법>의 실행을 위하여 공업부문 업체소음오염 방지와 환경 질의 개선을 위하여 본 표준을 제정한다. 본 표준은 GB 12348-90 《工业企业厂界噪声标准》와 GB 12349-90 《工业企业厂界噪声测量方法》의 제1차 수정 표준이다. 본 표준은 공업부문 업체와 고정설비 업계의 소음 환경오염 한계치와 그 측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본 표준은 공업부문 기업의 소음발생에 대한 관리, 평가 및 통제를 정하고 있다. 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 등 외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본 표준에 따라야 한다. 본 표준은 시행일로부터 《工业企业厂界噪声标准》(GB12348-90)와 《工业企业厂界噪声测量方法》(GB12349-90)을 대체한다.

■ 공업부문 기업공장 소음배출 한계치

단위: dB(A)

공장 외부소음 환경구(區)별 분류(0~4)	시간대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0	50	40
1	55	45
2	60	50
3	65	55
4	70	55

■ 고정설비 구조물 전파 실내소음 배출 한계치(등가소음등급)

단위: dB(A)

주요 구분 시간대 소음 민감 건물소재구역별	A류 주택		B류 주택	
	주간	야간	주간	야간
0	40	30	40	30
1	40	30	45	35
2, 3, 4	45	35	50	40

[설명]

- (1) “A”류 주택 : 수면 위주의 목적건물, 야간 중 안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택구역, 침실, 병원입원실, 호텔 객실 등
- (2) “B”류 주택 : 주로 주간에 이용하고, 정신집중이 보장되고 정상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 학교교실, 회의실, 사무실, 주택 중 침실 이외의 공간
- (3) “민감 건축물”은 병원, 학교, 기관, 연구단위, 주택 등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축물

■ 고정설비 구조물 전파 실내소음 배출 한계치(배출대별 소음압력 등급)

소음 민감 건축물 소재 소음구역 별	시간대	배출대 중심 주파수(Hz) 주택구분	실내소음배출대별 소음압력 등급한계치				
			31.5	63	125	250	500
0	주간	A, B류 주택	76	59	48	39	34
	야간	A, B류 주택	69	51	39	30	24
1	주간	A류 주택	76	59	48	39	34
		B류 주택	79	63	52	44	38
	야간	A류 주택	69	51	39	30	24
		B류 주택	72	55	43	35	29
2, 3, 4	주간	A류 주택	79	63	52	44	38
		B류 주택	82	67	56	49	43
	야간	A류 주택	72	55	43	35	29
		B류 주택	76	59	48	39	34

<부록 9> 국가 돌발 환경사고 응급 대비방안(요약)

1. 총칙

1-1 작성목적

완비된 돌발 환경사건 응급 메커니즘 수립은 정부의 공공위기와 관계되는 돌발 환경사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공중의 생명건강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의 전반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1-2 작성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과 <국가 돌발 공공사건 총체적 응급대비책>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대비책을 작성하였다.

1-3 사건등급

돌발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정도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을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건(Ⅰ급), 중대한 환경사건(Ⅱ급), 비교적 큰 환경사건(Ⅲ급), 일반 환경사건(Ⅳ급) 네 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3-1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건(Ⅰ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특별히 중대한 환경 사고로 구분한다.

- (1) 사망자가 30명 이상, 혹은 중독(중상)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 (2) 환경사건으로 인해 급히 해산, 이주시키는 인원이 5만 명 이상, 혹은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구역 생태기능이 심각하게 상실 혹은 멸종위기에 처한 물종 생존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 (4)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지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 (5) 방사능성 물질을 이용한 인위적인 파괴활동, 혹은 1유형, 2유형 방사능선원(放射源)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대규모의 심각한 복사오염후과를 초래한 경우
- (6)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요도시의 주요 수원지 취수가 중단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7) 위험 화학품(맹독품 포함) 생산 및 저장운반 중 누출로 인해 국민 생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오염사고

1-3-2 중대한 환경사건(Ⅱ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중대한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1)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이하, 혹은 중동(중상)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 (2) 구역 생태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 혹은 멸종위기에 처한 물종 생존환경이 오염된 경우
- (3)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지 경제, 사회활동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대중이 이주한 경우
- (4) 1유형, 2유형 방사능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 (5)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요 하천, 호수, 저수지 및 연해수역이 대면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혹은 현급 이상의 도시수원지 취수가 중단되는 오염사건의 경우

1-3-3 비교적 큰 환경사건(III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비교적 큰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1) 사망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 혹은 중동(중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 (2)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지급(地級) 행정구역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현지 경제, 사회활동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은 경우
- (3) 3유형 방사능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1-3-4 일반 환경사건(IV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은 일반 환경사건으로 구분한다.

- (1) 사망자가 3명 이하인 경우
- (2)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지급(地級) 행정구역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일반적인 대중성 영향을 미친 경우
- (3) 4유형, 5유형 방사능선원 분실, 도난 혹은 통제력 상실의 경우

1-4 적용범위

본 대비책은 다음 각항 사건의 응급대응에 적용되며 핵 사고의 응급대응은 국가 핵 응급 조정위원회 해당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4-1 사건 발생지 성(구, 시) 인민정부의 돌발환경사건 처리능력을 초과했을 경우의 대응 업무.

1-4-2 성(구, 시) 경계를 초월한 돌발 환경사고 대응 업무.

1-4-3 국무원 혹은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를 통해 조정,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돌발 환경사고 혹은 기타 돌발사고 차생, 파생된 환경사건.

1-5 업무원칙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도하에 인본주의를 견지하며 전반적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발전관을 수립하며 정부의 사회관리 수준과 돌발사건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 (1) 인본주의, 예방위주 원칙을 견지한다. 환경사건 위험원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환경사고 위험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예방

하고 제때에 통제하며 잠재적인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사건 예방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로써 될수록 돌발환경사고의 발생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고 환경사고로 인한 중장기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며 최대한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국민공중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

- (2) 통일적인 지도, 분류 관리, 관할지역 위주, 체계적인 대응 원칙을 견지한다.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 간의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오염, 방사능성 오염의 특징에 맞게 분류 및 관리를 실시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취한 조치로 하여금 돌발 환경사고로 유발된 위해범위 및 사회적 영향과 상호 적용 되도록 한다. 지방정부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할지역을 위주로 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3) 준비연습을 실제상황과 결부시키고, 전임·겸임 결합 원칙을 견지하고 현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한다. 돌발환경사고에 대한 사상준비, 물자준비, 기술준비, 업무준비를 적극 실천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현존 전문 환경응급 구조역량을 충분히 이용하며 환경측정망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기타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유도, 격려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환경응급구조역량의 역할을 발휘시킨다.

2. 지휘 및 직책

2-1 조직체계

국가 돌발환경사고 응급대응 조직체계는 응급대응 영도기구, 통합조정기구, 유형별 환경사고 관련 전문 지휘기구, 응급대응 지원보장부처, 전문가 자문기구, 지방 각급 인민정부 돌발환경사고 응급대응 지도기구와 응급구조 체제로 구성한다.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는 돌발환경사고 대응 업무 조정을 책임지고 각 전문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분야의 돌발환경사고 대응 업무를 실행하며 각 응급대응 지원보장부처는 각자 직책에 따라 돌발환경사고 응급대응 보장업무를 실행한다.

전문가 자문기구란 돌발환경사건 전문가 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돌발환경사건 응급대응기구는 지방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돌발환경사건 국가 응급구조 체제는 각 관련 전문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환경보호부 응급구조 체제는 환경 응급대응 및 사고조사센터,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 핵 안전센터로 구성되었다.

2-2 통합조정기구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는 국가 돌발환경사고 대응 업무에 대한 조정을 책임진다. 당 중앙, 국무원의 응급대응 업무에 관련되는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국무원의 환경 응급대응 관련 업무지시와 요구를 실천하며 환경 응급예보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해 나가고 국가 돌발환경사건 응급대비책을 작성(수정)한다. 통일적으로 중대한,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건에 대한 응급 구조업무를 조정하고 지방정부 해당부서가 돌발환경사고 응급대응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국가 환경응급대응 업무의 공중 홍보와 교육을 배치하고 환경오염 응급대응 정보를 통일적으로 반포하며 국무원에서 지시한 기타 응급구조 임무를 완성한다.

각 해당 인원부서는 각자 전문분야에서의 응급대응 조정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2-3 관련 유형 환경사고 전문 지휘기구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 해당 구성원 단위간의 응급연락 업무체계를 만들어 정보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책임지고 정보를 공유한다. 각 직책제정 본부의 환경응급구조와 보장방면의 응급대비책에 따라 책임관리와 실행, 기타부문의 증원이 필요할 시 관련부문은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에 증원청구를 제출한다. 필요시, 국무원조직은 특별중대 돌발환경사고 응급업무에 협조한다.

2-4 지방인민정부 돌발사고 응급 지도자기구

환경응급구조지휘는 소속지역위주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특별중대 환경사건발생지의 성(구, 시) 인민정부는 현장 응급구조지휘부를 설립한다. 참여한 모든 응급구조대와 대원은 현장 응급구조지휘부의 지휘에 반드시 따라야하고 현장응급구조지휘부는 참여한 응급구조대와 대원들에게 업무조건을 제공한다.

2-5 전문가팀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는 돌발환경사고 전문가팀을 설립하고 과학연구기관이나 부대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한다.

주요업무: 돌발환경사고 응급업무 참여, 돌발환경사고 응급처리업무 지도, 국무원 또는 부처 간 연석회의의 정책결정에 과학적 근거 제공.

3. 대비책과 경보

3-1 정보검측

3-1-1 전국 환경보호부처 간 연석회의 관련 구성원단위는 신속한 발견, 빠른 보고, 빠른 처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환경정보, 자연재해예보정보, 기존 환경검측통계, 방사능환경검측통계의 종합분석, 위험평가 업무에 대해 전개한다.

3-1-2 국무원관련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돌발환경사고 정보의 접수, 보고, 처리, 통계분석 및 경보정보의 감시, 통제를 책임진다.

- (1) 환경오염사고, 생물종안전사고, 방사능사고정보 접수, 보고, 처리, 통계분석은 환보부가 책임
- (2) 해상 석유탐사개발 기름유출 사고정보 접수, 보고, 처리, 통계분석은 해양부가 책임
- (3) 해상 선박, 항구 오염사고 정보 접수, 보고, 처리, 통계분석은 교통부가 책임;

3-1-3 환경오염사고와 생물종안전경보정보 감시 및 통제는 환경보호부가 책임; 해상석유탐사개발 기름유출사고 경보정보 감시 및 통제는 해양부가 책임; 해상 선박, 항구 오염사고정보 감시, 통제는 교통부가 책임; 방사능 환경오염사고 경보정보 감시, 통제는 환경보호부(핵안전국)이 책임; 특별중대 환경사고 경보정보 경과 확인 후, 서둘러 국무원에 보고한다.

3-2 예방업무

- (1) 오염원, 방사능원과 생물종자원 조사를 펼치고 생산, 저장, 운송, 화학용품 소각폐기, 방사능원의 일제조사, 전국 환경오염원의 생산 파악, 종류 및 지역별 분포상황에 대해 전개한다. 국내외의 관련 기술정보와 진전 상황, 동태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대책과 의견을 제출한다.
- (2) 돌발환경사고의 가설과 분석 및 위험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각 유형별 돌발환경사고 응급대비책을 완벽히 한다.
- (3) 환경응급 과학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환경오염확산숫자모형을 만들어 환경응급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한다.

3-3 경보와 조치

돌발사건의 심각성과 긴급 정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돌발환경사고의 경보는 4등급으로 분류한다. 경보 등급이 낮고 높음에 따라 색깔 순서를 남색, 황색, 주황색, 홍색 순으로 하고, 사태의 발전상황과 취한 조치의 효과에 따라 경보색깔을 높이고 낮추거나 해제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증명관련 돌발환경사고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을 시 해당 응급대비책에 따라 실행한다.

경보상태에 들어간 후, 당 지역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부서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 (1) 즉시 해당 응급대비책을 가동한다.
- (2) 경보공고를 선포한다. 남색경보는 현급 인민정부가 선포를 책임. 황색경보는 시(지)급 인민정부가 선포를 책임. 주황색경보는 성급 인민정부가 선포를 책임. 홍색경보는 사고발생지 현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책임지고 반포한다.
- (3)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동, 분리, 분산 시키고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한다.
- (4) 각 환경 응급 구조대가 응급상태 진입을 지시하고 환경검측부는 즉시 응급검측을 실시하여 사고사태 진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 (5) 돌발사고가 위해를 조성할 가능성을 초점에 두어 해당 장소를 봉쇄, 차단 혹은 사용을 제한하고 위해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나 활동을 중지한다.
- (6) 환경응급에 필요한 모든 물자나 설비를 소집해 놓고 응급 보장업무를 확실히 보장한다.

3-4 경보지지체계

3-4-1 환경안전 경보체계를 설립하고 오염원 배출상황을 중점에 둔 실시간 감시 통제 정보체계, 돌발사고 경보체계, 구역환경 안전평가 과학경보체계, 방사능사고 경보정보체계를 설립; 중대 선박오염사고 응급설비 사고와 해공 일체화선박오염 신속대응체계 설립; 해양환경검측체계 설립.

3-4-2 환경응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돌발환경사고 응급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생태안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돌발사고전문가 선정지원 시스템, 환경회복피드백 주기 검측평가시스템, 방사능사고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설립한다.

3-4-3 응급지휘기술 플랫폼시스템을 만들고 요구에 따라 실제상황과 결합하고 관련유형별 환경사고 전문 대응지휘센터와 통신기술 보장체계를 설립한다.

4. 응급호응

4-1 호응체계 분류

돌발환경사고 응급호응은 소속지역 위주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돌발환경사고 응급처리 업무를 전면 책임지고 환경보호부와 국무원 관련부서는 상황에 따라 협조 지원한다.

돌발환경사고의 통제가능성과 정도의 심각성, 영향범위에 따라 돌발환경사고의 응급호응을 특별히 중대(1급 호응), 중대(2급 호응), 비교적 큰(3급 호응), 일반적인(4급 호응)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등급의 처리능력을 넘어섰을 시, 서둘러 상급 응급구조 지휘 기구에 요청하여 상급 응급대비책을 가동해야한다. 1급 응급호응은 환경보호부와 국무원 해당 부서가 구성 실행한다.

4-2 응급호응 절차

4-2-1 1급호응시, 환경보호부는 아래 절차와 내용에 따라 호응한다:

- (1) 돌발환경사고 모든 지역에 있는 성급 환경응급지휘기구, 현장응급지휘부, 상관전문 응급지휘기구와 통신연락을 개통하여 수시로 사고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 (2) 즉시 환경보호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환경응급지휘부를 만든다.
- (3) 서둘러 국무원에 돌발환경사고 기본상황과 응급구조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4) 관련 전문가구성 전문가팀에게 통지해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의견에 따라 해당 응급 구조 역량은 시시각각 명령을 대기하라 통지하고 지방 혹은 관련 전문응급지휘기구에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5) 해당 응급구조 효력과 전문가를 보내 서둘러 현장에 참여하게하고 현장응급구조를 지도하게 한다. 필요시 사고발생지역 주변지구로 이동시켜 전문응급역량을 증원 실행한다.

4-2-2 해당 유형별 환경사고 전문 지휘기구는 특별중대 환경사고소식을 받은 후, 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

- (1) 본부응급대비책을 가동 및 실행하고 즉시 국무원에게 보고 및 환경보호부에 통보한다.
- (2) 본부 응급지휘기구를 가동한다.
- (3) 협조 조직 응급구조 역량은 응급구조 업무를 전개한다.
- (4) 필요한 기타 응급구조 역량지원 시, 국무원에 요청한다.

4-2-3 성급 지방인민정부 돌발 환경사고 응급호응은 1급 호응절차를 참고 할 수 있고 해당 지역실제와 결합하여 응급호응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 해당 응급역량지원이 필요할 시, 즉시 환경보호부와 국무원 유사부서에게 요청한다.

4-3 정보 상부보고 및 처리

4-3-1 돌발환경사고 보고 기한과 처리

돌발환경사고 책임단위와 책임자 그리고 감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는 돌발환경사고 발견 후, 1시간 이내에 지역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에게 보고해야하고 동시에 일급 위 해당 전문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즉시 현장조사를 조직하여 진행한다.

긴급한 상황 하에 최고기관으로 상부보고 할 수 있다.

환경사고 확인을 맡은 단위가 중대(2급) 환경사고 확인 후, 1시간 내에 현금 해당 전문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특별중대(1급) 환경사고는 즉시 국무원 해당 전문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기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고 받은 후 한 시간 내에 일급 위의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보고 받은 후 한 시간 내에 국무원 및 국무원 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2급), 특별중대(1급), 돌발환경사고 일 경우 국무원 해당 부서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한다.

4-3-2 돌발환경사고 보고 방식과 내용

돌발환경사고의 보고는 초기보고, 속보, 처리결과보고 3가지로 분류된다. 초기보고는 사건발생이후 1시간 안에 상부보고; 속보는 기본상황 조사 후 수시로 상부보고; 처리결과보고는 사고처리가 완벽히 끝난 즉시 상부에 보고한다.

초기보고는 전화로 직접보고가 가능하고 주요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환경사고의 유형, 발생시간, 장소, 오염원, 주요오염물질, 인원부상상황, 훼손하거나 벌목한 국가중점보호 동식물의 명칭과 수량, 자연보호구역 피해면적과 정도, 사고의 잠재적 위험정도, 전환방식경향 등 기초상황.

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나 서면형식 보고가 가능하고 초기보고를 기초로 해당되는 정확한 통계와 사건발생의 원인, 과정, 진전 상황과 취한 응급조치 등 기본상황을 보고한다.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형식 보고를 채용해야 하고 초기보고와 속보를 기초로 사고처리조치, 과정과 결과, 사고의 잠재적 혹은 간접적 위험, 사회영향, 처리 후 남겨진 문제, 처리작업에 참가한 해당부서와 작업내용, 관련위험이나 손실의 증명문건 발급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한다.

4-4 지휘와 협조

4-4-1 지휘와 협조기능

필요에 따라 국무원 해당 부서와 부서 간 연석회의는 지휘부를 세우고 돌발환경사고 대응작업의 지도, 협조를 책임진다.

환경 응급 지휘부는 돌발환경사고의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와 응급기구, 구조대와 사고 지역과 인접해 있는 성(구, 시) 인민정부 응급구조 지휘기구에 통지한다.

각 응급기구는 사고정보 통보를 받은 후 즉시 관련 인원과 부대를 사고현장으로 보내고 현장구조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아래 각자의 대비책과 처리규정에 따라 서로 긴밀히 협조, 협동하면서 환경응급과 긴급처리행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현장응급구조지휘부를 세우기 전에 각 응급구조 전문부대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부와 사고발생단위의 협조지휘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사전처리를 실시해야하고 오염원을 결단력 있게 통제 또는 단절하고 사고형세를 전력으로 통제해 2차오염과 2차사고나 파생사고 발생을 엄중하게 방지한다.

응급사태 시, 전문가팀은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해 사건정보에 대해서 신속히 분석, 평가하고 응급 처리방안과 건의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휘부지도자 정책을 참고 제공한다. 사고진전 상황과 형세나 동태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과 의견을 제출한다; 돌발환경사고의 위해범위와 발전추세를 과학적 예측이라 여기고 환경응급지도자기구의 정책과 지휘에 과학적 근거로 제공한다; 오염정도, 위해범위, 사고등급의 판정에 관여해 오염구역의 격리 및 금지해제, 인원분산 및 복귀 등 중대방호조치의 정책에 대해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응급처리대가 진행하는 응급처리와 처분을 지도한다; 환경응급업무의 평가를 지도하고 진행사고의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다.

발생환경사고의 해당부서, 단위가 제때에 주동적으로 환경응급지휘부에게 응급구조에 관련된 기초자료, 환경보호, 해양, 교통, 수리공사 등 해당 부서가 사고발생 전의 해당 감시관리 검사자료를 제공하고 환경응급지휘부 연구구조와 처리방안을 제공할 시 참고한다.

4-4-2 지휘협조 주요내용

환경응급 지휘부 지휘협조의 주요 포함내용:

- (1) 현장응급 행동원칙요구를 제출
- (2) 관련 전문가와 인원을 보내 현장응급구조지도부의 응급지휘업무에 참여
- (3) 각급, 각 전문업 응급역량에 협조해 응급지원 행동을 실시
- (4) 위협받는 주변지구 위험원의 감시통제업무 협조
- (5) 현장경계구역과 교통통제구역이 협조해 중점방호지역을 확정
- (6) 현장검측결과에 따라 군중을 이동 및 분산시키고 복귀하는 시간
- (7) 즉시 국무원에 응급행동의 진전 상황을 보고

4-5 응급검측

환경보호부 환경응급 검측분대는 돌발환경사고 지구를 조직 협조해 환경응급 검측작업을 책임지고 해양환경 검측기구와 지방 환경검측기구 지도해 응급검측작업 진행을 책임진다.

- (1) 돌발환경사고오염물의 확산속도와 사건발생지의 기상과 지역 특색을 근거로 오염물 확산범위를 확정한다.
- (2) 검측결과를 근거로 돌발환경사고 오염변화 추세를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토론 방식을 통해 돌발환경 사고의 발전상황과 오염물의 변화상황을 예측 및 보고하여 돌발환경사고 응급정책의 근거로 여긴다.

4-6 정보선포

전국 환경보호부 간 연석회의는 돌발환경사고정보 대외적 단일선포 업무를 책임지고 돌발환경사고 발생 후 즉시 확실하고 권위적인 정보를 선포하고 사회여론을 바르게 인솔한다.

4-7 안전방호

4-7-1 응급인원의 안전방호

현장처리 인원은 서로 다른 유형의 환경사고의 특이점을 근거로 상응하는 전문 방호설비를 배치하고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며 응급인원 사고발생현장 출입 절차를 엄격히 실시한다.

4-7-2 재해를 입은 공중의 안전방호

현장응급구조 지휘부는 군중의 안전방호업무 구성을 책임지고 주요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돌발환경사고의 성질, 특이점에 따라 군중에게 취할 수 있는 안전방호조치를 고지한다.
- (2) 사고 시 해당 지역의 기상, 지리환경, 인원밀집도 등을 근거로 군중분산방식을 확정하고 관련부서는 군중안전 분리분산 결성을 지정한다.
- (3) 사고발생지 안전경계 밖에 긴급피난소를 설립한다.

4-8 응급종료

4-8-1 응급종료의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와 일치하면 응급종료 조건을 충족시킨다.

- (1) 사고현장 통제를 얻었는데 사고조건이 이미 소멸되었을 때
- (2) 오염원의 누출 혹은 방출이 이미 규정제한 내로 떨어졌을 때
- (3) 사고가 조성된 위해가 이미 완벽히 소멸되고 연속 발생가능성이 없을 때
- (4) 사고현장의 각종 전문응급처리 행동이 이미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
- (5)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였으며 대중을 두 번째 위해를 피해 보호하였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적 영향이 합리적이고 최저 수준에 있을 때

4-8-2 응급종료의 절차

- (1) 현장구조지휘부가 종료 시기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건책임 부문이 제출하고 현장구조지휘부가 심사승인한다.

- (2) 현장구조지휘부는 각 전문 응급구조반에 응급종료명령을 내린다.
- (3) 응급상태종료 후, 관련 유형별 환경사건 전문 응급지휘부는 국무원의 해당지표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진행하며 기타의 보완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까지 진행한다.

4-8-3 응급종료 후의 행동

- (1) 환경응급지휘부는 해당 부서 및 돌발환경사고 업체를 지도하여 사건원인을 조사하고 유사한 문제의 중복발생을 방지한다.
- (2) 관련 유형별 환경사건 전문 주관부서는 특별히 중대한, 중대한 환경사건 총결보고서를 책임지고 작성하여 응급종료 후 상급에 보고한다.
- (3) 응급과정평가. 환경보호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사건발생지의 성급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실시한다.
- (4) 실천경험에 근거하여 관련 유형별 환경사건 전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응급대비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제때에 환경응급 대비책을 수정한다.
- (5) 응급행동에 참가한 부서는 환경응급반을 구성 및 지도하여 응급기기 설비의 유지보수, 정비를 하여 시중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응급보장

5-1 자금보장

부처 간 연석회의 각 구성원 단위는 돌발환경사건 응급대비 수요에 근거하여 항목지출 예산을 산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승인 후 집행한다. 구체 상황은 <재정응급대비 보장대비책>에 따라 집행한다.

5-2 장비보장

각 급 환경응급대비 관련 전문 부서 및 업체는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기존의 점검, 감정평가, 모니터링능력을 적극 발휘하는 기초 위에 업무수요 및 직책요구에 근거하여 위험화학품 검증, 감정평가와 모니터링 설비 건설을 강화한다. 응급처리, 고속기동, 자체방호장비, 물자비축을 증가하고 응급모니터링, 동적 감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환경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환경오염과 확산 방비를 확보한다.

5-3 통신보장

각 급 환경응급대응 관련 전문 부서는 환경안전 응급지휘시스템, 환경응급처리 전국연동시스템 및 환경안전 과학예보시스템을 구축, 완비한다. 필요한 유선, 무선 통신기재를 설치하여 본 대비책 가동 시 환경응급 지휘부와 관련 부서 및 현장의 각 전문 응급대오 간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한다.

5-4 인력자원보장

관련 유형별 환경응급 전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건 응급구조반을 설립한다. 각 성(구, 시)는 각 급 환경응급반 운영을 강화하여 돌발사건 대응 소질과 능력을 제고시킨다. 계획리스트에 포함된 시, 성 정부 소재지 도시와 환경보호 중점 도시들은 언제나 충분히 준비하고 환경 응급대비지식에 익숙하며 각종 유형의 돌발환경사건 처리조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예비 응급역량을 육성한다.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대, 중형 화학공업 등 기업의 소방, 방화 등 응급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 성, 시 및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환경응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돌발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긴급구조, 위험상황 해소, 소독, 모니터링 등 현장처리업무 참여 및 완성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5-5 기술보장

환경안전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예보 가동 전, 사건 발생 후에 환경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하며 지휘결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경 응급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전문 환경 응급대응반을 건설, 완비하며 지역 핵 안전 감독시설과 지역 전문기술기관은 수시로 응급대응 후속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5-6 홍보, 교육과 훈련

5-6-1 각 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보호 과학보급 홍보교육 업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건 예방상식을 보급하고 유독유해물질 오염 공중방호 “알림카드”를 제작인쇄, 발급하여 공중의 방호의식과 대비방안을 증강시키고 공중의 방호능력을 향상시킨다.

5-6-2 각 급 환경보호부서 및 관련 유형별 환경사건 전문 주관부서는 환경사건 전문 기술인원의 일상교육과 중요목표 업무인원의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자질 있는 환경응급처리, 점검, 모니터링 등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5-6-3 각 급 환경보호부서 및 관련 유형별 환경사건 전문 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 및 관련 부문별 대비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동한 유형의 환경 응급 실전훈련을 조직하여 돌발환경사고 방호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능력을 증강한다.

5-7 응급능력평가

환경응급 체계가 시종일관하게 양호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각 급 환경 응급기관의 설치상황, 제도와 업무절차의 수립 및 집행상황, 체제 건설과 인력교육 및 평가 상황, 응급장비와 경비관리 및 사용상황 등에 대해서는 환경 응급 능력 평가체계 중 위로부터 아래로의 감독, 검사, 고과 업무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6. 후속 처리

6-1 사후처리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피해인원의 배치업무를 잘해야 하고 전문가를 구성하여 피해범위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보상과 오염된 생태환경 복원 건의를 제기한다.

6-2 보험

돌발환경사건 사회보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 응급작업 인원에 대해 상해보험을 제공해준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보험 혹은 기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 부칙

7-1 용어 정의

환경사고: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제, 사회활동과 행위 및 의외 요소의 영향 혹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인체 건강이 위해를 받으며 사회경제 및 국민공중의 재산이 손실을 보고 불량한 사회영향을 일으키는 돌발성 사고이다.

돌발환경사고: 갑자기 발생하고 중대한 인원사망, 중대한 재산손실과 전국 혹은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 정치안정 구조에 중대한 위협과 손해를 일으키거나 혹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공공안전에 관계되는 환경사고이다.

환경응급: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돌발환경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즉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초월하는 행동을 취하여 사건발생을 피하거나 또는 사건후과의 상태를 경감하는 것으로 긴급 상태라고도 한다. 또 즉시 취하는 정상업무절차를 초월하는 행동을 말한다.

대비책 분류: 돌발 환경사고의 발생과정, 성질, 원리에 근거하여 돌발 환경사고를 3개 유형, 즉 돌발환경 오염사고, 생물종 안전 환경사고, 복사환경오염사고로 구분한다. **돌발 환경오염사고**에는 중점유역, 민감 수역 물환경 오염사건, 중점도시 광화학 연무오염사건, 위험화학품 및 폐기화학품 오염사건, 해상 석유 탐사개발 유출사건, 돌발 선박오염사건 등이 포함된다. **생물종 안전환경사고**라 함은 생물종이 부당한 채집, 포살, 밀수, 불법휴대 출입국 혹은 협력교환, 공정건설 위험을 받거나 또 외래침입 종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조성한 손실과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 및 위해사건을 말한다. **복사환경오염사고**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원, 복사장치, 방사성 폐기물 복사오염사고 등을 포함한다.

누출처리: 누출처리라 함은 위험화학품, 위험폐기물, 방사성 물질, 유독기체 등 오염원

들이 사건발생으로 인해 누출되었을 시, 취하는 응급처리조치를 말한다. 누출처리는 신속하고 적절해야 하고 중대사건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누출처리는 보통 누출원 통제와 누출물질 처리 2개 부분으로 나눈다.

응급모니터링: 환경응급 상황 하에서 환경오염상황 및 오염범위를 발견하고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환경모니터링으로, 지정 모니터링과 동적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응급연습: 응급계획의 효과성, 응급준비의 완벽성, 응급대응 능력의 적응성 및 응급인원의 협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종 모의 응급대응의 실천 활동으로서 연관되는 내용과 범위가 부동함에 따라 단항연습(훈련), 종합연습과 지휘센터, 현장응급조직이 연합하여 진행되는 연합훈련으로 나눈다.

본 대비책의 관련 수량을 서술하는 중에 “이상”은 본 데이터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7-2 대비책 관리 및 갱신

응급구조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 수정, 개선함에 따라서 부서 직책 혹은 응급자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또 응급과정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본 대비책을 제때에 수정하여 완비해야 한다.

7-3 국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국제 환경응급 기구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간의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한다.

7-4 포상 및 책임추궁

7-4-1 포상

돌발환경사고 응급 구조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 (1) 돌발환경사고 응급처리 임무를 특출하게 완성하였고 성적이 돋보이는 경우
- (2) 돌발환경사고 방지 혹은 구제 중 공로가 있고 국가, 집체,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으로 하여금 손실을 면하게 하였거나 또는 감소시켰을 경우
- (3) 사고응급준비 및 대응에 관해 중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실시효과가 뚜렷한 경우
- (4) 기타 특수 공헌이 있을 경우

7-4-2 책임추궁

돌발환경사고 응급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인원의 구체상황이나 위태후과에 대해 그 소속업체, 기관 혹은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한다. 그 중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각기 임면기관이나 또는 감찰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하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사건을 유발한 경우
- (2) 규정대로 돌발환경사건 응급대비책을 제정하지 않고 돌발환경사건 응급준비의무 감당을 거부했을 경우
- (3) 돌발환경사고의 실제 상황을 규정에 따라 보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4) 돌발환경사건 응급대비책 집행을 거부하고 명령과 지휘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건응급대응 시 도망갔을 경우
- (5) 환경사건 응급 작업자금, 장비와 물자를 절도, 탐오, 유용했을 경우
- (6) 환경사건 응급작업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파괴 활동을 했을 경우
- (7)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을 경우
- (8) 기타 환경사건 응급작업에 위험을 조성한 행위가 있을 경우

7-5 대비책 실시시간

본 대비책은 인쇄 배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록 10>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환경보호부령 17호)

2011.3.24일 심의통과, 2011.5.1일부터 시행

제1조 돌발 환경사고현황 보고 작업을 규범화 하기위해 환경보호부는 돌발환경사고대응 능력을 키우고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고대응법>, <국가돌발공공사고총체적응급대비책>,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대비책>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항을 환경보호부에 적용하여 돌발 환경사고 현황에 대해 보고한다. 돌발환경 사고는 특별중대사고 (1급), 중대사고 (2급), 비교적 큰 사고 (3급), 일반적인 사고 (4급), 이렇게 네 가지 급으로 나뉜다. 핵과 방사능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는 핵안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제3조 돌발 환경사고 발생지구의 시 급 혹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돌발 환경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된 후, 즉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돌발환경사고의 성질과 유형을 처음으로 검정해야 한다.

처음 검정이 일반적(4급)이거나 비교적 큰(3급) 돌발환경사고의 것이라면, 사고발생 지구의 시 급 혹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4시간 이내에 해당 급의 인민정부와 상급인민 정부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처음 검증이 중대(2급)나 특별중대(1급)의 돌발 환경사고의 것이라면, 사고발생지구의 시 급 혹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2시간 이내에 해당 급의 인민정부와 상급인민 정부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하며 동시에 환경보호부에 알려야한다. 현 급인민정부환경보호부는 보고를 받은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시간 안에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한다.

돌발 환경사고 처리과정 중 사고등급별 변화가 발생했다면 변화후의 등급 정보를 보고 한다.

제4조 아래 항목과 같이 한눈에 판단할 수 없는 돌발 환경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발생 지구의 시 급 혹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중대 (2급) 하거나 특별중대 (1급)한 돌 발 환경사고의 보고순서에 따라 상부로 보고해야한다;

- (1) 식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2)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이 관련된 민감한 구역이거나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사고
- (3) 중금속 혹은 중금속이 관련된 오염사고
- (4) 다른 현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
- (5) 환경오염 때문에 유발된 집단성사고 혹은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사고
- (6)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돌발 환경사고

제5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보다 먼저 돌발환경사고 현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게 실태조사와 알맞은 사고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본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를 보고해야한다.

제6조 환경보호부에 돌발 환경사고 관련현황을 보고하고 총당직실에 보고해야한다. 동시에 환경보호부 환경응급 지휘임원팀 사무실에게 알린다. 환경보호부 환경응급지휘임원팀 사무실은 상황에 따라 부서 내 관련국 에게 관련소식을 통보한다.

제7조 환경보호부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중대 (2급) 혹은 특별중대 (1급) 돌발 환경사고 및 보고가 필요한 돌발환경사고 정보를 받은 후, 국무원 총당직실과 중공중앙 행정부서 비서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돌발 환경사고가 이미 인접한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발생지 환경보호부에서 인접구역 동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재빨리 통지해야 하고 동시에 본 인민정부는 인접구역 인민정부에게 통보한 건의를 제출해야한다. 통보를 받은 환경보호부는 서둘러 상황을 파악조사하고 본 조항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 사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하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게 전화형식의 돌발환경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하고 동시에 하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게 서면형식의 정보를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상황이 분명치 않거나 요소가 불완전한 돌발 환경사고 정보에 대해서는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가 하급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게 보충정보를 조사할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돌발 환경사고 정보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일급위에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게 해당 행정구역 돌발환경사고의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도별 보고서 및 통계상황을 상부에 보고 하여야한다. 일급 위의 인민 정부 환경보호부는 정기보고와 통계상황을 통지한다.

제11조 국가 기밀과 관련있는 돌발 환경사고 정보 보고는 국가기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돌발환경사고의 보고는 초기보고, 속보, 처리결과보고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초기보고; 돌발환경사고를 발견하거나 알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상부보고.
속보; 관련된 기본상황과 사고 확대 상황을 자세히 조사후 수시로 하는 상부보고.
처리결과보고; 돌발 환경사고가 완벽히 처리된 후에 실시하는 상부보고

제13조 초기보고는 돌발 환경사고의 발생시간, 장소, 정보출처, 사고발생 원인과 성질, 기본과정, 주요 오염물과 수량, 검측데이터, 부상자상황, 식수 수원지등 환경민감 지역이 받는 영향상황, 사고 추세, 처리상황 또는 취한 조치 및 일급 아래 업무건의 등 기본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돌발 환경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민감 지역에 안내도를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속보는 초기보고 상의 내용을 기초로 관련처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처리결과 보고는 초기보고와 속보 상의 내용을 기초로 돌발 환경사고 처리의 조치와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고 돌발 환경사고의 잠재적 혹은 간접적인 위험이나 손실, 사회영향, 처리 후 남겨진 문제, 책임규명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해야한다.

제14조 돌발 환경사고 정보는 팩스, 인터넷, 우편, 직접전달 등의 방식을 채용하여 서면 보고 해야 하고; 상황이 급박할 시 초기보고는 전화로 보고 할수 있지만 재빨리 서면 보고를 보충해야한다.

서면보고 중 돌발 환경사고 보고단위, 보고전달자, 연락인 및 연락방식 등의 내용이 명료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가능한 빨리 지도나 사진 및 상관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돌발 환경사고 정보를 보고하는 작업 중 지연 보고, 허위 보고, 보고 기만, 보고 누락 관련된 돌발 환경사고 정보는 책임을 져야 하고, 초래한 결과는 직접적인 책임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가 법과 규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불법인 것은 관련법에 따라 수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6조 본 조항은 환경보호부로부터 해석된 것이다.

제17조 : 본 조항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 돌발환경 사고정보 보고방법(시행시행)> (환발[2006] 50호)는 동시 폐지)

부록 : 돌발 환경사고 등급 분류표

돌발사고 심각성과 급박성에 따라 돌발 환경사고는 특별중대(1급), 중대(2급), 비교적 큰(3급), 일반적(4급) 4가지로 분류한다.

1. 특별중대 (1급) 돌발환경사고:

아래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와 대부분 부합하는 것은 특별 중대돌발 환경사고로 여긴다.

- (1) 환경오염으로 인해 1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100명 이상의 중독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경우
- (2) 환경오염으로 인해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거나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

-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1억위안 이상인 경우
- (4)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 기능상실 혹은 국가 중점 보호종에 멸종을 야기시킨 경우
- (5)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 급 이상의 도시가 집중식 식수 수원지의 취수가 중단된 경우
- (6) 1, 2급 방사능원이 통제를 잃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방사능 오염결과를 초래한 경우, 핵시설 장외진입에 필요한 긴급하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방사능사고결과가 인근 도시나 경계밖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국제핵사고 표준(NES)등급표”에 따라 3급 이상의 핵사고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핵시설 중 발생한 것은 “국제 핵사고 표준(INES) 등급표에 따라 4급 이상의 사고에 속하는 경우; 주위국가 핵시설 중 발전에 따라 “국제핵사고표준(INES)등급표” 4급 이상에 속하는 핵사고.
- (7) 국경을 넘어간 돌발환경사고

2. 중대 (2급) 돌발환경사고: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와 부합하는 것은 중대 돌발 환경사고로 여긴다.

- (1) 환경오염으로 인해 3명이상 10명이하가 사망했거나 50명이상 100명이하의 중독 사고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경우
- (2) 환경오염으로 인해 1만명이상 5만명이하의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거나 이동 시켜야되는 경우
-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5천만위안이상 1억위안 이하인 경우
- (4)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기능 부분상실이나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식물이 대량 사망한 경우
- (5)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 급 도시가 집중식 식수 수원지 취수가 중단된 경우
- (6) 중금속오염 및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운송, 사용과정 중 폭발발생, 누출 등 사고, 혹은 위험폐기물 등을 쏟아 내거나 쌓아두거나 버려두거나 방출함으로 인해 생긴 돌발 환경사고가 발생한 곳이 국가중점유역, 국가급자연보호구역, 풍경명소구역 혹은 주민집단거주지역, 병원, 학교 등 민간구역일 경우;
- (7) 1,2 급 방사능원이 분실, 도난이나 통제를 잃어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핵시설과 우라늄제련시설에 발생한 것이 진입구역 응급상태에 도달한 경우 혹은 수입물품에 방사능 기준치 초과사고;
- (8) 성급 (구, 시)을 넘는 돌발환경사고

3. 비교적 큰 (3급) 돌발 환경사고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와 대부분 부합하는 것은 비교적 큰 돌발 환경사고로 여긴다.

- (1) 환경오염으로 인해 3명이하가 사망했거나 10이상 50이하의 중독사고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경우
- (2) 환경오염으로 인해 5천명이상 1만명이하의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거나 이동 시켜야되는 경우
-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5백만위안이상 2천만위안 이하인 경우
- (4)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가중점보호동식물종의 손실을 받은 경우

- (5) 환경오염으로 인해 소도시가 집중식 식수 수원지 취수가 중단된 경우
- (6) 3급 방사능원이 분실, 도난이나 통제를 잃어 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 (7) 도시를 넘는 돌발환경사고

4. 일반적 (4급) 돌발 환경사고

특별 중대 돌발환경사고, 중대 돌발환경사고, 비교적 큰 돌발환경사고를 제외한 돌발환경사고

[참조 자료 현황]

참조 자료 현황

1. 中小企业环境管理手册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12)
2. 环境应急响应实用手册 (环境保护部环境应急指挥领导小组办公室, 2013)
3. 중국 환경법령 자료집<증보판> (한국환경공단, 2008)
4. 企业环境管理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14)
5. 中小企业环境设备运行管理手册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12)
6. 环境监察执法手册 (环境保护部环境监察局, 2012)
7. 环境保护法一本通 (中国法制出版社, 2005)
8. 清洁生产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05)
9. 绿色产业与绿色产业法 (中国法制出版社, 2005)
10. 中国国家环境保护部 (www.mep.gov.cn)
11. 中国环保网 (www.chinaenvironment.com)
12. 中国Bai百度网 (www.baidu.com)

